

• 새로운 연수 • 튼튼한 연수 • 따뜻한 연수



연수구보



“꿈을 이루는
행복한 연수”

발행·편집인:연수구청장 / 발행처:인천광역시 연수구 / 주소: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15호 (우)406-723 ☎ 749-7403 / FAX 749-7399

선	기 관 의 장
람	

구보는 공문서로서 효력을 갖는다.

부록 제840호 2015. 1. 1.(목)

【조 례】

- 인천광역시연수구 조례 제2014-856호(인천광역시연수구 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
- 인천광역시연수구 조례 제2014-857호(인천광역시연수구 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4
- 인천광역시연수구 조례 제2014-858호(인천광역시연수구 동북지위위원회 구성
및운영에관한조례공포안) 7
- 인천광역시연수구 조례 제2014-859호(인천광역시연수구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공포안) 12
- 인천광역시연수구 조례 제2014-860호(인천광역시연수구 옥외광고물등관리
조례전부개정조례공포안) 23
- 인천광역시연수구 조례 제2014-861호(인천광역시연수구 문화의집설치 및
운영조례공포안) 114
- 인천광역시연수구 조례 제2014-862호(인천광역시연수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19
- 인천광역시연수구 조례 제2014-863호(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27
- 인천광역시연수구 조례 제2014-864호(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의원행동강령
조례공포안) 131
- 인천광역시연수구 조례 제2014-865호(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포상조례공포안) 140

- 인천광역시연수구 조례 제2014-866호(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
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공포안) 144

【규 칙】

- 인천광역시연수구 규칙 제2014-552호(인천광역시연수구도시계획위원회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공포안) 147
- 인천광역시연수구 규칙 제2014-553호(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공포안) 151
- 인천광역시연수구 규칙 제2014-554호(인천광역시연수구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공포안) 161

【훈 령】

- 인천광역시연수구 훈령 제2014-260호(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정원규정
일부개정규정공포안) 227

【공 고】

- 인천광역시연수구 공고 제2014-1110호(공인등록 및 폐기공고) 255

【고 시】

- 인천광역시연수구 고시 제2014-99호(도로명주소 고시) 287
- 인천광역시연수구 고시 제2014-101호(인천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사업
사업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고시안) 288

회							
람							

인천광역시연수구조례(공포)

제 명	주 요 내 용
인천광역시연수구 지하수조례 일부개 정조례	☐ 개정 이유 ○ 지하수의 개발·이용과 보전·관리에 필요한 사업비 확보를 위한 지하수 특별회계를 신설함에 있어 지하수 특별회계 관리·운영에 필요한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하여 지하수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주요 내용 ○ 지하수 특별회계 신설·운영을 위한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안 제12조의2)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연수구 지하수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이재호

2015. 1. 1

인천광역시연수구 조례 제 856 호

인천광역시연수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연수구 지하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지방재정법」 제91조,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징수관 : 도시환경국장
2. 분임징수관 : 건설과장
3. 경리관 : 도시환경국장
4. 분임경리관 : 건설과장
5. 채권관리관 : 건설과장
6. 채무관리관 : 건설과장
7. 지출원 : 건설행정담당
8. 수입금출납원 : 건설행정담당
9.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건설행정담당

② 직무위임은 「인천광역시연수구 재무회계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u>제12조의2(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지정) ① 「지방재정법」 제91조,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을 다음 각 호과 같이 지정한다.</u> <u>1. 징수관 : 도시환경국장</u> <u>2. 분임징수관 : 건설과장</u> <u>3. 경리관 : 도시환경국장</u> <u>4. 분임경리관 : 건설과장</u> <u>5. 채권관리관 : 건설과장</u> <u>6. 채무관리관 : 건설과장</u> <u>7. 지출원 : 건설행정담당</u> <u>8. 수입금출납원 : 건설행정담당</u> <u>9.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건설행정담당</u> <u>② 직무위임은 「인천광역시연수구 재무회계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u>

인천광역시연수구조례(공포)

제 명	주 요 내 용
인천광역시연수구 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	☐ 개정 이유 ○ 여성발전기금의 존속기한(5년)이 만료됨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 조례에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 기금운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주요 내용 ○ 여성발전기금 존속기한 연장 -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안제37조) ○ 기금 존속기한 연장가능 명시 -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안 제37조)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연수구 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 개정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이재호

2015. 1. 1

인천광역시연수구 조례 제 857 호

인천광역시연수구 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연수구 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7조(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7조(존속기한)기금의 존속기한은 5년으로 한다.	제37조(존속기한)기금의 존속기한은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연수구조례(공포)

제 명	주 요 내 용
인천광역시연수구 동 (洞)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개정 이유 복지지출의 빠른 증가에도 불구하고 복지사각지대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동 복지위원회 구성을 통해 동 인적안전망을 강화하고 복지사각 지대 발굴 해소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주요 내용 ○ 동 복지위원회의 기능 (안 제3조) - 복지사각지대의 사회복지대상자의 발굴과 선도, 상담 및 자립지원 - 사회복지대상자와 후원자(개인, 단체, 사업체 및 행정기관)의 복지연계 지원 -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의 발굴, 신고 및 지원 ○ 동 복지위원회의 구성 (안 제4조) -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 위원장은 2명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되, 그 중 1명은 동장으로 하고 나머지 1명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 간사는 업무담당 공무원으로 하고, 서기는 사회복지 업무담당자로 한다. ○ 동 복지위원회의 임기 (안 제5조) -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동 복지위원회의 회의(안 제9조) - 위원장은 정기회의를 분기별 1회 소집한다. - 위원장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동장이 복지업무 협조를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는 임시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의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연수구 동(洞)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이재호

2015. 1. 1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 858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동(洞) 복지위원회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연수구 동(洞) 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 동 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연수구의 저소득주민·노인·아동·장애인·한부모가정등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의 사회복지사업에 따른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하 “사회복지대상자”라 한다)의 발굴과 선도, 상담, 자원연계 및 자립지원 등 복지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동 주민센터에 ○○동 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행한다.

1. 복지사각지대 사회복지대상자의 발굴과 선도, 상담 및 자립지원

2. 관할지역 안의 저소득 주민·아동·노인·장애인·모자가족·부자가족·요보호자 등에 대한 선도 및 상담
3. 사회복지대상자와 후원자(개인, 단체, 사업체 및 행정기관)와의 복지연계 지원
4.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의 발굴·신고 및 지원
5. 사회복지대상자의 권익 보호
6. 행정기관, 사회복지시설, 종교시설 그 밖의 사회복지관계 단체와의 네트워크 구성 및 협력사업
7. 그 밖에 관할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2명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되, 그 중 1명은 동장으로 하고 나머지 1명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동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지역사회 실정에 밝고 사회복지증진에 열의가 있는 사람
 2.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시설의 대표자
 3. 초·중·고교 교사 또는 대학교수
 4.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거나 후원능력이 있는 개인, 기관·단체·종교시설의 대표자
 5. 그 밖에 지역사회 복지 발전을 위하여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 간사는 업무담당 공무원으로 하고, 서기는 사회복지 업무담당자로 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남은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보궐위원을 위촉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동장의 요청에 의해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3. 위원회의 운영취지, 목적 및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4. 사회복지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본연의 임무를 수행할 때에는 사회복지 대상자의 인격을 존중하여야 하며, 성별·종교·신체·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대우를 해서는 안 된다.

② 위원은 임무수행 중에 알게 된 사회복지대상자 및 그 밖의 관계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개인적 목적을 위하여 이용해서는 안 된다.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정기회의를 분기별 1회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동장이 복지업무 협조를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는 임시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

로 의결한다.

제10조(회의수당) 각 동 복지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복지위원에게 「인천광역시 연수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교육 등) 구청장은 위원회의 사회복지 관련 교육과 간담회 개최 등 행사를 실시할 경우, 이에 대한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연수구조례(공포)

제 명	주 요 내 용
인천광역시연수구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 개정 이유 ○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의 해촉 및 제척, 회피, 기피 규정 추가 및 회의록 공개시점 단축, 공동위원회 구성·심의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 도시계획위원회 운영과 관련 심의절차 구체화, 위원구성의 공정성·투명성 확보 등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추가로 반영하기 위함. ☐ 주요 내용 ○ 위원 자격기준 및 연임제한 추가, 타 자치단체 및 내부위원회 위원 중복위촉 횟수 제한(안 제3조) ○ 위원장 표결권 및 가부 동수일 경우 결정권 명문화(안 제5조4항) ○ 도시계획위원회 안건처리기한 및 심의 반복횟수 규정 신설(안 제5조5항) ○ 도시계획위원의 해촉·제척·기피·회피에 관한 내용 신설(안 제5조의2) ○ 회의록 공개시점을 심의 종결후 6개월경과 후에서 1개월 경과후로 단축하여 운영과정상 투명성 강화(안 제10조) ○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운영 규정 신설(안 제13조) ○ 그 밖의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조례상 미비점 등을 보완 및 정비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연수구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이재호

2015. 1. 1

인천광역시연수구 조례 제 859 호

인천광역시연수구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연수구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구청장이 결정하는 도시계획의 심의”를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이 입안하는 도시계획안의 자문”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하는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하는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구성한다.”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인천광역시연수구(이하 ” 구 “라 한다) 의회의원, 공무원 및 토지이용·교통·환경 등 도시계획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당해 구의회 의원과 공무원이 아닌,”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으로 한다.

제3조제3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연수구의원
2. 도시계획과 관련 있는 행정기관의 공무원
3. 토지이용·건축·주택·교통·환경·방재·문화·농림·정보통신 등 도시계획
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제3조제4항 중 “연임할 수 있으며”를 “한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연수구의 다른 위원회 위원으로 5개를 초과하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 3개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할 수 없다. 다만 도시건축공동위원회 및 다른 법률 등의 규정에 의거 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을 자격요건으로 하는 위원회의 위원은 중복 위촉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4조제2항 및 제3항 중 “사고가 있을 때에는”을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로 한다.

제5조 제목 “(회의소집 및 의결정족수)”를 “(회의 운영)”으로 하고 제3항 중 “(제3조제3항의 위원 중 토지이용·교통·환경 등 도시계획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위원이어야 한다)”를 “(제3조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으로 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⑤ 위원회의 안건처리는 안건 상정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재심의 안건을 포함한다)에 하여야 하며, 반복횟수는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처리기한을 계산할 때 위원회 개최 결과에 따라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는데 걸리는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하며, 위원회에서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60일 또는 3회를 초과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위원의 해촉 및 제척·기피·회피) ① 구청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당사자의 동의 없이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품위를 손상시킨 때
2. 질병·출장 등으로 6개월 이상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3.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의 회의에 계속하여 3회 이상 불참한 때
4. 제3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하여 공정성을 해친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위원이 법 제113조의3제1항 및 영 제113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해당 안건의 심의·자문에서 제척된다.

③ 제2항의 제척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원장은 직권 또는 제5항에 따른 회피에 따라 해당 위원의 제척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에 안건의 심의·자문을 요청한 자는 제2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밝혀 그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⑤ 위원이 제2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유를 소명하고 해당 안건의 심의·자문에 대하여 회의 개최일 2일 전까지 회피하여야

한다.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으로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는 위원의 수는 제5조제3항의 재적인원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제6조 제목 “(소위원회)” 를 “(분과위원회)” 로 하고, 같은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중 “소위원회” 를 “분과위원회” 로 한다.

제7조 중 “소위원회” 를 “분과위원회” 로 한다.

제8조 제목 “(자료제출요구등)” 을 “(자료제출의 요구 등)” 으로 하고, 제8조의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및 관련 공무원 또는 도시계획입안 제안자에게 자료의 제출 및 설명을 요구 할 수 있다.
- ②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 또는 도시계획입안 제안자는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9조 제2항을 삭제하고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은 회의과정 및 그 밖에 직무 수행상 알게 된 도시계획 사항에 대하여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의 제목 “(회의사항의 대외누설금지)” 를 “(회의록의 공개)” 로 하고, 제10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법 제113조의2 및 영 제113조의3제1항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 심의 종결 후 1개월(단, 심의 보류된 안건의 경우 6개월)이 경과한 후에 열람하게 할 수 있다.
- ② 국회, 구의회, 감사원, 검찰 등의 요구에 따라 회의록 공개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열람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를 제14조로 하고,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공동위원회의 운영) 영 제25조제2항에 따른 공동위원회운영 등은 제3조제2항, 제4조, 제5조, 제5조의2, 제6조부터 제11조까지를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기능) (생 략) 1. (생 략) 2. 구청장이 결정하는 도시계획의 심의 3. 인천광역시도시계획조례 및 다른 법령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하는 사항 4. (생 략) 제3조(구성)①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상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생 략) ③ 위원은 인천광역시연수구(이하 "구"라 한다) 의회의원, 공무원 및 토지이용·교통·환경등 도시계획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당해 구의회 의원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전체위원의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④ 구의회 의원 또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u><신설></u>	제2조(기능)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 입안하는 도시계획안의 자문 3.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 -----의 심의 또는 자문 4. (현행과 같음) 제3조(구성)① ----- -----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③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 1. 연수구의원 2. 도시계획과 관련 있는 행정기관의 공무원 3. 토지이용·건축·주택·교통·환경·방재·문화·농림·정보통신 등 도시계획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④ ----- ----한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 ⑤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연수구의 다른 위원회 위원으로 5개를 초과하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 3개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할 수 없다. 다만 도시건축공동위원회 및 다른 법률 등의 규정에 의거 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을 자격요건으로 하는 위원회의 위원은 중복 위촉으로 보지 아니한다.

현행	개정안
제4조(위원장등의 직무) ① ~ ② (생략)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u>사고가 있을 때에는</u>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소집 및 의결정족수) ①~②(생략)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출석위원의 과반수는 제3조제3항의 위원 중 토지이용·교통·환경 등 도시계획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위원이어야 한다)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u><신설></u> <u><신설></u> <u><신설></u>	제4조(위원장등의 직무)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제5조(회의 운영)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출석위원의 과반수는 제3조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으로 한다)----- ----- ----- -----. ④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⑤ 위원회의 안전처리는 안전 상정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재심의 안전을 포함한다)에 하여야 하며, 반복횟수는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처리기한을 계산할 때 위원회 개최 결과에 따라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는데 걸리는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하며, 위원회에서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60일 또는 3회를 초과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5조의2(위원의 해촉 및 제척·기피·회피) ① 구청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당사자의 동의 없이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현행	개정안
	1. 위원회의 품위를 손상시킨 때 2. 질병·출장 등으로 6개월 이상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3.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의 회의에 계속하여 3회 이상 불참한 때 4. 제3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하여 공정성을 해친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위원이 법 제113조의3제1항 및 영 제113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해당 안건의 심의·자문에서 제척된다. ③ 제2항의 제척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원장은 직권 또는 제5항에 따른 회피 신청에 따라 해당 위원의 제척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에 안건의 심의·자문을 요청한 자는 제2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밝혀 그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⑤ 위원이 제2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유를 소명하고 해당 안건의 심의·자문에 대하여 회의 개최일 2일 전까지 회피하여야 한다.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으로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는 위원의 수는 제5조제3항의 재적인원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현행	개정안
제6조(소위원회) ①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장을 포함한 5인이상 9인이하로 기능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소위원회에 대한 위임 범위는 위원회의 결로 정한다. ③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 위원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소위원회에 위임된 사항중 특히 위원회가 지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위원회의 결을 위원회의 결로 보며 결사항은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분과위원회) ①----- ----- ----- 분과위원회----- -----. ②분과위원회----- -----. ③분과위원회----- ----- 분과위원회----- -----. ④분과위원회----- ----- 분과위원회----- -----.
제7조(현지조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이 있을 경우에는 소위원회 위원으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7조(현지조사) ----- ----- ----- 분과위원회----- -----.
제8조(자료제출요구등)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행정기관, 관계공무원 또는 도시계획입안 제안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의 요구할 수 있으며,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신설>	제8조(자료제출의 요구 등)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 또는 도시계획입안 제안자에게 자료의 제출 및 설명을 요구 할 수 있다. ②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 또는 도시계획입안 제안자는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9조(회의의 비공개) ① (생략) ② 위원회 회의록 공개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 안건 심의종결 후 6개월이 경과한 후에는 열람하게 할 수 있다. <신설>	제9조(회의의 비공개) ① (현행과 같음) ②<삭제> ③ 위원은 회의과정 및 기타 직무 수행상 알게 된 도시계획사항에 대하여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현행	개정안
제10조(회의사항의 대외누설금지) 위원은 회의과정 및 기타 직무 수행상 알게 된 도시계획사항에 대하여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회의록의 공개) ① 법 제113조의2 및 영 제113조의3제1항에 따라 위원회 회의록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 종결 후 1개월(단, 심의 보류된 안건의 경우 6개월)이 경과한 후에 열람하게 할 수 있다.
<신설>	② 국회, 구의회, 감사원, 검찰 등의 요구에 따라 회의록 공개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열람하게 할 수 있다.
<신설>	제13조(공동위원회의 운영) 영 제25조제2항에 따른 공동위원회 운영 등은 제3조제2항, 제4조, 제5조, 제5조의2, 제6조부터 제11조까지를 준용한다.
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 (현행 13조와 같음)

인천광역시연수구조례(공포)

제 명	주 요 내 용
인천광역시연수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 개정 이유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에 의거 군·구마다 광고물의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이 달라 혼란과 불편이 야기됨으로 이를 시조례의 기준으로 통일시키고, 지역주민이 창의성을 발휘하여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할 수 있도록 광고물 자율관리구역의 지정·운영으로 도시미관을 아름답게하고 공중에 대한 피해를 방지하여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주요 내용 ○ 시조례의 기준으로 통일된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방법의 완화·강화 규정 및 표시방법 등 삭제 ○ 법 제4조의2 및 시행령 제26조에 의거 자율관리 협정에 필요한 사항 신설 ○ 법 제4조의2제3항 및 시행령 제27조제3항에 따른 주민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 법 제4조의3 및 시행령 제28조제3항에 따른 광고물등 정비 시범지역의 지정·운영 및 정비지원 등에 관한 사항 신설 ○ 법 제5조2 제5항에 의거 광고물 등의 외국어 병기에 관한 사항 신설 ○ 그 밖의 개정사항 - 현 조례 제16조의 1 및 제28조에서 정한 지정게시대·벽보판 및 현수막게시대 관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통합하고 위탁 기관을 법인이나 단체로 하며 위탁절차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함(개정안 제18조) ☞ 현조례 지정게시대·벽보판의 위탁 기관은 비영리법인 및 단체등 임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연수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이재호

2015. 1. 1

인천광역시연수구 조례 제 860 호

인천광역시연수구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연수구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하 “법”이라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및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이하 “시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의 제출 서류 등) ① 영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 등”이라 한다)을 표시 또는 설치(이하 “표시”라 한다)하기 위하여 허가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원색 사진, 설명서 또는 설계도서를 제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다만, 영 제1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은 제외한다.

1. 영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옥상간판 중 옥상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4미터 미만

- 인 불링핀 모양의 간판과 게시시설 없이 옥상구조물에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경우
2. 영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돌출간판 중 광고물의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 미만인 광고물로서 1면의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3. 영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
 4. 영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표시하여 높이 4미터 미만인 경우
 5. 영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교통수단이용 광고물
 6. 영 제4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선전탑
 7. 그 밖에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영제32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연수구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 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 등
- ② 영 제7조제1항제4호에서 “심의관련 서류”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대상 광고물 등의 사전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말한다.
- ③ 영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구조안전확인서류 제출대상 광고물 등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건물의 옥상에 별도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하는 광고물 등 중 그 상단의 높이가 4미터 이상인 옥상간판 및 애드벌룬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 등

제3조(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 ① 구청장은 영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광고물의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허가 및 신고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 또는 신고 사항에 대한 내용이 전산화된 경우에는 그 전산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영 제7조제3항 단서에 따라 현수막·벽보·전단의 신고를 수리하는 때에는 광고물의 우측 하단의 여백에 별지 제2호서식의 검인, 압인 또는 천공을 함으로써 신고 필증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영 제7조 및 제10조에 따라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광고물 등의 표시기간 종료일 30일 전까지 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에게 표시기간 종료를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표시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4조(변경신고 대상 광고물 등) 영 제9조제1항 단서 전단에 따라 허가대상 광고물 등 중 다음 각 호의 광고물 등을 제외하고는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광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타사광고(건물 등의 벽면을 이용하는 광고물 등과 옥상간판을 말한다)를 표시하는 광고물 등
2. 네온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
3.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 중 광고물 등의 규격, 사용자재, 표시 위치 또는 장소를 변경하는 경우

제5조(연장신고 대상 광고물 등) ①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허가대상 광고물 등 중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그 표시기간을 연장하는 광고물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과 타사광고를 표시하는 광고물 등은 제외한다.

1. 시 조례 제5조제4호 따른 가로형 간판
2. 영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돌출간판
3. 영 제15조제4호 나목에 따른 옥상간판과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옥상간판
4. 영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
5. 영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설치하는 경우
6.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 등

제6조(간판표시계획서의 제출 대상 용도) 영 제23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건축법」 제2조제2항제7호에 따른 판매시설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

제7조(자율관리협정) 영 제26조제2항제7호에서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 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자율관리협정의 승계·결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광고물 등의 위치·모양·크기·색깔을 표시한 디자인 시안(試案)
3. 광고물 등의 유지·관리 및 감시활동계획
4. 자율관리협정의 이행을 위한 사업계획서
5. 그 밖에 구청장이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주민협의회의 운영) ① 영 제27조제3항제3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주민협의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율관리협정의 변경 및 폐지의 결정
2. 자율관리구역의 지정 및 운영을 위한 예산의 집행 및 정산
3. 그 밖에 구청장이 주민협의회의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영 제27조제4항에 따라 주민협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협의회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한다.
 - 가. 당해 자율관리구역 내의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지상권자·임차권자
 - 나. 시민단체 및 옥외광고·디자인 관련 전문가
 - 다. 당해 지역의 구의회 의원
2. 주민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3. 주민협의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4. 위원장은 주민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주민협의회를 소집한다.
5.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6. 주민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7. 그 밖에 주민협의회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주민협의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 ③ 주민협의회는 자율관리협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영 제26조제2항 각 호의 자율관리협정을 체결하여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④ 주민협의회는 그 대표자 및 위원, 자율관리협정 체결자의 변동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변동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 구청장은 영제2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 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이하 “정비시범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운영한다.

1. 구청장은 수요조사를 거쳐 정비시범 구역의 지정목적, 명칭·위치 및 규모, 사업기간, 사업비 및 예산지원, 광고물 등의 디자인등이 포함된 사업(이하 “정비시범사업”이라 한다) 계획을 수립한다.
2. 구청장은 제1호에 따른 정비시범사업 계획을 정비시범구역 안의 주민을 대상으로 15일 이상 공람을 하여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3. 구청장은 제2호에 따른 의견수렴 절차가 끝나면 인천광역시장과 사전협의를 거친 후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정비시범사업 계획을 고시하여야 한다.
4. 구청장은 정비시범사업이 종료한 후에 광고물 등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민협의회를 구성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민협회의 구성과 운영은 제8조의 규정에 준용한다.
5. 그 밖에 정비시범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할 수 있다.

제10조(광고물 등의 정비 등 지원) ① 구청장은 제9조에 따른 정비시범구역에서 광고물 등을 정비하는 자에게 정비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법 제5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을 준수하고 광고산업 발전에 기여한 광고업자에 대해서는 우수 광고업자로 지정하는 등 인센티브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법 제5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질적 향상과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광고물 등의 공동 제작 및 디자인 향상을 위한 작업장 등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광고물 등의 외국어 병기) ① 법 제5조의2제5항에 따라 구청장은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의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광고물 등에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하도록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광고물 등을 표시하려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건물면적으로 제한하여 고시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물면적으로 제한하는 구역의 범위
2. 광고물 등의 디자인
3. 그 밖에 한글과 외국어의 병기에 필요한 사항

제12조(광고물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영제32조제2항에 따른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옥외광고·교통·환경·도시계획·건축·디자인·청소년 등 광고물 등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국어·옥외광고·교통·환경·도시계획·건축·디자인·청소년 등 광고물 등 관련 분야 전문가
3. 그 밖에 광고물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② 위원회는 위원장 옥외광고업무 담당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 사람이 된다.
-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옥외광고담당으로 한다
- ④ 영 제32조제5항 및 제10항에 따른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된다.
 2. 소위원회는 소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3명 이상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관계 공무원 위원 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수의 2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
 3. 소위원회의 위원은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 자가 된다.
 4. 소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해당 단체의 임원이거나 임원이었던 경우
 2. 위원이 해당 당사자와 친족 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가 대리인에 관여하거나 관여했던 경우
 4. 위원이 해당사항에 관하여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5. 그 밖에 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⑥ 위원회 심의·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 ⑦ 위원 본인이 제5항 또는 제6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13조(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① 영 제33조제2호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하거나 심의를 부칠 수 있도록 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과 영에서 규정한 사항과 시 조례 및 이 조례에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2. 높이 4미터 이상인 옥상간판(옥상에 고정하는 애드벌룬을 포함한다)의 표시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항
3. 표시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의 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4. 1면의 표시면적이 10제곱미터 이상의 네온류 및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광고물 등의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도록 한 사항

② 소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게 하거나 심의를 부칠 수 있도록 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심의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는 사항
2. 그 밖에 구청장이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도록 하는 사항

③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의 등을 위하여 이메일, 서면, 화상회의 등의 방법으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④ 심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제1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전문가·이해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심의안건의 제출방법, 심의 기준 등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영 제38조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 사무소의 등록을 한 사람
2.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관련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3. 「국가기술자격법」(「자격기본법」 제17조에 따라 국가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옥외광고·건축·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규정된 사항과 동등한 안전점검 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이나 단체

제15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기준 등) 영 제38조 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검사 시설 및 장비, 검사원의 자격 및 인원을 갖추어야 하며, 구청장은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 사무실
2. 작업 차량, 사다리, 절연저항계, 카메라, 망원경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옥외광고·건축·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
(분야별 1인 이상을 포함되어야 한다)
4.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점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시설 또는 장비

제16조(안전점검의 위탁절차 등) ① 구청장은 제15조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중에서 하나 이상을 지정하여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위탁기간, 위탁받을 자의 임무, 관계 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위탁지정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위탁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⑥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한 때에는 위탁받은 자의 명칭 및 위탁기간 등을 고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검사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17조(안전점검의 절차 및 검사요령 등) ① 구청장은 안전점검을 별지 제6호서식의 안전점검검사서에 따라 점검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별지 제7호서식의 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안전점검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갖춘 공무원을 검사공무원으로 지정하여 직접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영 제37조제1항에 규정한 안전점검의 기준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검사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면서 관계 법령 및 이 조례를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시정조치 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결과를 접수하여 광고물 등이 안전점검에 합격한 때에는 지체 없이 영 제37조제4항의 안전점검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8조(공공게시시설 관리의 위탁 등) ① 구청장은 시 조례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에 따라 설치된 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지정벽보판(이하 “공공게시시설”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공공게시시설의 관리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을 공개경쟁에 의해 심의위원회의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의 항목에 의한 평가를 거쳐 선정하여 공공게시시설을 위탁하여 관리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공공게시시설의 관리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요건·시설기준·선정방법, 공공게시시설의 명칭, 수량, 위탁기간 및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의 임무 등 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공공게시시설의 관리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8호 서식의 위탁지정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구청장이 공공게시시설 관리 수탁자를 선정하였을 때에는 수탁자의 명칭, 대표자 성명, 영업장 주소, 위탁한 내용, 위탁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하며, 수탁자에게 별지 9호 서식의 위탁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⑤ 공공게시시설 관리 수탁자는 공공게시시설에 게시할 광고물의 신고 대행 및 신고된 광고물의 게시와 제거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공공게시시설이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공공게시시설의 위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9조(제거된 광고물 등의 관리 등) ① 구청장은 영 제40조에 따라 광고물 등을 제거한 경우에는 그 광고물 등이 있던 곳에 제거한 취지와 그 광고물 등의 보관장소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표시하기 곤란한 광고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영 제40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광고물 등의 종류 및 수량
2. 광고물 등의 표시 내용
3. 위반 장소 및 위치
4. 제거한 시간, 보관 장소 및 담당자 등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광고물 등을 보관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비치하여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영 제41조에 따라 광고물 등을 반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제20조(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영 제43조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21조(옥외광고업의 등록 관리 등) ① 구청장은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옥외광고업자가 옥외광고업을 폐업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 사실을 안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폐업한 사실을 현지 확인하고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한다.

② 법 제11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옥외광고업자가 영업소 안에 비치 또는 표시하여야 하는 장부 및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지 제12호서식의 옥외광고물 등 관리대장
2. 영 제44조제5항의 옥외광고업 등록증(영업소를 방문하는 자가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3. 별지 제13호 서식의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 교육수료필증

제22조(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① 구청장은 영 제49조제2항에 따른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별표 2와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매년 10월 말까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다음 연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1. 교육의 종류별 실시시기·내용·시간 및 장소
2. 교육 대상자
3. 교육 실시방법·절차 및 비용
4.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교육을 실시하기 15일 전까지 교육대상자를 확정하여 개별통지를 하여야 하며,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보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영 제4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신규로 옥외광고업에 종사하려는 자는 제3항에 불구하고 구청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교육을 받는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수료필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14호서식의 교육이수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⑥ 구청장은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교육을 받은 자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⑦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교육을 받을 수 없을 경우에는 사전에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5호 서식의 교육불참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

1.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교육에 응할 수 없을 때
2.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구속 중일 때
3. 「향토예비군법」 및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교육훈련기간과 중복된 때
4. 그 밖에 관혼상제, 재해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응할 수 없을 때

제23조(교육의 위탁 등) ① 구청장은 영 제50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기간, 관계 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임무, 자격요건 및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하며,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교육위탁지정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에 교육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자로 위탁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교육위탁지정서를 교부하고, 위탁자의 명칭, 대표자 성명, 주소, 위탁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교육의 위탁기간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교육을 위탁받은 자가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제22조제2항에 규정한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12월 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교육을 위탁받은 자가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제22조제5항의 교육이수 대장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고, 구청장은 교육을 수료한 자에게 교육수료 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⑥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5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교육을 받는 자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제22조제2의 제3호에 따라 그 금액과 산출근거를 사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⑦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5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한 후에 교육실시결과, 교육 비용의 수납 및 집행내역 등을 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⑧ 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7항에도 불구하고 법제11조의4에 따른 한국 옥외광고센터에서 개설한 사이버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교육을 수료한 것으로 본다.

제24조(수수료) ①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 등의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
2.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수수료는 별표 4와 같다.
3.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옥외광고업 등록 수수료는 별표 5와 같다.

② 수수료는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광고물 등의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구제절차를 시행하는 경우
2. 법령의 개정으로 이미 표시된 광고물 등이 새로이 허가 또는 신고대상으로 분류된 경우(구청장이 일제 조사하여 허가 또는 신고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2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영 제55조에 따라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광고물 등은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업무수탁자, 관리수탁자, 교육수탁자는 각각 이 조례에 따른 수탁자로 보며, 그 위탁기간은 계속된다.

③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이 처분한 사항과 처분 중인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별표 1] <개정 2014. . . >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제20조 관련)

광고물등	이행강제금	비 고
가. 가로형 간판, 세로형 간판 및 공연간판		
1) 면적 5㎡ 미만		
- 2.0㎡ 이하	20만원	
- 2.1㎡ 이상 3.0㎡ 이하	30만원	
- 3.1㎡ 이상 4.0㎡ 이하	40만원	
- 4.1㎡ 이상 5.0㎡ 미만	45만원	
2) 면적 5㎡ 이상 10㎡ 미만		
- 5.0㎡ 이상 6.0㎡ 이하	55만원	
- 6.1㎡ 이상 7.0㎡ 이하	65만원	
- 7.1㎡ 이상 8.0㎡ 이하	75만원	
- 8.1㎡ 이상 9.0㎡ 이하	85만원	
- 9.1㎡ 이상 10.0㎡ 미만	95만원	
3) 면적 10㎡ 이상 20㎡ 미만		
- 10.0㎡ 이상 12.0㎡ 이하	110만원	
- 12.1㎡ 이상 14.0㎡ 이하	130만원	
- 14.1㎡ 이상 16.0㎡ 이하	145만원	
- 16.1㎡ 이상 18.0㎡ 이하	165만원	
- 18.1㎡ 이상 20.0㎡ 이하	185만원	
4) 면적 20㎡ 이상	200만원+면적 20㎡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10만원을 더한 금액	

	미만	
나. 돌출간판		
1) 연면적 5㎡ 미만		
- 2.0㎡ 이하	20만원	
- 2.1㎡ 이상 3.0㎡ 이하	30만원	
- 3.1㎡ 이상 4.0㎡ 이하	40만원	
- 4.1㎡ 이상 5.0㎡ 미만	49만원	
2) 연면적 5㎡ 이상 10㎡ 미만		
- 5.0㎡ 이상 6.0㎡ 이하	55만원	
- 6.1㎡ 이상 7.0㎡ 이하	65만원	
- 7.1㎡ 이상 8.0㎡ 이하	75만원	
- 8.1㎡ 이상 9.0㎡ 이하	85만원	
- 9.1㎡ 이상 10.0㎡ 미만	95만원	
3) 연면적 10㎡ 이상 20㎡ 미만		
- 10.0㎡ 이상 12.0㎡ 이하	110만원	
- 12.1㎡ 이상 14.0㎡ 이하	130만원	
- 14.1㎡ 이상 16.0㎡ 이하	150만원	
- 16.1㎡ 이상 18.0㎡ 이하	170만원	
- 18.1㎡ 이상 20.0㎡ 이하	190만원	
4) 연면적 20㎡ 이상	200만원+연면적 20㎡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10만원을 더한 금액	
	미만	
다. 지주 이용 간판 및 지면에 설치 하는 애드벌룬		

1) 연면적 3㎡ 미만		
- 0.5㎡ 이하	30만원	
- 0.6㎡ 이상 1.0㎡ 이하	35만원	
- 1.1㎡ 이상 2.0㎡ 이하	40만원	
- 2.1㎡ 이상 3.0㎡ 미만	48만원	
2) 연면적 3㎡ 이상 5㎡ 미만		
- 3.0㎡ 이상 3.5㎡ 이하	55만원	
- 3.6㎡ 이상 4.0㎡ 이하	65만원	
- 4.1㎡ 이상 4.5㎡ 이하	80만원	
- 4.6㎡ 이상 5.0㎡ 미만	95만원	
3) 연면적 5㎡ 이상 10㎡ 미만		
- 5.0㎡ 이상 6.0㎡ 이하	110만원	
- 6.1㎡ 이상 7.0㎡ 이하	130만원	
- 7.1㎡ 이상 8.0㎡ 이하	150만원	
- 8.1㎡ 이상 9.0㎡ 이하	170만원	
- 9.1㎡ 이상 10.0㎡ 이하	190만원	
4) 연면적 10㎡ 이상	200만원+연면적 10㎡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10만원을 더한 금액 미만	
라. 옥상간판,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 하는 애드벌룬 및 건물 4층이상 벽면에 설치하는 가로형 간판		
1) 연면적 5㎡ 미만		
- 2.0㎡ 이하	30만원	

- 2.1㎡ 이상 3.0㎡ 이하	35만원	
- 3.1㎡ 이상 4.0㎡ 이하	40만원	
- 4.1㎡ 이상 5.0㎡ 이하	48만원	
2) 연면적 5㎡ 이상 10㎡ 미만		
- 5.0㎡ 이상 6.0㎡ 이하	55만원	
- 6.1㎡ 이상 7.0㎡ 이하	65만원	
- 7.1㎡ 이상 8.0㎡ 이하	75만원	
- 8.1㎡ 이상 9.0㎡ 이하	85만원	
- 9.1㎡ 이상 10.0㎡ 미만	95만원	
3) 연면적 10㎡ 이상 20㎡ 미만		
- 10.0㎡ 이상 12.0㎡ 이하	110만원	
- 12.1㎡ 이상 14.0㎡ 이하	130만원	
- 14.1㎡ 이상 16.0㎡ 이하	150만원	
- 16.1㎡ 이상 18.0㎡ 이하	170만원	
- 18.1㎡ 이상 20.0㎡ 미만	190만원	
4) 연면적 20㎡ 이상 50㎡ 미만		
- 20.0㎡ 이상 25.0㎡ 이하	210만원	
- 25.1㎡ 이상 30.0㎡ 이하	230만원	
- 30.1㎡ 이상 35.0㎡ 이하	245만원	
- 35.1㎡ 이상 40.0㎡ 이하	260만원	
- 40.1㎡ 이상 45.0㎡ 이하	280만원	
- 45.1㎡ 이상 50.0㎡ 미만	290만원	
5) 연면적 50㎡ 이상	300만원 + 연면적 50㎡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10만원을 더한 금액 미만	
마. 선전탑, 아치광고물 및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		

1) 선전탑, 아치광고물	
- 연면적 5.0㎡ 이하	30만원
- 연면적 6㎡ 이상 10㎡ 이하	50만원
- 연면적 11㎡ 이상 15㎡ 이하	60만원
- 연면적 16㎡ 이상 20㎡ 이하	70만원
- 연면적 21㎡ 이상	70만원 + 연면적 21㎡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5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
2)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	
- 애드벌룬(공) 1개	30만원
- 애드벌룬(공) 2개	60만원
- 애드벌룬(공) 3개 이상	80만원+3개를 초과하는 애드벌룬 1개당 5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
바.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1) 시계탑·조명탑·안내탑·일기예보탑	
- 연면적 5㎡ 이하	30만원
- 연면적 6㎡ 이상 10㎡ 이하	50만원
- 연면적 11㎡ 이상 15㎡ 이하	60만원
- 연면적 16㎡ 이상 20.0㎡ 이하	70만원
- 연면적 21㎡ 이상	80만원+연면적 21㎡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5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
2) 교통안내소	가로형 간판에 준함
3) 안내게시판·지정벽보판·버스승강장· 택시승강장·관광안내도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4) 시 조례에서 인정한 편익시설물	비슷한 유형의 광고물등에 준함
사.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비슷한 유형의 광고물등에 준함
아.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1) 비행선	
- 연면적 10㎡ 이하	150만원
- 연면적 11㎡ 초과	150만원+연면적 11㎡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10만원을 더한 금액이하
2) 그 밖의 교통수단	
가) 연면적 3㎡ 미만	
- 1.0㎡ 이하	10만원
- 1.1㎡ 이상 2.0㎡ 이하	20만원
- 2.1㎡ 이상 3.0㎡ 미만	29만원
나) 연면적 3㎡ 이상 5㎡ 미만	
- 3.0㎡ 이상 4.0㎡ 이하	35만원
- 4.1㎡ 이상 5.0㎡ 미만	45만원
다) 연면적 5㎡ 이상	50만원+연면적 5㎡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5만원을 더한 금액 미만
자. 그 밖의 유형의 광고물	가로형 간판에 준함

비고 :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의 계산방법

1. 이행강제금은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면적을 산정할 때 지주를 제외하고, 게시틀(광고물의 테두리)는 포함한다.

2.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계산한 단위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산정한다.
3. 입체형·모형 등 변형된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최대 외곽선을 사각형으로 가상 연결한 면적 또는 단면적의 70%에 면수를 적용한다.
4.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 등의 계산방법
 - 가. 백열등 또는 현광등을 이용하는 단순조명 광고물 등과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이행강제금의 1.5배를 적용한다.
 - 나. 광원이 직접 노출되어 표시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이행강제금의 2배를 적용한다.
 - 다. 광고물 등의 일부가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 산정금액에 전기사용 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5. 법 제10조의3제4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반복하여 부과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직전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의 30%를 가산하여 부과할 수 있다.
6. 한 업소에서 여러 개의 불법 광고물이 발견되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각 광고물 표시면적을 모두 합산하여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계산한다.
7. 이행강제금의 총 금액에서 1천원 미만은 버린다.

[별표 2]<개정 2014. . . >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의 교육(제22조1항 관련)

종 류	교육시간	교육내용	교육대상 및 방법	비고
신규교육	6시간	가. 관계 법규(3시간)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등 ※ 대통령령 및 조례를 포함한다. 나. 표시에 관한 사항(3시간) - 색채, 재료, 구조, 제작, 시공, 도시 미관, 안전 등	가. 교육대상 - 신규로 옥외광고업에 종사하려는 자 - 옥외광고업 종사자 중 교육을 희망하는 자 (종업원을 포함한다.) 나. 교육방법 - 집합교육 - 사이버교육	
보수교육	3시간	가. 관계법규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등 ※ 대통령령 및 조례를 포함한다.	가. 교육대상 - 옥외광고업자(대표자) ※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가 아닌 경우에도 가능 나. 교육방법 - 집합교육 - 사이버교육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등 제·개정 시
행정처분 대상자 교육	3시간	가. 관계법규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등 ※ 대통령령 및 조례를 포함한다.	가. 교육대상 - 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옥외광고업자 나. 교육방법 - 집합교육 - 사이버교육 ※ 교육대상자가 적은 경우에는 보수교육 등에 통합 가능	
기타교육	별도 정함	가. 세부 교육시간, 교육내용, 교육대상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하여 공고함		

[별표 3]<개정 2014. . . >

광고물 등의 허가·신고 수수료(제24조1항제1호 관련)

광고물등	수수료	비 고
가. 가로형 간판		
1) 일반 가로형 간판 2)를 제외한 경우		
- 면적 6㎡ 이하	4,000원	
- 면적 6㎡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1,500원	
2) 시 조례 제5조제4호 중 건물 옆 벽면 및 뒷 벽면의 4층 이상의 간판 (판류형으로 한정한다)		
- 면적 6㎡ 이하	40,000원	
- 면적 6㎡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2,000원	
나. 세로형 간판		
- 면적 6㎡ 이하	3,000원	
- 면적 6㎡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1,500원	
다. 돌출간판		
- 연면적 3.5㎡ 이하	20,000원	
- 면적 3.5㎡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1,000원	
- 이·미용업소표지등 및 의료기관·약국	5,000원	

표시등(개당)		
라. 공연간판	가로형 간판 1)과 같음	
마. 옥상간판		
- 연면적 10㎡ 이하	40,000원	
- 연면적 10㎡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5,000원	
바. 지주 이용 간판		
- 연면적 10㎡ 이하	20,000원	
- 연면적 10㎡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2,000원	
사. 애드벌룬		
- 공중에 띄우는 것(1개)	20,000원	
-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것	옥상간판에 준함	
- 지면에 설치하는 것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아.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 연면적 1㎡ 이하	3,000원	
- 연면적 1㎡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1,000원	
자.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교통시설 외부에 표시하는 경우)		

- 면적 및 연면적 5㎡ 이하	13,000원	
- 면적 및 연면적 5㎡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15,000원	
차.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1대)		
- 비행선	400,000원	
- 비행기·철도차량·도시철도차량·선박	10,000원	
- 사업용자동차·화물자동차·자가용 자동차	2,000원	
카. 선전탑 및 아치광고물(1개)	5,000원	
타. 창문 이용 광고물(1개)	5,000원	
파. 현수막 등		
1) 현수막		
- 10㎡ 이하	6,000원	
- 10㎡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1,500원	
2) 현수막 게시시설		
- 10㎡ 이하	10,000원	
- 10㎡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2,000원	
하. 벽보(50매)	5,000원	
거. 전단(1,000매)	5,000원	

비고 : 수수료 징수방법

1. 수수료 산정은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하며, 지주면적을 제외하고 게시틀(광고물의 테두리)의 면적은 포함한다.
2. 입체형, 입체형 문자·도형, 특수모형 등 표시면적의 계산이 특수한 경우에는 최외곽선을 사각형으로 가상연결한 면적·단면적의 70퍼센트에 면수를 적용한다.
3. 전기를 이용하는 경우(백열등 또는 형광등을 이용하는 단순조명을 하는 광고물, 외부로 노출되지 않고 조명의 색이 변하지 않는 LED 소재의 조명을 이용하는 광고물은 제외한다)에
 는 일반 수수료 산정금액에 전기이용 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외곽선에 전기를 이용하는 경우등 비율계산이 곤란한 경우에는 최외곽선을 기준으로 함
4. 영 제9조제1항 관련, 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중 광고내용 만을 변경할 때에는 본 수수료의 2분의 1을 적용하되 광고물등의 규격·사용자재·표시 위치 또는 장소를 변경하는 경우는 수수료 전액을 적용한다.
5. 영 제10조 관련, 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본 수수료의 전액을 적용한다.

[별표 4]<개정 2014. . . >

광고물 등 안전점검 수수료(제24조1항제2호 관련)

광고물 등	적용기준	수수료
가. 가로형 간판(건물 4층 이상에 설치하거나 한변의 길이가 10m 이상인 경우)	- 연면적 6㎡ 이하	14,000원
	- 연면적 6㎡ 초과 20㎡ 이하	20,000원
	- 연면적 20㎡ 초과시 1㎡당	800원
	더하는 금액	
나. 돌출간판(광고물 윗부분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 이상이고 1면의 면적이 1㎡ 이상인 경우)	- 연면적 3.5㎡ 이하	14,000원
	- 연면적 3.5㎡ 초과 10㎡ 이하	20,000원
	- 연면적 10㎡ 초과시 1㎡당	1,600원
	더하는 금액	
다. 옥상간판	- 연면적 50㎡ 이하	21,000원
	- 연면적 50㎡ 초과 70㎡이하	38,000원
	- 연면적 70㎡ 초과시 1㎡당	1,300원
	더하는 금액	
라. 지주 이용 간판·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지면으로부터의 높이가 4미터 이상인 경우)	- 연면적 10㎡ 이하	14,000원
	- 연면적 10㎡ 초과 20㎡ 이하	20,000원
	- 연면적 20㎡ 초과시 1㎡당	800원
	더하는 금액	
마. 애드벌룬 (4미터 이상의 게시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1.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것	- 다의 옥상간판에 준함	
2. 지면에 설치하는 것	- 라의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바. 공연간판 (4층 이상에 설치하거나 한변의 길이가 10m 이상인 경우)	- 가의 가로형 간판에 준함	
※ 시 조례에 신설한 경우에 규정		
사. 현수막 게시시설	- 연면적 30㎡ 이상 40㎡ 이하	11,000원
	- 연면적 40㎡ 초과시 1㎡당	600원
	더하는 금액	
아. 그 밖의 안전점검 대상광고물	- 같은 유형의 광고물등에 준함	

※ 제17조에 의거 안전도검사를 위탁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부가가치세를 가산하여 적용할 수 있다.

※ 광고물 등의 연면적에는 게시시설의 면적을 포함하되, 게시시설은 면적의 2분의 1을 산정하며(단순 지주 산정제외), 전기를 이용하는 경우(백열등 또는 형광등을 이용하는 단순조명을 하는 광고물은 제외한다)에는 해당 수수료의 1.5배를 적용한다.

[별표 5]<개정 2014. . . >

옥외광고업 등록 수수료(제24조1항제3호 관련)

구 분	수 수 료	비 고
가. 옥외광고업 신규 등록	15,000원	
나. 옥외광고업 변경 등록	7,000원	

비고 : 등록 수수료의 계산방법

옥외광고업의 변경 등록사항 중 다음의 경우에는 수수료의 납부를 면제한다.

- 가. 관할 구역 안에서 주소를 변경한 경우
- 나. 업소명을 변경한 경우

[별표 6]<개정 2014. . >

과태료 부과기준(제25조 관련)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비고
1. 법 제3조를 위반하여 입간판·현수막· 벽보·전단을 표시한 경우 가. 입간판 1) 도로(보도를 포함한다)에 설치한 경우 가) 연면적 1㎡ 미만 - 0.5㎡ 이하 - 0.6㎡ 이상 0.8㎡ 이하 - 0.9㎡ 이상 1.0㎡ 미만 나) 연면적 1㎡ 이상 2㎡ 미만 - 1.0㎡ 이상 1.3㎡ 이하 - 1.4㎡ 이상 1.6㎡ 이하 - 1.7㎡ 이상 2.0㎡ 미만 다) 연면적 2㎡ 이상 3㎡미만 - 2.0㎡ 이상 2.3㎡ 이하 - 2.4㎡ 이상 2.6㎡ 이하 - 2.7㎡ 이상 3.0㎡ 미만 라) 연면적 3㎡ 이상	법 제20조 제1항제1호	13만원 22만원 32만원 42만원 50만원 64만원 75만원 100만원 129만원 130만원+연면적 3㎡ 초과하는 면적의 0.5㎡ 당 15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	

2) 그 밖의 지역·장소에 설치한 경우			
가) 연면적 1㎡ 미만			
- 0.5㎡ 이하		8만원	
- 0.6㎡ 이상 0.8㎡ 이하		12만원	
- 0.9㎡ 이상 1.0㎡ 미만		14만원	
나) 연면적 1㎡ 이상 2㎡ 이하			
- 1.0㎡ 이상 1.3㎡ 이하		25만원	
- 1.4㎡ 이상 1.6㎡ 이하		33만원	
- 1.7㎡ 이상 2.0㎡ 미만		49만원	
다) 연면적 2㎡ 이상 3㎡ 미만			
- 2.0㎡ 이상 2.3㎡ 이하		58만원	
- 2.4㎡ 이상 2.6㎡ 이하		67만원	
- 2.7㎡ 이상 3.0㎡ 미만		79만원	
라) 연면적 3㎡ 이상		80만원+연면적 3㎡	
		초과하는 면적의 0.5㎡	
		당 8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	
나. 현수막			
1) 현수막의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			
가) 면적 3㎡ 미만			
- 1.0㎡ 이하		8만원	
- 1.1㎡ 이상 2.0㎡ 이하		12만원	
- 2.1㎡ 이상 3.0㎡ 미만		14만원	
나) 면적 3㎡ 이상 5㎡ 미만			

- 3.0㎡ 이상 3.7㎡ 이하	22만원
- 3.8㎡ 이상 4.4㎡ 이하	25만원
- 4.5㎡ 이상 5.0㎡ 미만	32만원
다) 면적 5㎡ 이상 10㎡ 미만	
- 5.0㎡ 이상 6.0㎡ 이하	42만원
- 6.1㎡ 이상 8.0㎡ 이하	58만원
- 8.1㎡ 이상 10.0㎡ 미만	75만원
라) 면적 10㎡ 이상	80만원 + 연면적 10㎡ 초과하는 면적의 1㎡당 15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
2) 1)을 설치하여 차량통행이나 일반인의 보행을 현저히 방해한 경우	해당 과태료의 2배까지 중과
다. 벽보	
1) 일반 광고내용	
- 1장 이상 10장 이하	장당 17천원
- 11장 이상 20장 이하	장당 25천원
- 21장 이상	장당 42천원
2)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 1장 이상 10장 이하	장당 25천원
- 11장 이상 20장 이하	장당 33천원
- 21장 이상	장당 50천원
라. 전단	

1) 일반 광고내용			
- 1장 이상 10장 이하		장당 8천원	
- 11장 이상 20장 이하		장당 17천원	
- 21장 이상		장당 25천원	
2)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 1장 이상 10장 이하		장당 25천원	
- 11장 이상 20장 이하		장당 33천원	
- 21장 이상		장당 50천원	
2.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법 제20조 제1항제2호		
가. 30일 이상 90일 미만		67만원	
나. 90일 이상 180일 미만		117만원	
다. 180일 이상 1년 미만		217만원	
라. 1년 이상		400만원	
3. 법 제11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영업 소내 옥외광고물 관련 장부 등을 비치 하지 아니하였거나 등록번호 등을 표시 하지 않은 경우	법 제20조 제1항제3호 및 제4호		
가. 연1회 위반한 경우		80만원	
나. 연2회 위반한 경우		200만원	
다. 연3회 이상 위반한 경우		500만원	

4. 법 제16조에 따른 광고물 실명제 표시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한 경우	법 제20조 제1항제5호		
가. 연 1회 위반한 경우		80만원	
나. 연 2회 위반한 경우		200만원	
다. 연 3회 위반한 경우		500만원	
5. 법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이수 하지 않은 경우	법 제20조 제2항		
가. 1회 위반한 경우		25만원	
나. 2회 연속 위반한 경우		45만원	
다. 3회 연속 위반한 경우		100만원	

비고 : 과태료 금액의 계산 방법

1. 과태료는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지주를 제외하고 계
시틀(광고물의 테두리)은 포함한다.
2.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산정할 때에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산정한다.
3. 입체형·모형 등 변형된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최대 외곽선을 사각형으로 가상 연
결한 면적 또는 단위면적의 70%에 면수를 적용한다.
4.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 등에 대한 과태료 금액의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 가. 백열등 또는 형광등을 이용하는 단순조명 광고물등과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과태료의 1.5배를 적용한다.
 - 나. 광원이 직접 노출되어 표시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 등을 사용하는 광고물 등은 500만원 이
하의 범위에서 해당과태료의 2배를 적용한다.

다. 광고물 등의 일부가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과태료 산정금액에 전기 사용 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5. 최초로 과태료부과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법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 대상자가 된 자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직전 과태료 부과금액의 30%를 가산하여 부과할 수 있다.

6. 과태료의 총 부과금액에서 1천원 미만은 버린다.

옥외광고물 등 표시(변경)허가 및 신고대장

[illegible]

364mm×257mm[보존용지(1종) 70g/m²]



○ 현 수 막 : 지름 7센티미터 이상

○ 벽보·전단 : 지름 5센티미터 이내

※ 다만, 천공의 방법인 경우에는 이를 변형하여 적용할 수 있다.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신청서

제 호		처리기간 30일
신청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업소명(단체명)	
	주소	
영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38조 및 「인천광역시연수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1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인천광역시연수구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16조에 규정한 검사 시설 및 장비, 검사자의 자격 및 인원 확보에 관한 증빙서류 사본 1부	수수료
		인천광역시연수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참조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서

제 호		
수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업소명(단체명)	
	주소	
영업장 소재지		위탁기간 20 . . .~20 . . .(년 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38조 및 「인천광역시연수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16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규격	가로 6cm × 세로 8cm	바탕색	연녹색	글자	검정색
----	-----------------	-----	-----	----	-----

< 앞 쪽 >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검 사 원 증 사 진 (3.5×4.5) 인천광역시연수구

< 뒤 쪽 >

소 속 : 직 위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자 격 기 한(20 . . ~ 20 . .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9 조에 따른 안전점검 검사원임을 증명함 년 월 일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직인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검사서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 쪽)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업소명	전화번호
	주소	검사구분 [] 신규 [] 연장 [] 변경
광고물 등의 허가 일자 및 번호		광고물등의 종류
표시위치 또는 장소		광고물등의 규격
신청일자		검사일자
점검내용		
점검의견		
점검결과		[] 합격 [] 불합격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37조 및 「인천광역시연수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을 위와 같이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일 월 년

검사자 소속

직위(직명)

성명

(서명 또는 인)

검사항목		검사내용 및 기준	검사결과
기본사항		설계도서 및 허가사항의 일치여부(시설·구조·규격·내용 등의 무단변경 등)	
법 규		각종 법규 및 고시·명령 위반행위	
사용자재		부식방지의 자재 사용 또는 도장시공 여부	
		국가·공공기관에 의한 공인 규격품 및 자재의 사용 여부	
		철근, 앵커볼트, 골조 등 주요 구조부 사용자재의 규격, 밀도, 배치상태 등	
접합부위	기초부분	콘크리트 기초 표면의 적정경사, 노화, 균열, 변형 등 적합성 및 접합상태	
		접합부분 건물의 강도 확보 : 건물의 균열, 파손, 변형 등(하중, 풍압력 등 고려)	
	구성자재	접합상태, 볼트·리벳·너트 등의 풀림, 마모 등	
		변형, 휨, 균열, 이탈, 파손, 부식 여부 등	
	용접상태	균열, 변형, 부식, 틈 발생 등	
전기설비		배선상태 : 적정용량, 과열, 오손(汚損), 파손, 노후, 노출 등	
		애자 연결부위 등 각종 자재의 상태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의 경우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자재사용 여부,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규격의 표시인증을 받은 제품사용 여부, 피뢰시설의 적정설치 및 유지 등	
통행		교통신호기, 교통안전표지, 도로표지 등의 기능 장애 사항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 장애	
천재지변, 인위적 상황 변동 후의 점검사항		강풍, 폭우·폭설 후, 폭발·충격 후	
기타		그 밖에 안전·미관·생활·환경 저해여부 및 광고물 퇴색(退色) 여부 등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대장

[illegible]

364mm×257mm[일반용지(1종) 70g/m²]

공공게시시설 관리 위탁지정 신청서				처리기간 30일
신 청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업 소 명 (단체명)		전 화 번 호	
	영업장소재지			
종업원 수			사무실 면적	
「인천광역시연수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1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신청인(법인·단체)의 자기소개서 1부. 2. 단체 또는 법인 : 관련 증빙서류 1부. 3. 인력 및 보유시설·장비 등에 관한 증빙서류 각 1부.				수 수 료
				인천광역시연수구 수수료 징수 조례 참조

제 호				
공공계시시설 관리 위탁지정서				
수 탁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업 소 명 (단체명)			
	영업장소제지			
위 탁 기 간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위 탁 내 용				
「인천광역시연수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18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위탁자로 지정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제거 옥외광고물 등 관리대장

[illegible]

364mm×257mm[복사·용지(1종) 70g/m²]

옥외광고물 등 청구서

청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광고물 등 종류	수량
----------	----

광고내용

위 광고물 등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귀하

옥외광고물 등 인수증

인수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광고물 등 종류	수량
----------	----

광고내용

위 광고물 등을 인수합니다.

년 월 일

인수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귀하

옥외광고물 등 관리대장

[illegible]

364mm×257mm[일반용지 70g/m²(재활용품)]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 교육 수료필증

제 호

교육 과정명	
교육 수료일자	
수 강 자	성명
	소속 업무명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49조 및 인천광역시연수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22조제5항에 따라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위와 같이 수료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이수대장

[illegible]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m²]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불참신고서

제 호		
신고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업소명	영업장소제지
	주소	
교육계획	일시	
	장소	
불참사유		

「인천광역시연수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22조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종사자 교육에 참석 할 수 없으므로 불참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불참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관계서류 사본
------	------------------------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 교육위탁지정신청서

제 호		처리기간 30일	
신청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업소명(단체명)		
	주소		
영업장소재지		전화번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50조 및 「인천광역시연수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23조제1항에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강의실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2. 강사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3. 교육 실시에 필요한 기자재·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수수료
		인천광역시연수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참조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위탁지정서

제 호		
수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업소명(단체명)	
	주소	
영업장 소재지		
위탁기간	20 . . .~20 . . .(년 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50조 및 「인천광역시연수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2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을 위탁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같은 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및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이하 “시 조례”라 한다)에서 -----.
제2조(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시 제출 서류 등) ① 영 제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 등”이라 한다)을 표시 또는 설치(이하 “표시”라 한다)하고자 허가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 등은 원색사진과 설계 도서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영 제31조제3항·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네온류를 사용하거나 전자식 발광 또는 화면변환의 특성을 이용하는 전광류 광고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조(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의 제출 서류 등) ① ----- 단서에 따라 ----- 하기 위하여 ----- 경우에는 영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원색 사진, 설명서 또는 설계도서를 제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다만, 영 제1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은 제외한다.
1. 옥상간판 중 옥상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불링핀 모형의 간판과 게시시설 없이 옥상구조물에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간판	1. 영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 모양 ----- 경우
2. 영 제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 미만인 광고물로서 1면의 면적이 1제곱미터미만인 돌출간판	2. -----제4호에 따른 돌출간판 중 광고물의 ----- 경우
3. 영 제5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미터미만인 지주이용간판	3. -----제5호에 따른 -----
4.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과 지면에 표시하는 높이 4미터미만인 애드벌룬	4. 영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거나 -----여 ----- 경우

현 행	개 정 안
5. 선전탑 6. 영 제4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교통수단이용 광고물 7. 그 밖에 <u>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u> 광고물 등 ②영 제7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위원회의 심의대상 광고물 등의 사전심의에 필요하여 구청장이 지정하는 서류 2. 「건축법시행령」 제118조제1항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광고물 등을 설치 또는 부착하여 표시하는 경우의 옥상간판의 경우에는 구조계산서에 의한 구조기술사 또는 건축사의 구조안전 확인 서류 ③영 제7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거 광고물 등 중 현수막·벽보·전단의 경우에는 검인 또는 압인, 천공을 함으로써 신고필증 교부를 갈음할 수 있으며, 그 규격은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제3조(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 ①구청장은 영 제7조 및 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의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	5. 영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교통수단이용 광고물 6. -----제10호에 따른 선전탑 7. ----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영제32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연수구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 ②영 제7조제1항제4호에서 “심의관련서류”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대상 광고물 등의 사전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말한다. ③-----제5호에 따른 구조안전확인서류 제출대상 광고물 등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건물의 옥상에 별도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하는 광고물 등 중 그 상단의 높이가 4미터 이상인 옥상간판 및 애드벌룬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 등 제3조(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 ①-----부터 제10조까지의 -----따라 -----의 -----

현행	개정안
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그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영 제7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광고물 등의 표시기간 종료일 30일전까지 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에게 표시기간 종료를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표시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허가 및 신고사항의 변경과 기간연장 등) ①영 제9조제4항·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대상 광고물 등 중 구청장에게 신고함으로써 표시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광고물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영 제31조제3항·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네온류를 사용하거나 전자식 발광 또는 화면변환의 특성을 이용하는 전광류 광고물과 당해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와 관련이 없는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물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영 제15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가로형 간판 2. 영 제4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돌출간판 3. 영 제19조제2항 제1호·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옥상간판 또는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옥상간판	-- 별지 제1호서식의 허가 및 신고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 . 다만, 허가 또는 신고 사항에 대한 내용이 전산화된 경우에는 그 전산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영 제7조제3항 단서에 따라 현수막·벽보·전단의 신고를 수리하는 때에는 광고물의 우측 하단의 여백에 별지 제2호서식의 검인, 압인 또는 천공을 함으로써 신고필증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 ③----- 및 제10조에 따라 ----- ----- ----- ----- ----- 제외한다. 제5조(연장신고 대상 광고물 등) ①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 ----- 신고하고 그 ----- 하는 ----- - 와 같다. 다만,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과 타사광고를 표시하는 광고물 등은 제외한다. 1. 시 조례 제5조제4호 따른 ----- - 2. 영 제4조의제1항제2호에 따른 ----- --- 3. 영 제15조제4호 나목에 따른----- -----과 ----- -----

현 행	개 정 안
4. 영 제4조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주이용간판 5.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설치하는 애드벌룬 6.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 ②영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대상 광고물 등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을 제외한 광고물은 구청장에게 신고함으로써 광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당해 건물명이나 당해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주소·상호·상품·영업내용 또는 이를 상징하는 도형과 관련이 없는 내용을 표시한 광고물 2.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 등 중 네온류를 사용하거나 전자식발광 또는 화면변환의 특성을 이용하는 전광류 광고물	4. -----제5호에 따른 ----- 5. 영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설치하는 경우 6. ----- 심의위원회의 ----- 광고물 등 제4조(변경신고 대상 광고물 등) 영 제9조제1항 단서 전단에 따라 ----- ----- 광고물 등을 제외하고는 ----- 신고하고 ----- 1. 타사광고(건물 등의 벽면을 이용하는 광고물 등과 옥상간판을 말한다)를 표시하는 광고물 등 2. 네온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 3.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 중 광고물 등의 규격, 사용자재, 표시 위치 또는 장소를 변경하는 경우
제5조(광고물 등의 표시금지 물건) 영 제11조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로 광고물 등의 표시를 금지하는 물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횡단보도 안전표시등 2. 지상 변압기함 3. 가로등 자동점멸기함 4. 지하철·지하도·지하상가 등의 공기조절장치 5. 교통안전시설물·낙석방지시설물 6. 전주·가로등·가림막(상업용 광고물로서 전단, 현수막, 벽보 등에 한한다)	(삭제) → 시 조례 제20조로

현 행	개 정 안
7. 교각·방음벽·석축·옹벽 및 계단 8. 도로(인도를 포함한다)의 노면 9. 그밖에 도로교통 안전 및 주거 또는 생활환경을 위하여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물건	
제6조(광고물 등의 표시제한등) ①구청장은 영 제12조에 따라 광고물 등의 표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기 위한 특정구역을 지정하려는 때에는 인천광역시장과 사전협의를 거친 후 구보·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구 게시판 등의 방법으로 14일 이상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구역 및 표시금지 또는 표시방법의 제한 내용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제시된 주민의 의견은 최대한 반영해야 한다. ② 법 제5조의2제3항 및 영 제12조제4항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이 그 주관으로 시 단위의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경우에 그 지원계획 지역 내에 설치하는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에 대한 의견제시와 특정구역을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때에는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전문개정 2009. 4. 20]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특정 구역 안에서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을 제한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0.7.12> 1. 건물에 표시할 수 있는 광고물 등의 총수량 및 업소별로 표시 할 수 있는 광고물 등의 총수량 2. 광고물 등의 표시내용·종류·색	(삭제) → 시 조례 제21조로

현 행	개 정 안
깔 · 규격 및 모양 3. 표시위치 또는 표시장소 4.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의 표시방법 5. 그 밖에 인천광역시연수구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제7조(광고물 등의 추가적인 표시방법) 영 제13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 등의 추가적인 표시 방법은 다음과 같으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표시방법을 완화할 수 있다. 1. 연막이나 연기 등 기체를 사용하여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2. 빛이나 광선 등을 지면 · 벽면 · 공중 또는 물건 등에 투사하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낙뢰의 우려가 있는 광고물 등에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뢰설비를 설치 · 관리하여야 한다. 4. 광고물 등의 바탕색은 적색류 또는 흑색류의 색깔 사용은 2분의 1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광고물등 중 1면의 면적이 3제곱미터 이하인 광고물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0.7.12>	(삭제) → 시 조례 제3조로
제8조(옥상간판의 표시방법) ①영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옥상간판을 표시할 수 있는 건물은 5층 이상의 건물이어야 한다. ②영 제19조제5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옥상간판간의 수평거리는 50미터 이상의	(삭제) → 시 조례 제9조로

현 행	개 정 안
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구청장은 관할 행정구역의 경계로부터 50미터이내 지역 안에 옥상간판을 허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접한 구의 구청장 또는 경제자유구역청장과 미리 협의하여 옥상간판간의 수평거리 50미터 이상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옥상간판의 상단 높이가 지표면(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 부분으로 한다)으로부터 60미터 이상에 별도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항공법」 제83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장애등을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지주이용간판의 표시방법) ①영 제2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 외의 지역의 당해 건물부지 안에서는 지주이용간판을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1. 지주이용 간판의 상단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5미터(당해 건물의 높이가 5미터미만인 경우에는 건물높이이내)를, 1면의 면적(간판이 입체형인 경우에는 가장 넓은 면의 단면적을 말한다)은 5제곱미터를, 간판면적의 합계면적은 20제곱미터를 각각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주유소 또는 가스충전소의 표시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동일한 장소 또는 건물부지에 2개 이상의 지주이용간판을 표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지주이용간판에 통합하여 연립 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3.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100센티미터 이상(보도가 없는 지역 또는 장소에는 차	(삭제) → 시 조례 제10조로

현 행	개 정 안
도의 경계선으로부터 15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4. 당해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주소·상호·전화번호 또는 이를 상징하는 도형(주유소 또는 가스충전소의 표시등을 포함한다)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다. 5. 조명을 함에 있어서는 네온·전광 또는 점멸등의 방법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단지 및 관광지에서는 네온 또는 점멸등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②영 제2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지역외의 지역에는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지역 또는 장소에 위치한 당해 건물부지 안에는 지주이용간판을 표시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건물·시설물 등의 건물부지 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유소 또는 가스충전소 2. 10대 이상의 대형승합차가 동시에 주차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휴게소 3. 여건상 지주이용간판 외에 다른 광고물 등의 표시가 곤란한 건물 또는 시설물 등 제10조(애드벌룬의 표시방법) ①영 제23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간의 수평거리는 1킬로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도시미관과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 및 생활환경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경우에는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간의 수평거리를 따로 제한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관할 행정구역의 경계로부	(삭제) → 시 조례 제13조로

현 행	개 정 안
터 1킬로미터 이내 지역 안에 영 제23조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을 허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접한 구의 구청장 또는 경제자유구역청장과 미리 협의하여 애드벌룬간의 수평거리를 1킬로미터 이상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영 제23조제2항제5호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애드벌룬에 대하여는 제8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야 한다.	
제11조(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①영 제2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편익시설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휴지통·벤치, 지하철역명탑, 지하철출입구 캐노피, 공중전화부스 <개정 2008. 2.14> 2. 그 밖의 공공시설물로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편익 시설물 ② 삭제 <2009. 4. 20> ③ 삭제 <2009. 4. 20>	(삭제) → 시 조례 제11조로
제12조(창문이용 광고물의 표시 방법) ①영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창문이용 광고물의 표시면적은 창문 또는 출입문 면적의 2분의 1이내로 광고내용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영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표시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창문이용 광고물중 천·종이·비닐 등에 문자·도형등을 표시하여 출입문 또	(삭제) → 시 조례 제17조로

현 행	개 정 안
는 창문에 직접 부착하는 광고물 등은 건물의 1층 이하에 표시할 수 있다. 2.영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1층 이하에 표시하되, 점멸동화상 방식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3.영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당해 업소의 출입문 또는 창문에 추가하여 창문이용 광고물을 표시 또는 부착할 수 없다. 4. 당해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주소·상호·상표·전화번호·영업내용 또는 상징형 도안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다. 5. 사용하는 색채는 건물과 조화되어야 한다. 6. 전광류의 경우 가로 200센티미터이내, 세로 30센티미터이내, 총 표시면적 0.4제곱미터이내로 표시하여야 한다.	
제13조(세로형간판의 표시방법) 영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세로형간판은 다음 각호와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1. 건물의 1층 출입구 양측에 각각 하나의 간판만을 표시하여야 하며, 개별 업소의 출입구에는 표시할 수 없다. 다만, 당해 건물명이나 당해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상호 또는 이를 상징하는 도형에 한하여 영 제15조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간판이 표시되지 않은 당해 건물의 벽면에 입체형으로 된 하나의 간판을 표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간판의 크기는 가로 3미터 이내, 세로는 건물 높이의 2분의 1이내이어야 한다. 2. 제1호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간판	(삭제) → 시 조례 제6조로

현 행	개 정 안
의 크기는 가로 60센티미터 이내, 세로 200센티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이 경우 2개 이상의 간판을 연립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도 각각의 간판을 합한 전체의 크기는 또한 같다. 3. 벽면과 밀착시켜야 하며, 벽면으로부터의 돌출 폭은 30센티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제14조(공연간판의 표시방법) ①영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공연간판은 벽면·이용·지주이용으로 구분하며, 간판에는 공연 중 또는 다음 공연의 내용에 관하여 각각 하나의 간판만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벽면을 이용하는 공연간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1. 간판의 가로크기는 건물 전면 폭의 3분의1 이내이어야 하고, 세로크기는 건물높이의 4분의1이내이어야 한다. 2. 벽면과 간판과의 간격은 40센티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3. 간판의 하단과 지면과의 간격은 3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지주를 이용하는 공연간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1. 당해 건물의 부지 내에 표시하여야 하며, 영 제20조제1항제4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상단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5미터를, 1면의 면적(간판이 입체형인 경우에는 가장 넓은 면의 면적을 말한다)은 10제곱미터를, 간판면적의 합계면적은 20제곱미터를 각각 초과할 수 없다. 3. 2개 이상의 공연업소가 입주한 건	(삭제) → 시 조례 제8조로

현행	개정안
물의 부지 내에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간판을 추가하여 연립으로 표시할 수 있다. 4. 조명을 함에 있어서는 네온·전광 또는 점멸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5조(현수막의 표시방법) ①영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현수막은 벽면이용, 지정게시대이용, 지주이용으로 구분하며, 그 일반적인 표시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표시내용은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주소·상호·상표·영업내용·행사내용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게시대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주변 또는 건물과 조화되게 표시하여야 하고 창문을 막아서는 아니된다. 3. 현수막의 규격은 게시시설 또는 지주의 규격을 따른다. 다만, 제4항 제3호에 의한 단일형 지주를 이용하는 현수막의 경우에는 그 하단과 지면과의 간격을 2미터이상 유지하여야 하고, 가로와 세로크기의 2분의1이내(좌우대칭형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도 지주부분을 제외한 각각의 현수막을 합한 전체의 가로길이는 또한 같다)이어야 한다. 4. 현수막은 떨어지거나 바람에 날리고, 일정기간이 경과하여 도시경관을 해치거나 안전을 저해하지 아니하도록 견고하게 고정하고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5. 현수막(지정게시대 포함)을 표시하기 위하여 전기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삭제) → 시 조례 제12조로

현 행	개 정 안
다. ②벽면을 이용하는 현수막 등은 다음 각호와 같이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야 한다. 1.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하여 대규모 점포의 등록을 한 건물 또는 영 제19조제1항제1호의 본문 규정에 의한 상업지역과 공업지역내의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의 건물 벽면에 영 제5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설치한 게시시설에만 표시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의한 게시시설의 길이는 당해 건물 폭(창문부분의 면적을 제외한다)의 5분의1 이내, 세로의 길이는 건물의 높이이내로 표시하되, 게시시설의 상단은 건물의 상단을 초과할 수 없으며 게시시설의 하단과 지면과의 간격은 4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3. 게시시설은 당해 건물전체에 4개 이내로 설치하여야 하며, 하나의 게시시설에는 하나의 현수막만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지정게시대를 이용하는 현수막 등은 다음 각호와 같이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야 한다. 1. 지정게시대는 구청장이 설치하여야 하며, 가로는 10미터이내,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8미터 이내로 표시하여야 하고 재질은 스테인레스·알루미늄 등 우수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지정게시대는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주변경관과 조화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3. 하나의 지정게시대에는 동일한 내용의 현수막은 하나만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수막의 게시신청이 없는 경우와 구	

현 행	개 정 안
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 현수막의 게시기간이 만료되거나 신고가 취소된 현수막은 즉시 제거하여야 한다. 5. 현수막의 검인은 3회 이내로 한다. ④지주를 이용하는 현수막 등은 다음과 같이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야 한다. 1. 현수막을 표시할 수 있는 지주는 단일형과 연립형으로 구분하며, 단일형은 하나의 지주에 하나의 현수막을 표시하거나 2개의 현수막을 좌우 대칭형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말하고, 연립형은 2이상의 지주를 사용하여 여러 개의 현수막을 연립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써 제3항에 의한 지정게시대와 유사한 형태의 것을 말한다. 2. 지주의 재질은 스테인레스·알루미늄 등 우수한 자재를 사용하여 하고, 주변경관 또는 건물과 조화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 단일형 지주는 당해 건물의 대지안의 공지에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미터이내이어야 하고 하나의 건물에 하나만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건물에 입주한 업소수등 여건상 하나의 지주에만 표시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물의 연면적 500제곱미터 초과 시마다 1개씩(최대 4개 이내)추가하여 설치할 수 있다. 4. 연립형 지주는 당해 건물의 대지안의 통행할 수 없는 공지에 설치하여야 하며, 가로는 6미터 이내,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5미터이내로 설치하여야 하고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에 한	

현 행	개 정 안
하여 업소당 하나만을 설치할 수 있으며, 표시할 수 있는 현수막의 수량은 3개 이내이어야 한다. 가.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대규모점포 나. 「공중위생법」 및 「관광진흥법」에 의한 호텔, 휴양콘도미니엄 다. 「관광진흥법」에 의한 국제회의장, 종합휴양시설, 전문휴양시설 라. 이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고시한 업소	
제16조(벽보의 표시방법) 영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벽보는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1. 지정게시판 및 지정벽보판은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고, 주변 경관과 조화될 수 있는 장소를 선정하여 구청장이 설치·관리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지정게시판 및 지정벽보판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옥외광고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관리 할 수 있다. 2. 벽보는 지정게시판 또는 지정벽보판에 부착하여야 하며, 하나의 지정게시판 및 지정벽보판에는 동일한 내용은 하나만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벽보의 부착신청이 없는 경우와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지정게시판 또는 지정벽보판의 규격은 가로 255센티미터 이내,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230센티미터 이내이어야 하며, 우수한 재질을 사용하고, 벽보 1매의 크	(삭제) → 시 조례 제14조로

현 행	개 정 안
기는 가로 40센티미터 이내, 세로 55센티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제17조(전단의 배부방법) 영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전단은 다음과 같이 배부하여야 한다. 1. 전단은 직접 나누어주거나 건물출입구 등에 설치한 배부함을 통해 배부하여야 하며, 살포하거나 차량 등에 투입 또는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2. 전단의 크기는 가로 30센티미터 이내, 세로 40센티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삭제) → 시 조례 제15조로
제18조(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의 표시방법) ①영 제31조제3항제2호의2 및 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네온류 또는 전광류 광고물 등의 표시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주거환경의 침해로 인하여 민원발생이 예상되는 지역 2. 축사나 농작물 등을 재배하는 장소와 인접되어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 3. 그밖에 구청장이 주거환경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지역 ②영 제31조제3항제6호 및 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네온류 및 전광류를 이용하는 광고물의 빛의 밝기 및 색깔은 각호와 같아야 한다. 1. 운전자 또는 보행자 등에게 장애를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 2. 주민의 주거 생활환경을 침해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구청장은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이용하는 광고물의 빛의 밝기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될 때에	(삭제) → 시 조례 제4조로

현 행	개 정 안
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이 경우 2인 이상의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영 제31조제4항제3호에 따른 전광류 광고물에 있어 공공목적을 위한 광고내용은 시간당 표출 비율의 20퍼센트를 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의뢰하는 표출비율은 같아야 한다. <개정 2009. 4. 20>	
제19조(표시방법의 완화) 영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특정구역 안에서 광고물 등의 표시 방법을 완화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광고물의 표시위치 또는 장소 2. 광고물 등의 종류·색깔·규격·표시내용 및 모양 3.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의 표시방법	<삭제> → 시 조례 제18조로
제20조(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영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천광역시연수구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1호 규정에 의한 공무원인 위원은 업무비중을 감안하여 당연직으로 정할 수 있다. 1. 옥외광고·교통·환경·도시계획·건축 등 광고물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국어·옥외광고·교통·환경·도시계획·건축·디자인 등 광고물 관련 분야 전문가	제12조(광고물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영 제32조제2항에 따른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 ----- ----- ----- -----. 1. 옥외광고·교통·환경·도시계획·건축·디자인·청소년 등 광고물 등 ----- 2. 국어·옥외광고·교통·환경·도시계획·건축·디자인·청소년 등 -----

현 행	개 정 안
3. 그밖에 광고물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신설> 위원장 담당국장 <신설> 간사 옥외광고담당 ②영 제33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인천광역시연수구광고물관리심의소 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소위원회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된다. 2. 소위원회는 소위원회위원장을 포함한 3인 내지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관계 공무원 위원 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수의 2분의 1미만이어야 한다. 3. 소위원회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4. 소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에 서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5. 소위원회의 개의 및 의결에 관하여는 영 제33조제8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9. 4. 20> <신설> 제척	3. ----- ----- ②위원회는 위원장 옥외광고업무 담당 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 사람이 된다. ③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옥외광고담당으로 한다 ④영 제32조제5항 및 제10항에 따른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 ---. 1.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 2. ----- --- 3명 이상 5명 이내의 -----. -----. 3. ----- 심의위원회의 ----- ---심의위원회 -----. 4. ----- 심의위원회에서 -----. <삭제>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해당 단체의 임원이거나 임원이었던 경우 2. 위원이 해당 당사자와 친족 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가

현 행	개 정 안
<신설> 기피 <신설> 회피	대리인에 관여하거나 관여했던 경우 4. 위원이 해당사항에 관하여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5. 그 밖에 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⑥ 위원회 심의·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⑦ 위원 본인이 제5항 또는 제6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21조(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①영 제34조제1항제2호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과 영에서 규정한 사항과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2. 높이 4미터 이상인 옥상간판(옥상에 고정하는 애드벌룬을 포함한다)의 표시허가·신고에 관한 사항 3. 표시면적 20제곱미터이상의 지주이용 간판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4. 1면의 표시면적이 10평방미터이상으로써 네온류를 사용하거나 전자식 발광 또는 화면변환의 특성을 이용하는 전광류 광고물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5. 인천광역시연수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 각 호에서 정한 사항 <개정 2010.7.12> 6. 그 밖에 구청장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①영 제33조제2호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하거나 심의를 부칠 수 있도록 한 사항은 -----. 1. ----- 시 조례 및 이 조례에서 심의위원회의 ----- 2. ----- 3. ----- 4. ----- 10제곱미터 이상의 네온류 및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의 ----- <삭제> 5. ----- 광고물 -----하여 심의에 부치도록 한 사항

현 행	개 정 안
②소위원회에서 <u>심의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u> 1. <u>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한 사항</u> 2. 그 밖에 구청장이 <u>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옥외광고 관리업무 추진상 효율적이라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u> <신설> 심의방법의 다양화 ③<u>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전문가·이해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u> ④<u>심의안건 제출방법, 심의 기준 등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u> 제22조(안전도검사) ①구청장은 <u>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도검사를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한다.</u> ②<u>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도검사를 실시할 검사공무원을 그 소속하의 건축직·전기직·토목직 그밖에 관계 공무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u> 제27조(안전도검사를 위탁받은 자의 검사절차 등) ①<u>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영 제39조제1항에 의한 안전도검사기준에 따라 안전도검사를 실시하고 "별</u>	②----- 심의를 거치게 하거나 심의를 부칠 수 있도록 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심의위원회 ----- 2. ----- <삭제> ----- ----- <삭제> ----- 심의에 부치도록 하는 사항 ③위원장은 심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의 등을 위하여 이메일, 서면, 화상회의 등의 방법으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④<u>심의위원회 ----- 제1항의 사항을 -----</u> ----- ⑤----- 심의위원회의 ----- ----- 심의위원회의 ----- ----- 제17조(안전점검의 절차 및 검사요령 등) ①----- 안전점검을 별지 제6호서식의 안전점검검사서에 따라 점검하여야 하며, ----- 별지 제7호서식의 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안전점검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갖춘 공무원을 검사공무원으로 지정하여 직접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안전점검 ----- 영 제37조제1항에 규정한 안전점검의 ----- ----- 안전점검을 ----- 별지 제6호

현 행	개 정 안
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검사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12> ②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안전도검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허가된 사항에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구청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시정조치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결과를 접수하여 광고물 등이 안전도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지체없이 안전도검사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서식에 따라 ----- -----. ④안전점검 ----- 안전점검 -----하면서 관계 법령 및 이 조례를 ----- 이를 즉시 구청장에게 -----. ⑤ -----에 따라 안전점검 ----- 안전점검----- 영 제37조제4항의 안전점검증명서를 발급-----.
제23조(안전도검사 대상광고물 등) 영 제38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안전도검사 대상광고물은 다음과 같다. 1. 현수막을 표시할 수 있는 게시시설의 연면적이 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현수막게시시설 2.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4미터이상인 지주이용 공연간판 3. 영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표시하는 지주이용간판 4. 그밖에 구청장이 광고물 등 중 표시방법 및 표시위치·장소 등과 관련하여 붕괴·추락 및 파손 등의 우려로 공중에 대한 위해발생의 소지가 있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광고물	<삭제> → 시 조례 제25조로
제24조(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영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제14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영 제38조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

현 행	개 정 안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건축사법」에 <u>의하여</u> 건축사 사무소의 등록을 한 <u>자</u> 2. 「건축사법」에 <u>의한</u> 건축사 관련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3. 「국가기술자격법」(「자격기본법」 제17조의 <u>규정에 의하여</u> 국가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u>의한</u> 옥외광고·건축·전기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4. 그 밖에 <u>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자와 동등한 안전도검사</u> 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u>자</u>	----- 1. ----- 따라 ----- ----- 사람 2. ----- 따른 ----- ----- 3. ----- ----- 따라 ----- ----- 따 른 ----- ----- 4. -----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규정된 사항과 ---- 안전점검 ----- ----- 사람이나 단체
제25조(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시설기준 등) 영 제40조제2항의 <u>규정에 의하여</u> 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와 같이 <u>검사인력·시설·장비를 갖추어야 하며, 구청장은 그 인원 및 시설의 규모, 장비의 종류 및 수량을 별도로 정하여</u> 공고하여야 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u>의한</u> 옥외광고·건축·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분야별로 검사원이 1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2. 사무실 3. <u>작업차량, 사다리, 절연저항계, 카메라, 망원경과 그밖에</u> 구청장이 안전도검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u>시설·장비</u>	제15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기준 등) 영 제38조 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 ----- - 받을 수 있는 자는 ----- 검사 시설 및 장비, 검사원의 자격 및 인원을 -----, ----- 구체적인 기준을 ----- -----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옥외광고·건축·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분야별 1인 이상을 포함되어야 한다) 1. 사무실 2. 작업 차량, 사다리, 절연저항계, 카메라, 망원경 4.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점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시설 또는 장비
제26조(안전도검사업무의 위탁절차 등) ①구청장은 제24조의 <u>규정에 의하여</u> 안전	제16조(안전점검의 위탁절차 등) ① ----- ----- 제15조에 따라 안전점검 ---

현 행	개 정 안
도검사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중에서 1인 이상을 지정하여 <u>안전도검사업무</u>를 위탁할 수 있다. ②<u>안전도검사업무</u>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위탁기간, 위탁받을 자의 임무, 관계 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u>안전도검사업무</u>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u>별지 제5호 서식</u>"의 옥외광고물 등 <u>안전도검사업무</u>위탁지정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u>안전도검사업무</u>를 위탁할 자를 지정할 때에는 "<u>별지 제6호서식</u>"에 의하여 <u>옥외광고물 등 안전도검사업무</u> 위탁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⑥구청장은 <u>안전도검사업무</u>를 위탁할 때에는 위탁받은 자의 명칭 및 위탁기간 등을 고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u>안전도검사업무</u>를 수행하는 자에게 "<u>별지 제7호 서식</u>"에 의한 검사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	----- 하나 ----- 안전점검 ----- -----. ②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 ----- -----. ③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 ----- 별지 제3호서식의 ----- -----. ④-----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 -----받을 ----- - 별지 제4호서식의 ----- -----. ⑤제1항에 따른 ----- -----. ⑥-----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 한 ----- ----- 안전점검 ----- ----- 별지 제5호서식의 ----- -----.
<u>제28조(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 등)</u> ① 구청장은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u>현수막 지정게시대</u>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u>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단체</u> 등으로 하여금 <u>지정게시대</u>를 위탁관리하게 할 수 있다.	<u>제18조(공공게시시설 관리의 위탁 등)</u> ① ----- 시 조례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에 따라 설치된 <u>현수막 지정게시대</u> 및 <u>지정벽보판</u>(이하 “<u>공공게시시설</u>”이라 한다)의 ----- <u>공공게시시설</u>의 관리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을 공개경쟁에 의해 심의위원

현 행	개 정 안
<신설> 위탁계획의 공고 <신설> 위탁지정신청서의 제출 ②지정게시대의 관리를 위탁할 때에는 위탁받은 자의 성명·명칭·주소·위탁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게시시설을 위탁 관리한 경우에는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게시시설을 위탁받은 자가 게시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게시 의뢰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으며, 영 제26조제1항제4호에 의하여 고정광고를 할 수 있다.	회의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의 항목에 의한 평가를 거쳐 선정하여 공공게시시설을 위탁하여 관리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공공게시시설의 관리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요건·시설기준·선정방법, 공공게시시설의 명칭, 수량, 위탁기간 및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 라 한다)의 임무 등 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공공게시시설의 관리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8호 서식의 위탁지정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구청장이 공공게시시설 관리 수탁자를 선정하였을 때에는 수탁자의 명칭, 대표자 성명, 영업장 주소, 위탁한 내용, 위탁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하며, 수탁자에게 별지 9호 서식의 위탁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⑤ 공공게시시설 관리 수탁자는 공공게시시설에 게시할 광고물의 신고 대행 및 신고된 광고물의 게시와 제거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공공게시시설이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공공게시시설의 위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현 행	개 정 안
제29조(제거된 광고물 등의 관리 등) ① 구청장은 영 제4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 등을 제거한 경우에는 그 광고물 등이 있던 곳에 제거한 취지와 그 광고물 등의 보관 장소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표시하기가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구청장은 영 제4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거한 광고물 등을 보관한 경우에는 구의 게시판 또는 구의 공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15일 이상 게시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1. 광고물 등의 종류·수량 2. 광고물 등에 표시된 내용 3. 위반 장소·위치 4. 보관장소·일시 및 담당자 등 ③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 등을 보관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하여 작성 비치하여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구청장은 영 제4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 등을 반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다.	제19조(제거된 광고물 등의 관리 등) ① ----- 영 제40조에 따라 ----- ----- ----- ----- --. 다만, 표시하기 곤란한 광고물 등에 해당하는 -----. ② 영 제40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영 제40조제2항에 공고 의무 규정> 1. ----- 종류 및 수량 2. ----- 표시 내용 3. ----- 장소 및 위치 4. 제거한 시간, 보관 장소 및 담당자 등 ③----- 제2항에 따라 ----- ----- 별지 제10호 서식의 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 -----. ④----- 영 제41조에 따라 ----- ----- ----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제30조(위반에 대한 조치 및 비용징수) 법 제10조제6항에 따라 구청장은 미풍양속의 유지 또는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와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광고물 등에 대하여 제거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에 따른 실제 소요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09. 4. 20>	<삭제>

현 행	개 정 안
<u>제31조(옥외광고업의 등록기준 등) ① 법 제11조제1항 전단 및 영 제41조제1항에 의하여 옥외광고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1의 2에 의한 시설기준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u> <u>[전문개정 2008. 2. 14]</u> <u>② 구청장은 영 제41조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수리한 때에는 영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업자 관리대장에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u> <u>[전문개정 2008. 2. 14]</u> <u>③ 옥외광고업자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폐업일로부터 7일 이내에 등록증을 반납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 사실을 안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폐업한 사실을 현지 확인하고 즉시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한다. <신설 2009. 4. 20></u> <u>④ 옥외광고업자는 법 제11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영업소안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또는 장부 등을 비치해야 한다.</u> <u>1. 영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옥외광고업등록증(잘 보이는 곳에 게시)</u> <u>2.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수료필증</u> <u>3. 옥외광고물 등 관리대장(별지 제16호서식) <신설 2009. 4. 20></u>	<u>제21조(옥외광고업의 등록 관리 등)</u> <u><삭제> 영 제44조, 시행령 별표 6에 따른 시설기준</u> <u><삭제></u> ① 구청장은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옥외광고업자가 옥외광고업을 폐업한 날부터 ----- 아니하는 ----- ----- 등록사항을 ----- -----. ② ----- ----- 옥외광고업자가 영업소 안에 비치 또는 표시하여야 하는 장부 및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별지 제12호서식의 옥외광고물 등 관리대장 - 별지 제13호 서식의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 교육수료필증 - 영 제44조제5항의 옥외광고업 등록증(영업소를 방문하는 자가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u>제32조(옥외광고업종사자에 대한 교육)</u> ①구청장은 영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업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별표 1"과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매년 3월말까지 다음 사항	<u>제22조(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u> ①----- 영 제49조제2항에 따른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별표 2와 같이 -----. ②----- 10월 말까지 다음 각 호

현 행	개 정 안
을 포함한 당해연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1. 교육의 종류별 실시시기·내용·시간 및 장소 2. 교육을 받아야할 대상자 3. 교육 실시방법·<u>수강절차</u>·비용 4. 그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 ③구청장은 교육실시 15일전까지 교육대상자를 확정하여 개별통지를 하여야 하며, <u>교육당일 참석 여부를 필히 확인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보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u>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④구청장은 교육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u>별지 제11호서식</u>"의 옥외광고업종사자교육수료필증을 교부하고 "<u>별지 제12호서식</u>"의 옥외광고업종사자교육이수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⑤구청장은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교육을 <u>수강하거나 종업원을 수강하게 하는 옥외광고업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u> ⑥교육대상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u>사전에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고 "별지 제13호서식"의 옥외광고업종사자 교육불참 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u> 1.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교육에 응할 수 없을 때 2. <u>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구속 중일</u>	의 내용을 포함한 다음 연도의 교육계획을 -----. 1. 교육의 종류별 실시시기·내용·시간 및 장소 2. 교육 ----- 3. -----·절차·----- 4. ----- ③----- -----,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 -----. ④영 제4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신규로 옥외광고업에 종사하려는 자는 제3항에 불구하고 구청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교육을 받는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수료필증을 -----별지 제14호서식의 교육이수대장에 ----- ⑥----- -----받은 자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⑦----- ----- 교육을 받을 수 없을 경우에는 사전에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5호 서식의 교육불참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 않을 수 있다. 1. ----- 2.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

현 행	개 정 안
때 3. 「향토예비군법」, 「민방위기본법」에 의한 교육훈련기간과 중복된 때 4. 그밖에 관혼상제, 재해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응할 수 없을 때	- 3. ----- -----따른 ----- 4. ----- -----
제33조(교육의 위탁) ①구청장은 영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업종사자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기간, 관계 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임무·자격요건 및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하며,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옥외광고업종사자 교육위탁지정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업종사자에 대한 교육실시자를 위탁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옥외광고업종사자 교육위탁지정서를 교부하고, 위탁받은 자의 명칭·대표자 성명·주소·위탁기간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교육의 위탁기간은 구청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④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32조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한 당해연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2월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교육을 위탁받은 자가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제3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이수 대장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고, 구청장은 교육을 수료한 자에게 옥외광고업종사자 교육수료 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23조(교육의 위탁 등) ①----- 제50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 ----- ----- ----- ----- 별지 제16호서식의 ----- ----- -----. ②----- 따라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자로 ----- 별지 제17호서식의 -----, 위탁자의 -----, ----- ----- ----- ③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교육의 위탁기간을 심의위원회의 ----- -----. ④제2항에 따라 교육을 위탁받은 자가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제22조제2항에 규정한 사항을 포함한 ----- 12월 말까지 -----. ⑤----- ----- 제22조제5항의 ----- ----- ----- ----- 교육수료 필증-----.

현 행	개 정 안
⑥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을 수강하거나 그 종업원을 수강하게 하는 옥외광고업자에게 교육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제32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금액과 산출근거를 사전에 공고하여야 하며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교육을 실시한 후 그 교육실시결과·교육비용의 수납 및 집행내역 등을 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⑦구청장은 영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 등에 관한 교육실시자를 위탁 지정한 경우에는 교육의 실시시기·장소 등을 위탁받은 자가 별도로 지정하여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신설>	⑥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5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 따라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교육을 받는 자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 제22조제2의 제3호에 따라 그 금액과 산출근거를 사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⑦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5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한 후에 교육실시결과, 교육비용의 수납 및 집행내역 등을 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삭제> ⑧----- 제1항부터 제7항에도 불구하고 법제11조의4에 따른 한국 옥외광고센터에서 개설한 사이버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교육을 수료한 것으로 본다.
제33조의2(광고물 실명제) ① 광고물의 설치·표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는 법 제16조에 따라 해당 광고물에 허가 또는 신고번호, 표시기간, 제작자명 등을 표시(이하 이 조에서 "실명제 표시"라 한다)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실명제 표시를 해야 하는 광고물은 영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대상 고정 광고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정 광고물은 그렇지 않다. 1. 영 제27조제1항에 따른 교통시설의 내부광고와 영 제28조제3항에 따른 도시	<삭제> → 시 조례 제27조로

현 행	개 정 안
철도 차량광고 2. 허가·신고기간이 60일 이내인 광고물로서 영 제23조에 따른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 영 제28조제2항에 따른 비행선 및 영 제29조에 따른 선전탑 및 아취광고물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실명제 표시를 해야 하는 광고물 중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광고물은 법 시행일인 2008년 12월 22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실명제 표시를 해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실명제 표시를 권역별·구역별로 일괄적으로 시행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서 구청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광고물은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실명제 표시를 해야 한다. 다만 신규광고물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간판시범사업지역, 특정구역 고시지역, 도심지역 등 2. 그 밖의 전지역 ⑤ 실명제 표시는 별지 제7호의2서식의 스티커형 인식마크로 하고, 표시위치는 해당 광고물의 오른쪽 하단에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입체형 광고물은 게시시설의 오른쪽 하단 또는 바로 옆의 벽면 하단에 부착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스티커형 인식마크는 광고물을 설치·표시한 광고주 또는 제작업자가 부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광고물 등의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 교부시 및 변경 허가 또는 변경 신고필증 교부시 배부해야 한다. ⑦ 그 밖에 광고물 실명제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고시로 정	

현 행	개 정 안
한다. [본조신설 2009. 4. 20]	
제34조(수수료) ① <u>법 제17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 등의 허가 또는 신고수수료는 "별표 2", 동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 등의 안전도검사 수수료는 "별표 3", 동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업 등록수수료는 "별표 4"와 같으며, 수수료금액의 산정에 있어서 면적·길이는 소수점이하 2자리까지 산정하고, 산정금액 중 10원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일부개정 2008.2.14></u> ② <u>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허가 신청 또는 신고시에 납부해야 하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안전도검사를 위탁한 경우에는 안전도검사 수수료를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정한 방법에 따라 납부하게 할 수 있다.</u> <개정 2009. 4. 20> ③ <u>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 등에 대하여는 허가·신고 수수료를 면제 할 수 있다.</u> 1. <u>공공의 목적을 위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물 등으로서 구청장이 인정하는 광고물 등</u> 2. <u>허가 또는 신고의 처리 전에 신청인이 취하원을 제출하여 취하 처리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동일한 사항을 다시 신청·신고하는 광고물 등(이미 납부한 수수료 금액에 한한다)</u> 3. <u>영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특정구역 내의 새로 표시하는 광고물중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광고물 등</u>	제24조(수수료) ① 법 제17조에 따른 --- --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 등의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 2.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수수료는 별표 4와 같다. 3.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옥외광고업 등록 수수료는 별표 5와 같다. ② 수수료는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하며, -----<단서삭제>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광고물 등의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구제절차를 시행하는 경우 2. 법령의 개정으로 이미 표시된 광고물 등이 새로이 허가 또는 신고대상으로 분류된 경우(구청장이 일제 조사하여 허가 또는 신고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삭제>

현 행	개 정 안
④영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특정구역내의 새로 표시하는 광고물 등에 대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도검사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35조(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 ①영 제4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세부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과태료의 징수절차·방법 등에 관하여는 영 제46조 및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징수의 예” 또는 “인천광역시연수구세부과징수규칙의 예”에 의한다.	<삭제> 제2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영 제55조에 따라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삭제> → 2008.06.22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에 따라 징수절차 삭제
제36조(이행강제금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 ①영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의 세부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②이행강제금의 징수절차·방법 등에 대하여는 제35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20조(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영 제43조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삭제> → 2014.08.07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0조의 3에 법률적 근거 마련
제37조(광고물 등의 정비 및 행정적·재정지원) ①구청장은 쾌적하고 특색있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광고물 등을 정비할 수 있으며, 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법 제5조의2에	제10조(광고물 등의 정비 등 지원) <법 제4조의3에 규정>

현 행	개 정 안
의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광고물 등을 정비하는 건물주, 광고주, 옥외광고업자 또는 광고물 등을 설치하거나 표시하고자 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정비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한 업소당 최고 1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③구청장은 광고물 등의 설치·표시방법을 준수하고 광고산업 발전에 기여한 광고업자에 대해서는 우수광고업자로 지정하는 등 인센티브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④구청장은 광고물 등의 질적 향상과 광고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5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공동 제작을 위한 작업장 등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4. 20]	①구청장은 제9조에 따른 정비시범구역에서 광고물 등을 정비하는 자에게 정비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단서 삭제> ②구청장은 법 제5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을 준수하고 광고산업 발전에 기여한 광고업자에 대해서는 우수 광고업자로 지정하는 등 인센티브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③구청장은 법 제5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질적 향상과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광고물 등의 공동 제작 및 디자인 향상을 위한 작업장 등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수 있다.
<신설> 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 지정·운영	제9조(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 구청장은 영제2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 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이하 “정비시범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운영한다. 1. 구청장은 수요조사를 거쳐 정비시범구역의 지정목적, 명칭·위치 및 규모, 사업기간, 사업비 및 예산지원, 광고물 등의 디자인등이 포함된 사업(이하 “정비시범사업”이라 한다) 계획을 수립한다. 2. 구청장은 제1호에 따른 정비시범사업 계획을 정비시범구역 안의 주민을 대상으로 15일 이상 공람을 하여 의견을 청

현 행	개 정 안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3. 구청장은 제2호에 따른 의견수렴 절차가 끝나면 인천광역시장과 사전협의를 거친 후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정비시범사업 계획을 고시하여야 한다. 4. 구청장은 정비시범사업이 종료한 후에 광고물 등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민협의회를 구성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민협회의 구성과 운영은 제8조의 규정에 준용한다. 5. 그 밖에 정비시범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할 수 있다.
제38조(정비·수거된 현수막, 벽보 및 전단에 대한 보상) 구청장은 제15조 내지 제17조에 규정된 현수막, 벽보 및 전단 이외의 현수막, 벽보 및 전단을 정비·수거한 주민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삭 제>
제39조(우수광고상) ①구청장은 건전한 옥외광고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우수한 옥외광고물 또는 옥외광고문화 발전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등을 선정하여 시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시상시기, 선정방법·절차 및 부상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단 필요시에는 시와 협의하여 별도의 기준을 정하여 추진할 수 있다.	<삭 제>

현 행	개 정 안
<신설>	제6조(간판표시계획서의 제출 대상 용도) 영 제23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건축법」 제2조제2항제7호에 따른 판매시설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
<신설>	제7조(자율관리협정) 영 제26조제2항제7호에서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한 사항으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자율관리협정의 승계·결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광고물 등의 위치·모양·크기·색깔을 표시한 디자인 시안(試案) 3. 광고물 등의 유지·관리 및 감시활동 계획 4. 자율관리협정의 이행을 위한 사업 계획서 5. 그 밖에 구청장이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제8조(주민협의회의 운영) ①영 제27조제3항제3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주민협의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율관리협정의 변경 및 폐지의 결정 2. 자율관리구역의 지정 및 운영을 위한 예산의 집행 및 정산 3. 그 밖에 구청장이 주민협의회의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영 제27조제4항에 따라 주민협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협의회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

현 행	개 정 안
	는 자로 구성한다. 가. 당해 자율관리구역 내의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지상권자·임차권자 나. 시민단체 및 옥외광고·디자인 관련 전문가 다. 당해 지역의 구의회 의원 2. 주민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3. 주민협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4. 위원장은 주민협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주민협회를 소집한다. 5.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6. 주민협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7. 그 밖에 주민협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주민협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③주민협회는 자율관리협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영 제26조제2항 각 호의 자율관리협정을 체결하여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주민협회는 그 대표자 및 위원, 자율관리협정 체결자의 변동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변동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현 행	개 정 안
<신설>	제11조(광고물 등의 외국어 병기) ①법 제5조의2제5항에 따라 구청장은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의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광고물 등에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하도록 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광고물 등을 표시하려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건물면적으로 제한하여 고시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물면적으로 제한하는 구역의 범위 2. 광고물 등의 디자인 3. 그 밖에 한글과 외국어의 병기에 필요한 사항

인천광역시연수구조례(공포)

제 명	주 요 내 용
인천광역시연수구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조례	☐ 개정 이유 ○(舊)인천중소기업제품종합전시장을 주민의 문화권을 확대하고 다각적인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연수구 문화의 집으로 설치·운영하기로 결정된 바, ○ 문화의 집 설치와 이에 따른 사업 및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주요 내용 ○ 목적(제1조) 및 위치(제2조) ○ 사업(제3조) 및 운영(제6조) ○ 관리운영의 위탁(제4조) 및 위탁운영의 지원(제5조) ○ 사용허가 관련(제7조, 제8조, 제9조) ○ 사용자의 변상책임(제10조) 및 사용자의 설비(제11조)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연수구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이재호

2015. 1. 1

인천광역시연수구 조례 제 861 호

인천광역시연수구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수구 문화의 집(이하 “문화의 집”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문화의 집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앵고개로 345-42에 둔다.

제3조(사업) 문화의 집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문화예술행사 및 교육프로그램의 기획 및 운영
2. 각종 문화예술 체험 및 창작 활동 정보 자료 제공
3. 그 밖에 문화예술진흥 및 문화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

제4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은 문화의 집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비영리법인 및 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년으로 하며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제5조(위탁운영의 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탁자에게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운영) ① 문화의 집 정기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 다만, 일요일은 제외한다.
2. 매주 월요일
3. 그 밖에 구청장이 문화의 집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임시 휴관일

② 문화의 집 이용시간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사용허가) ① 구청장은 문화의 집 시설물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시설물 사용허가 절차 등에 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사용자는 이용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없다.

제8조(사용허가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2. 시설 또는 설비의 유지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3.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

제9조(사용료) ① 문화의 집 시설물의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② 문화의 집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일 3일 전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징수한 사용료의 반환 기준은 「인천광역시연수구청사시설물관리운영조례」 제10조 규정에 따른다.

④ 문화의 집 시설물의 사용료 감면 대상과 감면요율은 「인천광역시연수구청사시설물관리운영조례시행규칙」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 (사용자의 변상책임)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의 시설·설비 또는 자료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의 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설비 또는 자료를 훼손·망실하였을 경우에는 그와 동일한 시설 또는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자의 설비) ① 사용자는 문화의 집 시설물에 대하여 변형시켜 설비할

수 없다. 다만, 운영자의 승인을 받은 이동식 설비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 설비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 철거하여야 하며, 원상복구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복구 시까지 시설사용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자로 부터 징수할 수 있고 철거하지 않은 설비는 운영자가 임의처분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 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12조(적용범위) 문화의 집 운영 및 관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문화의 집 시설물의 사용료 기준(제9조 제1항 관련)

시설물명	사용시간	사용료	기준	비고
소극장	전일	70,000원	8시간	◦기준시간 초과시 시간당(1시간 미만도 1시간으로 계산) 당해 사용료의 20%를 가산적용
	주간	40,000원	4시간	
	야간	50,000원	4시간	
	연습/준비	10,000원	4시간	◦소극장 부대설비 사용 제한
어린이 미술관	주간	30,000원	8시간	◦기준시간 초과시 시간당(1시간 미만도 1시간으로 계산) 당해 사용료의 20%를 가산적용
공연창작 연습실	주/야간	10,000원	4시간	◦20회 이상 신청할 경우, 30% 감면
음악 연습실	주/야간	10,000원	4시간	◦20회 이상 신청할 경우, 30% 감면
미디어 부스	주간	10,000원	4시간	◦20회 이상 신청할 경우, 30% 감면

- ※ 비고 1. 휴관일의 경우 사용허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2. 주간은 10:00부터 18:00까지로 하며, 야간은 18:00부터 22:00까지로 한다.
3. 피아노 조율비는 사용자 별도 부담으로 한다.
4. 소극장 및 어린이 미술관에 한해 냉난방 비용(연료시가)은 사용하는자가 부담한다.

인천광역시연수구조례(공포)

제 명	주 요 내 용
인천광역시연수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 개정 이유 ○ 민선6기 출범에 따라 새로운 정책과 구정운영 방향에 맞추어 조직진단을 통한 조직개편으로 대외경쟁력을 높이고 효율적인 조직관리와 구정발전을 도모하고자 관련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 주요 내용 ○ 창조전략기획단 신설 (안 제3조) ○ 안전관리과 직제 이동(안 제4조, 제6조) - 도시환경국 ⇒ 자치행정국 - 국별 분장사무 【별표1】 【별표3】 개정 ○ 부서 명칭변경(안 제5조) - 가정복지과 ⇒ 여성아동과 / 지역경제과 ⇒ 경제지원과 ○ 부서 통합(안 제6조) - 교통행정과 + 차량민원과 ⇒ 교통행정과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연수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이재호

2015. 1. 1

인천광역시연수구 조례 제 862 호

인천광역시연수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연수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국 등의 설치) 구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자치행정국, 복지경제국, 도시환경국, 창조전략기획단, 기획예산실, 감사실, 홍보미디어실, 규제개혁추진단을 둔다. 다만, 규제개혁추진단은 한시기구로 한다.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자치행정국)①자치행정국에 총무과, 안전관리과, 교육지원과, 문화체육과, 재무회계과, 세무과, 민원지적과를 둔다.

제5조제1항 중 “가정복지과”를 “여성아동과”로 하고, “지역경제과”를 “경제지원과”로 한다.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도시환경국)①도시환경국에 건설과, 건축과, 도시계획과, 환경보전과, 공원녹지과, **교통행정과**를 둔다.

【별표1】 【별표3】 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개정)① 「인천광역시연수구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가정복지과장” 을 “여성아동과장” 으로 한다.

② 「인천광역시연수구 공동주택 관리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 중 “가정복지과장” 을 “여성아동과장” 으로 한다.

③ 「인천광역시연수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지역경제과장” 을 “경제지원과장” 으로 한다.

④ 「인천광역시연수구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지역경제과장” 을 “경제지원과장” 으로 한다.

⑤ 「인천광역시연수구 재난관리기금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도시환경국장” 을 “자치행정국장” 으로 한다.

⑥ 「인천광역시연수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도시환경국장” 을 “자치행정국장” 으로 한다.

⑦ 「인천광역시연수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도시환경국장” 을 “자치행정국장” 으로 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국 등의 설치) 구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자치행정국, 복지경제국, 도시환경국, 기획예산실, 감사실, 홍보미디어실, 규제개혁추진단을 둔다. 다만, 규제개혁추진단은 한시기구로 한다.	제3조(국 등의 설치) ----- ---자치행정국, 복지경제국, 도시환경국, 창조전략기획단 , 기획예산실, 감사실, 홍보미디어실, 규제개혁추진단을 둔다. ----- ---
제4조(자치행정국) ①자치행정국에 총무과, 교육지원과, 문화체육과, 재무회계과, 세무과, 민원지적과를 둔다. ② 생략 ③ 생략	제4조(자치행정국) ①자치행정국에 총무과, 안전관리과 , 교육지원과, 문화체육과, 재무회계과, 세무과, 민원지적과를 둔다.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5조(복지경제국) ①복지경제국에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지역경제과, 일자리창출과, 청소행정과, 위생관리과를 둔다. ② 생략 ③ 생략	제5조(복지경제국) ①복지경제국에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여성아동과 , 경제지원과 , 일자리창출과, 청소행정과, 위생관리과를 둔다.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6조(도시환경국) ①도시환경국에 건설과, 건축과, 도시계획과, 환경보건과, 공원녹지과, 교통행정과, 차량민원과, 안전관리과를 둔다. ② 생략 ③ 생략	제6조(도시환경국) ①도시환경국에 건설과, 건축과, 도시계획과, 환경보건과, 공원녹지과, 교통행정과 를 둔다.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사 무 분 장 표 (제4조 관련)

국 명	분 장 사 무
자치행정국	1. 서무, 의전, 보안 및 청사방호에 관한 사항 2. 공무원 인사, 후생복지 및 교육에 관한 사항 3. 특별사법경찰관리 사무에 관한 사항 4. 선거 및 국민투표에 관한 사항 5. 국민운동단체(민간단체)에 관한 사항 6. 일제강제동원 피해조사에 관한 사항 7. 과거사 진실규명에 관한 사항 8. 행정구역의 명칭변경 및 구역의 조정에 관한 사항 9. 공무원 및 상용노조 지원 등에 관한 사항 10. 주민자치센터운영에 관한 사항 11. 공동주택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 12. 재난안전관리정책 총괄·조정 13. 재난안전관리 및 재해대책의 수립, 집행에 관한 사항 14. 인적·사회적재난 대응 총괄 15. 재난 매뉴얼 통합관리 16. 재난안전교육 총괄 및 훈련, 홍보 17. 재난 피해원인 및 피해상황 조사·분석 등에 관한 사항 18. 민간자율 방재기능 강화 및 민간협력지원 등에 관한 사항 19. 정보통신망(유선, 무선, 센서망 등)고도화에 관한 사항 20. 행정정보통신시스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1. Smart 연수 건설(u-City 건설 등)에 관한 사항 22. u-도시통합운영센터 건설에 관한 사항 23.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4. 민방위 및 비상대비업무에 관한 사항 25. 평생학습도시에 관한 사항 26. 교육경비지원에 관한 사항 27. 교육국제화특구 사업에 관한 사항 28. 문화예술진흥 및 관광 진흥에 관한 사항 29. 생활체육에 관한 사항 30. 여가레저활동에 관한 사항

국 명	분 장 사 무
자치행정국	31. 구비, 시비, 국비회계의 총괄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2. 계약심사업무에 관한 사항 33. 복식부기에 관한 사항 34. 물품(차량포함) 조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5. 국·공유재산 취득·처분·관리에 관한 사항 36. 지방세 목표액 책정 및 전망분석에 관한 사항 37. 지방세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 38. 구 금고 계약에 관한 사항 39. 지방세 제도의 운영 및 세원개발에 관한 사항 40. 지방세의 수입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1. 세외수입 및 세무조사에 관한 사항 42. 개별주택 가격조사에 관한 사항 43. 기부금품 모집통제에 관한 사항 44. 문서 및 공인관리에 관한 사항 45. 기록물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 46. 정보공개 신청서류 접수 통제에 관한 사항 47. 행정간행물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8. 행정자료실 운영에 관한 사항 40.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 50. 주민등록 및 주민전산화·외국인등록에 관한 사항 51.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사항 52. 여권발급 업무 등에 관한 사항 53. 토지관리 및 지적에 관한 사항 54. 도로명주소에 관한 사항 55. 부동산중개업에 관한 사항 56. 그밖에 다른 국·실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사 무 분 장 표 (제6조 관련)

국 명	분 장 사 무
도시환경국	1. 건설행정의 종합계획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2. 지방토목·건설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3. 도로(도로폭20M이하) 및 도로부속시설물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4. 하수정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하천 및 공유수면 관리에 관한 사항 6.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에 관한 사항 7. 무허가건축물 단속에 관한 사항 8. 건축물관리대장 관리 및 전산화 발급 업무 9. 건축행정정책 정보화 업무 10. 가설건축물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항 11. 공동주택 재개발 및 재건축에 관한 사항 12. 공동주택 사업계획승인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3.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관한 사항 14. 광고물업무에 관한 사항 15. 도시경관업무에 관한 사항 16. 도시계획사업에 관한 사항 17.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18.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사항 19. 환경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0. 자연보호활동에 관한 사항 21.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22. 먹는 물 공동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23. 저탄소녹색성장 및 녹색생활실천에 관한 사항 24. 기후변화대응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25. 연수의제21실천협의회 추진에 관한 사항 26. 산림자원 보전 및 휴양기능 증대 전반에 관한 사항 27. 녹지조경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28. 도시공원 및 녹지조성 전반에 관한 사항

국 명	분 장 사 무
도시환경국	29. 도시공원 및 녹지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30. 교통행정의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1. 주차시설 확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2. 교통환경개선 사업에 관한 사항 33.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사항 34.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35. 불법 주·정차 단속에 관한 사항 36. 화물 및 여객자동차에 관한 사항 37. 무단방치차량에 관한 사항 38. 자동차관리사업에 관한 사항 39. 자동차등록에 관한 사항 40. 의무보험 미가입자 가입 촉구 등에 관한 사항 41. 기타 도시국 소관분야와 유사하거나 연관된 사무

인천광역시연수구조례(공포)

제 명	주 요 내 용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	☐ 개정 이유 ○ 민선6기 출범에 따른 조직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직 개편에 따라 정원 조정에 대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 주요 내용 ○ [별표3]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 수정 <table><tr><th rowspan="2">기관별</th><th rowspan="2">총계</th><th colspan="5">집 행 기 관</th><th rowspan="2">의회사무 기 구</th></tr><tr><th>소계</th><th>본청</th><th>직속기관 (보건소)</th><th>사업소 (도서관)</th><th>동</th></tr><tr><td>총계</td><td>665</td><td>649</td><td></td><td></td><td></td><td></td><td>16</td></tr><tr><td>정무직계</td><td>1</td><td>1</td><td>1</td><td></td><td></td><td></td><td></td></tr><tr><td>구청장</td><td>1</td><td>1</td><td>1</td><td></td><td></td><td></td><td></td></tr><tr><td>일반직계</td><td>663</td><td>647</td><td></td><td></td><td></td><td></td><td>16</td></tr><tr><td>3급</td><td>1</td><td>1</td><td>1</td><td></td><td></td><td></td><td></td></tr><tr><td>4급</td><td>5</td><td>4</td><td>3</td><td>1</td><td></td><td></td><td>1</td></tr><tr><td>5급</td><td>47</td><td>45</td><td>24</td><td>7</td><td>1</td><td>13</td><td>2</td></tr><tr><td>6급이하</td><td>610</td><td>597</td><td></td><td></td><td></td><td></td><td>13</td></tr><tr><td>별정직계</td><td>1</td><td>1</td><td></td><td></td><td></td><td></td><td></td></tr><tr><td>6급상당 이하</td><td>1</td><td>1</td><td>1</td><td></td><td></td><td></td><td></td></tr></table>	기관별	총계	집 행 기 관					의회사무 기 구	소계	본청	직속기관 (보건소)	사업소 (도서관)	동	총계	665	649					16	정무직계	1	1	1					구청장	1	1	1					일반직계	663	647					16	3급	1	1	1					4급	5	4	3	1			1	5급	47	45	24	7	1	13	2	6급이하	610	597					13	별정직계	1	1						6급상당 이하	1	1	1				
기관별	총계			집 행 기 관						의회사무 기 구																																																																																				
		소계	본청	직속기관 (보건소)	사업소 (도서관)	동																																																																																								
총계	665	649					16																																																																																							
정무직계	1	1	1																																																																																											
구청장	1	1	1																																																																																											
일반직계	663	647					16																																																																																							
3급	1	1	1																																																																																											
4급	5	4	3	1			1																																																																																							
5급	47	45	24	7	1	13	2																																																																																							
6급이하	610	597					13																																																																																							
별정직계	1	1																																																																																												
6급상당 이하	1	1	1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이재호

2015. 1. 1

인천광역시연수구조례 제 863 호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원의 총수) 구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수는 665명으로 하며, 집행기관과 의회사무기구에 두는 정원은 다음과 같다.

1. 집 행 기 관 : 649명
2. 의회사무기구 : 16명

【별표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정원관리 기관별 · 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

기관별	총계	집 행 기 관					의회사무 기 구
		소계	본청	직속기관 (보건소)	사업소 (도서관)	동	
총계	665	649					16
정무직계	1	1	1				
구청장	1	1	1				
일반직계	663	647					16
3급	1	1	1				
4급	5	4	3	1			1
5급	47	45	24	7	1	13	2
6급이하	610	597					13
별정직계	1	1					
6급상당 이하	1	1	1				

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원의 총수) 구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수는 664명으로 하며, 집행기관과 의회사무기구에 두는 정원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원의 총수) 구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수는 665명으로 하며, 집행기관과 의회사무기구에 두는 정원은 다음과 같다.					
1. 집행기관 : 648명		1. 집행기관 : 649명					
2. 의회사무기구 : 16명		2. 의회사무기구 : 16명					
[별표3]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		[별표3]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					
기관별	총계	집행기관					의회사무기구
		소계	본청	직속기관 (보건소)	사업소 (도서관)	동	
총계	664	648					16
정무직계	1	1	1				
구청장	1	1	1				
일반직계	662	646					16
3급	1	1	1				
4급	5	4	3	1			1
5급	47	45	24	7	1	13	2
6급이하	609	596					13
별정직계	1	1					
6급상당이하	1	1	1				

기관별	총계	집행기관					의회사무기구
		소계	본청	직속기관 (보건소)	사업소 (도서관)	동	
총계	665	649					16
정무직계	1	1	1				
구청장	1	1	1				
일반직계	663	647					16
3급	1	1	1				
4급	5	4	3	1			1
5급	47	45	24	7	1	13	2
6급이하	610	597					13
별정직계	1	1					
6급상당이하	1	1	1				

인천광역시연수구조례(공포)

제 명	주 요 내 용
인천광역시연수구 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 개정 이유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정하고자 함. ☐ 주요 내용 ○ 조례 제정의 목적, 용어의 정의, 적용 범위 규정(안 제1조 ~ 제3조) ○ 공정한 직무수행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 제7조) ○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제12조) ○ 건전한 지방의회풍토의 조성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 제18조) ○ 행동강령 위반 시의 조치사항(안 제19조 ~ 제20조) ○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 (안 제21조 ~ 제33조)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이재호

2015. 1. 1

인천광역시연수구 조례 제 864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관련자”란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직무수행과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개인으로 본다) 또는 단체를 말한다.
 - 가. 의안 심사, 예산 심의,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등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 또는 단체
 - 나.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 및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 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소속 공직자
2. “선물”이란 대가 없이(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 제공되는 물품 또는 유가증권,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3. “향응”이란 음식물·골프 등의 접대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등) ①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원에게 적용한다.

② 이 조례를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임기가 끝나고 다시 의원으로 당선된 경우에도 이 강령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제4조(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등) 의원은 의안 심사, 예산 심의,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등(이하 “안전심의 등”이라 한다)이 본인,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또는 안전심의 등 관련 활동을 공정하게 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의장과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장에게 사전에 그 사실을 소명(疏明)하고 스스로 안전심의 등 관련 활동을 회피할 수 있다.

제5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의원은 여비, 업무추진비 등 공무 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소속 의회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된다.

제6조(인사 청탁 등의 금지) 의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직무관련자의 임용·승진·전보·포상·징계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아니 된다.

제7조(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한) 의원은 법률 또는 조례에서 겸직이 금지되지 아니한 구 및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 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각종 위원회·심의회·협의회 등(이하 “위원회등”이라 한다)의 위원으로 활동하는 경우에도 해당 위원회등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을 심의·의결할 때에는 그 심의·의결을 회피 하여야 한다.

1. 의원이 소속된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사항
2. 본인과 배우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제3장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

제8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 ① 의원은 그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의원은 사적 이익을 위하여 소속 의회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제9조(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의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공용재산의 사적 사용·수익의 금지 등) 의원은 각종 공용물과 예산의사용에 따라 부수적으로 발생한 부가서비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해서는 아니 된다.

제11조(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① 의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 부동산, 선물 또는 향응(이하 “금품 등”이라 한다)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2. 직무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에서 제공되는 음식물 또는 편의
3.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숙박 또는 음식물
4.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에서 제공되는 기념품 또는 홍보용 물품
5. 이벤트 등에서 추첨 등 무작위 선정방법으로 참가자에게 주는 금품등

② 의원은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이 제1항에 따라 수령이 금지되는 금품 등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의원 간 금품 등 수수 행위 금지) 의원은 의회 내의 선거 등 직무와 관련하여 의원 간에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4장 건전한 지방의회풍토의 조성

제13조(국내외 활동 제한 등) ① 의원은 다른 기관·단체로부터 여비·활동비 등을 지원받아 직무와 관련된 국내외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전에 그 활동의 사유·경과, 여비·활동비 등을 지원하는 기관·단체 및 지원 내용을

분명하게 밝혀 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의원은 제1항 단서에 따른 승인을 받아 국내외 활동을 마친 경우에는 그 활동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1항 단서에 따른 승인 내용 및 제2항에 따른 활동보고서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외부강의·회의 등의 신고) 의원은 대가를 받고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발표회, 심포지엄, 교육과정, 회의 등에서 강의, 강연,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의결 등(이하 “외부강의·회의등”이라 한다)을 할 때에는 미리 외부강의·회의등의 요청자, 요청 사유, 장소, 일시 및 대가를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15조(영리행위의 신고) 의원은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제한하는 영리행위 외에도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16조(금전 거래 등 제한) ① 의원은 상호간에 또는 직무관련자와 금전 거래를 하거나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의원 상호간에 또는 직무관련자와 금전 거래를 하거나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 받으려는 의원은 이를 사전에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17조(경조금품의 수수 제한 등) 의원은 경조사와 관련하여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에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친족으로부터 받는 경조사 관련 금품등인 경우
2. 의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에서 그 단체 등의 정관·회칙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되는 경조사 관련 금품등인 경우

제18조(성희롱 금지) 의원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의원 상호간 또는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성적(性的)인 말이나 행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장 행동강령 위반 시의 조치

제19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① 누구든지 의원이 이 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의장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본인 및 위반자의 인적 사항과 위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반행위를 신고 받은 의장은 신고사항이 이 강령에 위반 되는지 여부 및 그 처리 방향 등에 대하여 제21조에 따른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에 자문하여야 한다.

④ 의장과 제21조에 따른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신고인과 신고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된 위반행위를 확인하면 해당 의원으로부터 소명자료를 받아 「지방자치법」에 따른 징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0조(금지된 금품 등의 처리 등) ① 제11조, 제12조 및 제17조 제2항을 위반하여 수령이 금지된 금품 등을 제공받거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이 이러한 금품 등을 제공받은 사실을 알게 된 의원은 금품 등을 제공한 자(이하 “제공자”라 한다)에게 그 제공받은 금품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품 등을 반환한 의원은 그에 대한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비용을 의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반환하여야 하는 금품 등이 멸실·부패·변질 등의 우려가 있거나 그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의장에게 신고한 후 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금품 등을 처리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2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 등에 대하여 제공자, 제공받은 자, 제받은 금품 제공일시 및 처리경위 등을 기록·관리하고, 제공자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장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설치 등

제21조(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설치)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문을 위해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이 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 및 조사·처리에 관한 사항
2.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른 국내외 활동의 승인에 관한 사항
3. 의원에 대한 행동강령의 교육 및 상담에 관한 사항
4. 이 강령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에 관한 사항

제22조(구성 및 임기) ① 자문위원회는 의장 소속 하에 둔다.

② 자문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의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민간위원은 학계·법조계·언론계 또는 시민사회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 중 행동강령의 운영과 관련되어 공정성·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위촉한다.

③ 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는 위원이 되지 못한다.

1. 구 공무원
2. 구의회 의원
3. 정당의 당원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은 위원이 질병, 장기여행, 중도 사퇴, 품위손상, 그 밖에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⑤ 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의장은 지체 없이 새로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임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

제23조(위원장) ①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4조(위원의 제척·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문위원회의 회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해당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이거나 공동 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안의 이해관계자와 제7조2호의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 또는 손해사정을 하고 있거나 하였던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감사, 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사안의 이해관계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 ② 위원이 제21조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하게 수행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자문위원회의 회의에서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

제25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의장으로부터 자문 요청을 받은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은 회의 개최일부터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회의일시 및 장소, 회의 안건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자문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의결한다.

③ 제24조에 따라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 위원은 제2항에 따른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④ 위원장은 안건에 따라 부의 안건을 서면심의하게 할 수 있다.

제26조(간사) ① 자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연수구의회사무국의 의정담당으로 한다.

제27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의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하거나 구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28조(의결사항 통지) 위원장은 자문 의결 후 3일 이내에 그 결과를 의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29조(자문위원의 비밀유지 의무)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0조(회의록)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참석위원 성명
3. 회의(자문) 내용

제31조(수당 지급) 의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문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32조(운영세칙) 이 장에 규정된 사항 외에 자문위원회의 업무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자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33조(행동강령의 운영) ① 의장은 의원에 대한 이 조례의 교육·상담 및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 및 조사·처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② 의장은 이 조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의회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 조례 제7조 제1호는 현재 소속 위원회 임기종료 후 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인천광역시연수구조례(공포)

제 명	주 요 내 용
인천광역시연수구 의회 포상 조례	☐ 개정 이유 ○ 1999년 제정한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표창 규칙」은 국회표창 규정을 인용하여 제정한 것으로 현재 구의회 포상업무와는 맞지 않는 내용 등이 있어, 본 규칙을 폐지함과 동시에, 구의회 위상에 맞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포상 조례」로 격상시켜 보다 명확하게 포상의 범위 및 내용을 정하여 포상절차에 대한 객관성과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함. ☐ 주요 내용 ○ 조례 제정의 목적, 적용 범위 규정 (안 제1조 ~ 제4조) ○ 포상 종류에 관한 사항 사항 (안 제5조 ~ 제8조) ○ 포상시기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 공적심사 및 공적심사위원회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 ~ 제11조) ○ 포상대상자 및 서훈 추천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 ~ 제13조) ○ 이중포상 금지에 관한 사항 (안 제14조)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포상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이재호

2015. 1. 1

인천광역시연수구 조례 제 865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포상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행하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의회활동 또는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이 큰 공무원, 구민(외국인을 포함한다) 및 단체에 행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관외 거주자 및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행한다.

제4조(포상방법) ① 포상은 별지 제1호 서식 내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의 포상은 상장 및 상패를 수여할 수 있다.

③ 수상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특전을 줄 수 있다.

1. 각종 의정행사의 초청 등을 통한 사기양양
2. 기타 수상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포상의 종류) 이 규정에 의한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감사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상장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제6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의 경우에 수여한다.

1.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경우
2. 의회운영에 헌신한 공이 있는 경우
3. 지역사회의 이익과 발전에 공이 있는 경우

제7조(감사장) 감사장은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의회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제8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각종 품평회, 경진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기타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3. 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제9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포상권 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이를 행할 수 있다.

제10조(공적심사) 포상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적조사에 의하여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다만, 감사장 및 상장의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제11조(의회공적심사위원회) ① 의장의 포상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사무국에 의회공적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의회공적심사위원회는 의회사무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각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을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의회공적심사위원회는 간사1인을 두며 의정담당이 된다.

④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중에서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⑤ 의회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를 소집한다.

⑥ 의회공적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부득이 한 경우 의결을 서면으로 할 수 있다.

⑦ 의회공적심사위원회가 심사·의결한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공적심사의 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2조(대상자 추천) ① 포상대상자의 추천은 각급 기관장 또는 구의원 및 의회사무국장이 행한다.

② 제1항의 포상을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추천서에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 수여 예정일 15일전에 추천하여야 한다.

제13조(서훈 등 추천) 공무원을 제외한 의원 및 일반인에 대한 서훈 및 대통령, 국회의원, 대법원장, 국무총리, 행정자치부장관, 인천광역시 표창대상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공적조서에 의하여 의회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 의장이 추천한다.

제14조(이중포상의 금지) 포상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행할 수 없다.

제15조(수상자 명부) 수훈 및 포상 수상자에 대하여는 수상자명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규정)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표창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인천광역시연수구조례(공포)

제 명	주 요 내 용
인천광역시연수구 의회의원 의정활동 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개정 이유 ○ 「지방자치법」 제33조, 같은법 시행령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라 연수구 의정비심의 위원회로부터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연수구의회의원 의정비 심의 결과가 통과되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의정비 지급에 적정을 기하고자 함. ☐ 주요 내용 ○ 제3조(월정수당의 지급) 제3항의 별표2 월정수당지급 기준표 개정 ○ 월정수당 지급기준표 매월 1,826,660원에서 1,857,500원으로 개정 ○ 2015년도는 지급기준표대로 지급 ○ 2016년~2018년도는 지급기준표에 전년도 공무원보수 인상률을 적용하여 지급)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의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이재호

2015. 1. 1

인천광역시연수구 조례 제 866 호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개정 2007.12.27, 2010.12.27>

월정수당지급기준표(제3조관련)

지급기준	월 정 수 당
의원1인	월 1,857,500원

- 비고 : 1. 2015년도는 월정수당지급기준표대로 지급한다.
2. 2016년~2018년도는 월정수당지급기준표에 매년 전년도 공무원보수인상률을 적용하여 지급한다.

인천광역시연수구규칙(공포)

제 명	주 요 내 용
인천광역시연수구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 개정 이유 ○ 국민권익위원회 도시계획·건축 심의과정의 부패유발 차단방안 권고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조례 시행규칙 개정을 통하여, ○ 도시계획위원 공개, 위원구성의 공정성·투명성 확보장치 강구, 위원회 운영과정 공개강화 등을 반영하기 위함 ☐ 주요 내용 ○ 위원에 대한 음성적 로비를 차단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위원 명단 공개 방법 및 근거 신설 (안제4조제3항) - ③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였을 때에는 그 명단을 공개할 수 있으며, 공개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위촉 위원 청렴서약서 제출 의무 규정 신설 (안 제10조) - 제10조제1항 중 “규정의 준수”를 “규정의 준수 및 청렴성 확보”로 개정

인천광역시연수구 도시계획위원회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이재호

2015. 1. 1

인천광역시연수구 규칙 제 552 호

인천광역시연수구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 중 “제3조제3항에서 토지이용·교통·환경등 도시계획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를 “제3조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제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였을 때에는 그 명단을 공개할 수 있으며, 공개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규정의 준수”를 “규정의 준수 및 청렴성 확보”로 한다.

별지 제5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위원의 자격) 『인천광역시연수구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3항에서 “토지이용·교통·환경등 도시계획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 6 (생략)	제3조(위원의 자격) ----- ----- --- 제3조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 ----- -----. 1 ~ 6 (현행과 같음)
제4조(위원의 위촉 등) ① (생략) ② (생략) <신설>	제4조(위원의 위촉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u>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였을 때에는 그 명단을 공개할 수 있으며, 공개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u>
제10조(회의의 비공개 및 결과의 관리) ① 구청장은 조례 제9조에 따른 “회의의 비공개” <u>규정의 준수</u>를 위하여 위촉위원으로부터 별지 제5호 서식의 서약서를 징구한다. ②~③ (생략)	제10조(회의의 비공개 및 결과의 관리) ① ----- ---- 규정의 준수 및 청렴성 확보를 ---- -----. ②~③ (현행과 같음)

서 약 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연수구 도시계획(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으로 회의내용 및 기타 직무 수행상 알게 된 사항에 대하여 위원으로 재임 중은 물론 해촉된 후에도 이를 누설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정직·공정·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며, 반부패·청렴 정책에 적극적으로 호응하고자 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어떠한 명목으로도 관계자 등에게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요구하거나 받지도 않겠으며, 만약 이를 어길 때에는 관계 법령에 따른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음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서약자 : 인천광역시연수구 도시계획(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 원 (인)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귀하

인천광역시연수규칙(공포)

제명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주요내용

□ 개정 이유

○ 민선6기 출범에 따른 조직개편에 따라 직렬별·직급별 조정을 위하여 관련 규칙 및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 내용

○ [별표] 기관별·직급별 정원 일부개정

- 정원관리 기관별 조정현황

구 분	계	본청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동
증 감	1	2	-	△1	-	-
현 행	664	457	16	48	13	130
개정(안)	665	459	16	47	13	130

- 직급별 조정현황

구 분	계	정무직	일 반 직							별 정 직	
			소계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소계	8급 상당
증 감	1	-	1	-	-	2	-	-	△1	-	-
현 행	664	1	662	6	47	144	218	195	52	1	1
개정(안)	665	1	663	6	47	146	218	195	51	1	1

- 직급별 세부내역 : 조례안 참조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이재호

2015. 1. 1

인천광역시연수구규칙 제 553 호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직렬별 정원 (제2조 관련)

기관별 직렬별	계	구본청	의회사무 기 구	직속기관 (보건소)	사업소 (도서관)	동
합계	665	459	16	47	13	130
정무직	1	1				
일반직	663	457	16	47	13	130
3급	1	1				
행정	1	1				
4급	5	3	1	1		
행정	3	2	1			
기술	2	1		1		
5급	47	24	2	7	1	13
행정	22	12	2			8
의무	4			4		
시설	0	0				
행정·사회복지	5	3				2
행정·사서	1				1	
행정·녹지	0	0				0
행정·보건	2	1		1		
행정·환경	0	0				
행정·시설	7	5				2
행정·사회복지· 시설	1					1
행정·녹지·시설	1	1				
행정·보건·환경	2	2				
보건·의료기술· 약무·간호	2			2		
6급	146	111	4	12	3	16
행정	66	48	4		1	13
세무	6	6				
사회복지	3	3				
전산	1	1				

직렬별 \ 기관별	계	구분청	의회사무 기 구	직속기관 (보건소)	사업소 (도서관)	동
공업	1	1				
녹지	3	3				
보건	5	3		2		
간호	2			2		
환경	1	1				
시설	11	11				
의료기술	1			1		
운전	2	2				
기계운영	1	1				
사무운영	4	4				
행정·전산	1	1				
행정·세무	3	3				
행정·사회복지	10	7				3
행정·사서	1				1	
행정·공업	2	2				
행정·보건	2	1		1		
행정·환경	4	4				
행정·시설	7	6			1	
행정·방송통신	1	1				
공업·시설	2	2				
녹지·시설	0	0				
보건·의료기술	1			1		
보건·간호	1			1		
약무·간호	1			1		
보건·의료기술·간호	2			2		
보건·약무·간호	1			1		
7급	218	157	4	16	4	37
행정	88	56	3		2	27
세무	20	20				
사회복지	23	13				10
전산	6	5			1	
사서	1				1	
공업	8	8				

직렬별 \ 기관별	계	구분청	의회사무 기 구	직속기관 (보건소)	사업소 (도서관)	동
녹지	3	3				
보건	8	4		4		
의료기술	4			4		
간호	6			6		
환경	5	5				
시설	21	21				
방송통신	2	2				
운전	7	6	1			
전기운영	0	0				
기계운영	3	3				
사무운영	6	6				
행정·세무	1	1				
행정·사회복지	2	2				
행정·환경	2	2				
보건·간호·의료기술	1			1		
보건·의료기술·약무	1			1		
8급	195	134	5	10	4	42
행정	92	57	3	2	1	29
세무	8	8				
사회복지	13	5				8
전산	6	6				
사서	1				1	
속기	1		1			
방호	0	0				
공업	9	8			1	
녹지	3	3				
보건	6	3		3		
의료기술	2			2		
간호	1			1		
환경	3	3				
시설	21	21				
방송통신	2	2				

직렬별 \ 기관별	계	구분청	의회사무 기 구	직속기관 (보건소)	사업소 (도서관)	동
운전	6	4		2		
사무운영	3	1	1			1
행정·사회복지	10	6				4
행정·사서	1				1	
행정·세무	2	2				
녹지·시설	1	1				
행정·환경	3	3				
행정·보건	1	1				
9급	51	27		1	1	22
행정	20	6				14
세무	1	1				
사회복지	10	6				4
사서	1				1	
녹지	1	1				
보건	1	1				
시설	2	2				
환경	1	1				
운전	2	1		1		
사무운영	0	0				
행정·사회복지	7	3				4
행정·세무	2	2				
행정·보건	2	2				
행정·공업	1	1				
별정직	1	1				
8급 상당	1	1				
별정(비서)	1	1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별 표】							【별 표】						
기관별 직렬별	계	구본청	의회 사무 기구	직속 기관 (보건 소)	사업소 (도서관)	동	기관별 직렬별	계	구본청	의회 사무 기구	직속 기관 (보건 소)	사업소 (도서관)	동
합계	664	457	16	48	13	130	합계	665	459	16	47	13	130
정무직	1	1					정무직	1	1				
일반직	662	455	16	48	13	130	일반직	663	457	16	47	13	130
3급	1	1					3급	1	1				
행정	1	1					행정	1	1				
4급	5	3	1	1			4급	5	3	1	1		
행정	3	2	1				행정	3	2	1			
기술	2	1		1			기술	2	1		1		
5급	47	24	2	7	1	13	5급	47	24	2	7	1	13
행정	26	14	2			10	행정	22	12	2			8
의무	4			4			의무	4			4		
시설	2	2					시설	0	0				
행정·사회복지	3	2				1	행정·사회복지	5	3				2
행정·사서	1				1		행정·사서	1				1	
행정·녹지	2	1				1	행정·녹지	0	0				0
행정·보건	2	1		1			행정·보건	2	1		1		
행정·환경	2	2					행정·환경	0	0				
행정·시설	3	2				1	행정·시설	7	5				2
행정·사회복지·시설							행정·사회복지·시설	1					1
행정·녹지·시설							행정·녹지·시설	1	1				
행정·보건·환경							행정·보건·환경	2	2				
보건·의료기술·약무·간호	2			2			보건·의료기술·약무·간호	2			2		
6급	144	109	4	12	3	16	6급	146	111	4	12	3	16
행정	68	50	4		1	13	행정	66	48	4		1	13
세무	6	6					세무	6	6				
사회복지	3	3					사회복지	3	3				
전산	1	1					전산	1	1				
공업	1	1					공업	1	1				

현행							개정안						
기관별 직렬별	계	구분청	의회 사무 기구	직속 기관 (보건 소)	사업소 (도서관)	동	기관별 직렬별	계	구분청	의회 사무 기구	직속 기관 (보건 소)	사업소 (도서관)	동
녹지	2	2					녹지	3	3				
보건	5	3		2			보건	5	3		2		
간호	2			2			간호	2			2		
환경	1	1					환경	1	1				
시설	11	11					시설	11	11				
의료기술	1			1			의료기술	1			1		
운전	2	2					운전	2	2				
기계운영	1	1					기계운영	1	1				
사무운영	3	3					사무운영	4	4				
행정·전산	1	1					행정·전산	1	1				
행정·세무	3	3					행정·세무	3	3				
행정·사회복지	10	7				3	행정·사회복지	10	7				3
행정·사서	1				1		행정·사서	1				1	
행정·공업	2	2					행정·공업	2	2				
행정·보건	2	1		1			행정·보건	2	1		1		
행정·환경	4	4					행정·환경	4	4				
행정·시설	4	3			1		행정·시설	7	6			1	
행정·방송통신	1	1					행정·방송통신	1	1				
공업·시설	2	2					공업·시설	2	2				
녹지·시설	1	1					녹지·시설	0	0				
보건·의료기술	1			1			보건·의료기술	1			1		
보건·간호	1			1			보건·간호	1			1		
약무·간호	1			1			약무·간호	1			1		
보건·의료기술·간호	2			2			보건·의료기술·간호	2			2		
보건·약무·간호	1			1			보건·약무·간호	1			1		
7급	218	157	5	16	4	36	7급	218	157	4	16	4	37
행정	87	55	4		2	26	행정	88	56	3		2	27
세무	20	20					세무	20	20				
사회복지	23	14				9	사회복지	23	13				10
전산	6	5			1		전산	6	5			1	
사서	1				1		사서	1				1	

현행							개정안						
기관별 직렬별	계	구분청	의회 사무 기구	직속 기관 (보건 소)	사업소 (도서관)	동	기관별 직렬별	계	구분청	의회 사무 기구	직속 기관 (보건 소)	사업소 (도서관)	동
공업	7	7					공업	8	8				
녹지	3	3					녹지	3	3				
보건	8	4		4			보건	8	4		4		
의료기술	4			4			의료기술	4			4		
간호	6			6			간호	6			6		
환경	5	5					환경	5	5				
시설	21	21					시설	21	21				
방송통신	2	2					방송통신	2	2				
운전	7	6	1				운전	7	6	1			
전기운영	1	1					전기운영	0	0				
기계운영	3	3					기계운영	3	3				
사무운영	7	6				1	사무운영	6	6				
행정·세무	1	1					행정·세무	1	1				
행정·사회복지	2	2					행정·사회복지	2	2				
행정·환경	2	2					행정·환경	2	2				
보건·간호·의료 기술	1			1			보건·간호·의료 기술	1			1		
보건·의료기술· 약무	1			1			보건·의료기술· 약무	1			1		
8급	195	133	4	11	4	43	8급	195	134	5	10	4	42
행정	89	53	4	2	1	29	행정	92	57	3	2	1	29
세무	8	8					세무	8	8				
사회복지	13	5				8	사회복지	13	5				8
전산	6	6					전산	6	6				
사서	1				1		사서	1				1	
속기							속기	1		1			
방호	1	1					방호	0	0				
공업	9	8			1		공업	9	8			1	
녹지	3	3					녹지	3	3				
보건	6	3		3			보건	6	3		3		
의료기술	2			2			의료기술	2			2		
간호	1			1			간호	1			1		
환경	3	3					환경	3	3				
시설	21	21					시설	21	21				

현행							개정안						
기관별 직렬별	계	구분청	의회 사무 기구	직속 기관 (보건 소)	사업소 (도서관)	동	기관별 직렬별	계	구분청	의회 사무 기구	직속 기관 (보건 소)	사업소 (도서관)	동
방송통신	2	2					방송통신	2	2				
운전	6	3		3			운전	6	4		2		
사무운영	6	4				2	사무운영	3	1	1			1
행정·사회복지	10	6				4	행정·사회복지	10	6				4
행정·사서	1				1		행정·사서	1				1	
행정·세무	2	2					행정·세무	2	2				
녹지·시설	1	1					녹지·시설	1	1				
행정·환경	3	3					행정·환경	3	3				
행정·보건	1	1					행정·보건	1	1				
9급	52	28		1	1	22	9급	51	27		1	1	22
행정	20	6				14	행정	20	6				14
세무	1	1					세무	1	1				
사회복지	10	6				4	사회복지	10	6				4
사서	1				1		사서	1				1	
녹지	1	1					녹지	1	1				
보건	1	1					보건	1	1				
시설	2	2					시설	2	2				
환경	1	1					환경	1	1				
운전	2	1		1			운전	2	1		1		
사무운영	1	1					사무운영	0	0				
행정·사회복지	7	3				4	행정·사회복지	7	3				4
행정·세무	2	2					행정·세무	2	2				
행정·보건	2	2					행정·보건	2	2				
행정·공업	1	1					행정·공업	1	1				
별정직	1	1					별정직	1	1				
8급 상당	1	1					8급 상당	1	1				
별정(비서)	1	1					별정(비서)	1	1				

인천광역시연수구규칙(공포)

제 명	주 요 내 용
인천광역시연수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	☐ 개정 이유 ○ 민선6기 출범에 따라 새로운 정책과 구정운영 방향에 맞추어 조직진단을 통한 조직개편으로 대외경쟁력을 높이고 효율적인 조직관리와 구정발전을 도모하고자 관련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 주요 내용 ○ 기구신설에 따른 부서장 직급과 분장사무 정비 - 신 설 : 창조전략기획단 ⇒ 안 제3조, 제9조 ○ 기구통합에 따른 부서장 직급과 분장사무 정비 -통 합 : 교통행정과 + 차량민원과 ⇒ 교통행정과 ⇒ 안 제7조 ○ 기구직제 이동 및 기구명칭, 부서장 직급변경에 따른 정비 ○ 직제이동 : 안전관리과(도시환경국 ⇒ 치행정국) ⇒ 안 제6조 ○ 기구명칭 변경 - 가정복지과 ⇒ 여성아동과 / 지역경제과 ⇒ 경제지원과 ⇒ 안 제7조 ※부서장 직급변경 및 사무분장표 변경-조례안 참조

인천광역시연수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이재호

2015. 1. 1

인천광역시연수구 규칙 제 554 호

인천광역시연수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인천광역시연수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부터 제14조까지를 각각 제4조부터 제15조까지로 하고,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창조전략기획단) 창조전략기획단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6조(종전의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자치행정국) 자치행정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총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안전관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교육지원과장, 문화체육과장, 재무회계과장, 세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민원지적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제7조(종전의 제6조) 중 “복지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을 “**복지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하고, “가정복지과장”을 “**여성아동과장**”으로 하고, “지역경제과장”을 “**경제지원과장**”으로 하고, “청소행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을 “**청소행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한다.

제8조(종전의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도시환경국) 도시환경국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건설과장, 건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도시계획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환경보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공원녹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교통행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별표1, 별표2, 별표3, 별표4, 별표5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시행일 이전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 인·허가 사항은 종전부서(도시계획과)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한다.

제2조(다른규칙의 개정)① 「인천광역시연수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가정복지과”를 “여성아동과”로 하고, “지역경제과”를 “경제지원과”로 한다.

② 「인천광역시연수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 같은조같은항제4호, 같은조같은항제6호 중 “교통행정과장, 차량민원과장”을 “교통행정과장”으로 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기획예산실) 생략	제3조(창조전략기획단) 창조전략기획단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4조(감사실) 생략	제4조(기획예산실) 현행과 같음
제4조의2(홍보미디어실) 생략	제5조(감사실) 현행과 같음
제4조의3(규제개혁추진단) 생략	제5조의2(홍보미디어실) 현행과 같음
제5조(자치행정국) 자치행정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총무과장, 교육지원과장, 문화체육과장, 재무회계과장, 세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민원지적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제5조의3(규제개혁추진단) 현행과 같음
제6조(복지경제국) 복지경제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복지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하고, 사회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 지역경제과장, 일자리창출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청소행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위생관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 보한다.	제6조(자치행정국) ----- -----, 총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안전관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교육지원과장, 문화체육과장, 재무회계과장, 세무과장은 ----- -----.
제7조(도시환경국) 도시환경국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건설과장, 건축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도시계획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환경보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공원녹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으로, 교통행정과장, 차량민원과장, 안전관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7조(복지경제국) ----- -----, 복지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보하고, 사회복지과장, 여성아동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 경제지원과장, 일자리창출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청소행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위생관리과장은 ----- -----.
제8조(부서의 분장사무) 구 본청에 두는 부서의 분장사무는 "별표1"과 같다.	제8조(도시환경국) ----- -----, 건설과장, 건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으로, 도시계획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환경보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공원녹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교통행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9조(소장·과장·지소장의 직급) 보건소장은	제9조(부서의 분장사무) 구 본청에 두는 부서의 분장사무는 "별표1"과 같다.
	제10조(소장·과장·지소장의 직급) 보건소장은

현행	개정안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보건행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 보하고, 건강증진과장, 송도보건지소장은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 또는 지방약무사무관 또는 지방의료기술사무관으로 보한다. 제10조(분장사무) 보건소 및 송도보건지소에 두는 분장사무는 “별표2”와 같다. 제11조(관장의 직급) 연수청학도서관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서사무관으로 보한다. 제12조(분장사무) 관장의 분장 사무는 "별표3"과 같다. 제13조(동장의 직급) 「지방자치법」 제1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에 두는 동장의 직급은 "별표5"와 같다. 제14조(분장사무) 동에 두는 분장사무는"별표4"과 같다.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보건행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 보하고, 건강증진과장, 송도보건지소장은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 또는 지방약무사무관 또는 지방의료기술사무관으로 보한다. 제11조(분장사무) 보건소 및 송도보건지소에 두는 분장사무는 “별표2”와 같다. 제12조(관장의 직급) 연수청학도서관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서사무관으로 보한다. 제13조(분장사무) 관장의 분장 사무는 "별표3"과 같다. 제14조(동장의 직급) 「지방자치법」 제1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에 두는 동장의 직급은 "별표5"와 같다. 제15조(분장사무) 동에 두는 분장사무는"별표4"과 같다.

구 본청 부서 사무분장표 (제9조 관련)

부서명	분 장 사 무
창조전략 기획단	1. 구의 핵심사업, 프로젝트 사업 등 정책 및 전략 개발에 관한 사항 (정책개발에 따른 종합계획 및 전략방안 수립 후 사업부서 배부) 2. 연수관광클러스터 구축 및 추진 3. 경영수익사업 발굴 및 우수사례 전파에 관한 사항 4. 공공기관 유치 및 기반시설 조성 등 지역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지역개발방안 수립 후 사업부서 배부) 5. 인천 신항 관련사업 및 배후지역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부서명	분 장 사 무
기획예산실	1. 기구 및 정원관리에 관한 사항 2. 사무위임 및 사무전결에 관한 사항 3. 민간위탁사무에 관한 사항 4. 구 행정의 종합기획 조정에 관한 사항 5. 지시사항 관리 6. 위원회 관리 7. 구정백서 및 구정현황 발간에 관한 사항 8. 주요업무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9. 구정의 중·장기종합계획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10. 당정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11. 시 확대간부 회의 12. 구청장직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 13. 공무원 공무국외 여행 허가에 관한 사항 14. 국내·외 회의(대회)유치에 관한 사항 15.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및 행정협정체결에 관한 사항 16. 국내·외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 17. 지방분권·균형발전에 관한 사항 18. 지방이양 사무에 관한 사항 19. 일반회계·특별회계 예산편성 및 배정에 관한 사항 20. 국고 및 시비 보조금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1. 세출예산의 변경(전용, 이체, 이용, 변경 등) 사용에 관한 사항 22. 성립전 예산 및 예비비 사용승인에 관한 사항 23. 예산의(명시, 사고, 계속비) 이월에 관한 사항 24. 교부세, 교부금 및 재원조정교부금 관리에 관한 사항 25. 예산성과금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26. 중기 지방재정 계획 수립

부서명	분 장 사 무
기획예산실	27. 지방재정 투·융자심사에 관한 사항 28. 재정전망 분석 및 제도 연구 발전 29. 지방채무의 발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0. 기금 운영 총괄 조정 · 관리 31. 주민재정 참여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32.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 관리에 관한 사항 33. 용역업무 관리에 관한 사항 34. 예산절감 대책 및 건전화 계획 이행에 관한 사항 35. 재정관리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36. 예산낭비 대응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37. 지방공기업 등에 관한 사항 38. 구 법제 행정의 종합기획에 관한 사항 39. 구 의회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40. 조례, 규칙, 훈령, 예규의 제 개정, 폐지, 공포에 관한 사항 41. 고시, 공고 등 중요문서의 심사에 관한 사항 42. 법제자료의 조사, 수집, 연구에 관한 사항 43. 법령 및 자치법규 질의, 해석에 관한 사항 44. 행정법규 상담실 운영에 관한 사항 45. 조례규칙심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46. 구청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 47. 소송사건 처리 결과의 심사 및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48. 소송대리인 선임 및 소송수행자 지정에 관한 사항 49. 법률고문 운영에 관한 사항 50. 행정심판에 관한 사항 51. 구 본청, 산하기관, 단체의 주요업무에 대한 확인평가 및 결과조치 52. 자체평가에 관한 사항 53. 국정시책 연계 군·구 평가 총괄 관리 54. 주요 대형 프로젝트 점검확인 및 구민불편사항 확인 평가 55. 외부기관 평가에 관한 사항(총괄적인 업무) 56. 7대 당면사항

부서명	분 장 사 무
감 사 실	1. 감사에 관한 종합계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감사 및 그 결과 조치에 관한 사항 3. 비위공무원 징계요구 및 소청에 관한 사항 4. 청원진정서 처리에 관한 사항 5. 상급기관 이첩사항 조사처리에 관한 사항 6. 사무인계인수사항 확인에 관한 사항 7. 민원서류 처리 점검에 관한 사항 8. 감사사항의 기록관리에 관한 사항 9. 공직기강 쇄신 추진에 관한 사항 10. 공직자윤리위원회에 관한 사항 11. 클린신고센터 운영 12. 공무원 행동강령 운영 13. 공직자 재산등록에 관한 사항 14. 중요정보 및 민원사항 조사처리에 관한 사항 15. 청렴도 관련 업무 16. 청탁등록 센터 운영 17. 물품구매·제조, 용역사업, 시설공사의 원가계산 및 심사·조정에 관한 사항 18. 계약심사 관련규정 및 제도운영에 관한 사항 19. 원가계산 능력 배양 및 우수사례 전파에 관한 사항

부서명	분 장 사 무
홍보미디어실	1. 홍보기획, 보도, 미디어활동, 통신지원에 관한 사항 2. 구정·시책 보도지원에 관한 사항 3. 구정 여론조사에 관한 사항 4. 한국지역진흥재단 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5. 대언론 구청장 인터뷰 및 홍보에 관한 부서요구사항 검토 6. 각종 홍보물 제작 및 보존 관리, 배부 7. 구정 홍보물(화보·소식지·영상물·뉴스 제작 등) 발행 배부 8. 홍보·미디어 메커니즘 및 시스템에 관한 사항 9. 구의 상징(CI, BI) 제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0. 공고 및 고시, 시정 홍보용 게시판 관리 11. 신문 및 방송 보도와 관련한 홍보에 관한 사항 12. 국·시정 및 구정 홍보에 관한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13. 스튜디오, 인터넷방송실, 구정홍보실, VTR실, 사진실, 기자실 운영 14. 국어책임관제 운영 및 국어사용 활성화 정책에 관한 사항 15. 인터넷 구정홍보계획의 총괄 16. 구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7. 인터넷 홈페이지 홍보사항 유지·관리 18. 소셜네트워크 서비스(SNS) 운영에 관한사항 19. 지역정보화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0. 행정정보화사업 추진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1. 행정정보시스템(새울행정시스템, 전자결재시스템 등) 운영에 관한 사항 22. 전산장비(PC, 프린터, 스캐너 등) 도입 및 유지보수 지원에 관한 사항 23. 주전산기(공통기반서버, KLIS서버 등) 및 각종서버 운영에 관한 사항 24. 구내 정보통신망(LAN, WAN구간) 회선 관리에 관한 사항 25. 네트워크장비(백본, 라우터 등) 도입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6. 정보통신보안 및 개인정보보안에 관한 사항 27. 정보보호시스템(VPN, F/W, IPS, 유해차단 등) 구축 및 운영관리 28. U-컨텐츠 서비스 모델 개발 및 운영 29. 무선인터넷(Wifi) 도입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0. 정품 SW 및 우수정보시스템 보급 및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부서명	분 장 사 무
홍보미디어실	31. 구민 및 공무원 정보화 교육에 관한 사항 32. 통계행정의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33. 통계자료의 간행물 발간에 관한 사항 34. 각종 통계조사(인구주택, 농림어업, 사업체 등)에 관한 사항

부서명	분 장 사 무
규제개혁 추진단	1. 규제등록 및 관리 총괄 2. 규제개혁 관련 정부정책(규제총량제, 한시적 규제유예제 등)추진 3. 중앙부처 법령개선 건의과제 발굴 4. 상위법령과 불일치한 자치법규 등 발굴 및 개선 5. 기업 등 지역현장 규제애로 발굴 및 제도 개선 6. 규제완화 추진실적 평가 대응 7. 그 밖에 규제개혁에 관한 사항

부서명	분 장 사 무
총 무 과	1. 의식행사, 의전에 관한 사항 2. 구민의 날 지원 및 구민상 포상에 관한 사항 3. 당직, 직원복무 및 청사방호(청원경찰 운영 등)에 관한 사항 4.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 5. 공무원 보수에 관한 사항 6. 직원복지회 운영에 관한 사항 7. 자녀보육료 지원에 관한 사항 8. 구내식당 운영에 관한 사항 9. 직원 휴양시설(콘도) 운영에 관한 사항 10. 상황실 운영에 관한 사항 11. 국경일 등 태극기 관리에 관한 사항 12. 직장 동호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3. 거주외국인 지원 업무 14. 직장 민방위 및 자체 예비군 운영 · 관리에 관한 사항 15.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6. 직원 및 간부공무원 비상연락(소집)에 관한 사항 17. 공무원노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8. 상용직노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9. 인사제도의 기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0. 소속 공무원의 인사,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21. 공무원 임용에 관한 사항 22. 청원경찰 임용에 관한 사항 23. 신원조사 의뢰에 관한 사항 24. 특별사법경찰관리 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25.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의 현원관리에 관한 사항 26.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훈련성적평정 및 가점평정에 관한 사항 27. 공무원 교육에 관한 사항(공무원 시책교육 포함)

부서명	분 장 사 무
총 무 과	28. 공무원 임용시험 요구, 특별임용 및 전직시험 관련 사항 29. 공무원증 발급, 재직·경력증명서 발급에 관한 사항 30. 공무원 건강진단 및 4대 보험 업무에 관한 사항 31. 공무원 비밀취급 인가에 관한 사항 32. 공무원연금에 관한 사항 33. 공무원표창에 관한 사항 34. 성과연봉 및 성과상여금 지급에 관한 사항 35.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 관한 사항 36. 선거 및 국민투표에 관한 사항 37. 사회단체 등 활성화에 관한 사항 38. 그 밖에 다른 과에 속하지 않는 사회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39. 사회단체지원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조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0. 구 행정실적 평가 관리에 관한 사항 41. 민간인 표창에 관한 사항 42. 새마을 운동조직 지원·육성에 관한 사항 43. 새마을 금고 육성에 관한 사항 44. 시장 및 구청장 초도방문에 관한 사항 45. 여론 및 동향파악에 관한 사항 46. 창안 및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47. 주요시책 및 당면사항 추진에 관한 사항 48. 명절연휴 종합대책 추진에 관한 사항 49. 북한이탈주민 보호·관리에 관한 사항 50. 행정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51. 행정서비스현장 운영에 관한 사항 52.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조사에 관한 사항 53. 과거사 진실규명에 관한 사항 54. 행정구역의 위치·명칭 및 구역조정에 관한 사항 55. 동 주민센터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56.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부서명	분 장 사 무
총 무 과	57.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58. 반상회 운영지도에 관한 사항 59. 통·반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 60. 적십자회비 모금에 관한 사항 61. 공동주택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 62. 행복마을만들기 지원에 관한 사항 63. 인권보장 및 증진관련 지원에 관한 사항 64. 그 밖에 자치행정국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부서명	분 장 사 무
안전관리과	1. 지역단위 재난예방 및 안전관리수립 집행에 관한 사항 2. 안전관리위원회 및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4. 재난대비 유관기관 협조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 5. 재난대비 훈련실시에 관한 사항 6. 재난상황종합관리 및 평시보고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7. 재난대비물자·자원·장비과약 및 재난단계 규모·유형별 동원계획 수립 운영에 관한 사항 8. 재난관리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 9. 인적재난의 사고수습에 관한 사항 10. 재난예방 특정관리대상 시설 안전관리 총괄 11. 재난예방을 위한 특별·긴급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 지도 12. 재해예방 및 재해응급대책의 추진에 관한 사항 13. 자연재난 피해조사에 관한 사항 14. 재해복구 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15. 방재계획의 수립 집행에 관한 사항 16. 재해방지를 위한 출동명령 등 행정조치에 관한 사항 17.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8.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19. 풍수해보험 가입·운영에 관한 사항 20.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 협의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21. 재해지도 제작 및 활용에 관한 사항 22. 재해발생예상시설 점검 및 조치에 관한 사항 23.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에 관한 사항 24.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사항 25. 구 산하기관(부서)의 재난관리행정에 대한 지도에 관한 사항 26. 국가기반시설 재난관리에 관한 사항 27. 안전문화 활동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28.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부서명	분 장 사 무
안전관리과	29. 재난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0. 안전점검의 날 등 행사 및 캠페인에 관한 사항 31. 유선 및 도선업무 안전관리 및 지도에 관한 사항 32. 그 밖에 재난예방행정에 관한 사항 33. 방범취약지 야간 순찰에 관한 사항 34. 재해구호에 관한 사항 35. 재해구호 물자의 출납보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6. 재난안전관리정책 총괄·조정 37. 재난안전관리 및 재해대책의 수립, 집행에 관한 사항 38. 인적·사회적재난 대응 총괄 39. 재난 매뉴얼 통합관리 40. 재난안전교육 총괄 및 훈련, 홍보 41. 안전대비 현장순찰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2. 민방위업무의 운영에 관한 사항 43. 민방위 시설장비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4. 인력동원에 관한 사항 45. 핵 및 화생방 방어에 관한 사항 46. 민방위 및 비상사태에 관한 사항 47. 충무계획 작성 및 조정통제에 관한 사항 48. 을지연습에 관한 사항 49. 인력동원 실제 훈련에 관한 사항 50. 민방위대원 교육 및 민방위훈련에 관한 사항 51. 민방위 재난 통제에 관한 사항 52. 민방위대 조직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3. 주민신고 조직 운영에 관한 사항 54. 민방위대 교육 강사에 관한 사항 55. 민방위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 56. 공익근무요원관리에 관한 사항 57. 그 밖에 민방위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

부서명	분 장 사 무
안전관리과	58. 행정정보통신시스템 종합개발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59. 행정정보통신시스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0. 행정정보통신시스템(교환기, 인터넷방송시스템, 전광판, 콜센터 등)의 통합 관리에 관한 사항 61. 방송시설 운영 및 행사(방송)지원에 관한 사항 62. 정보통신공사 사용 전 검사에 관한 사항 63. 정보통신공사 착공 전 설계검토에 관한 사항 64. 정보통신 보안업무에 관한 사항 65. 공공건축물의 설계 및 공사 감독 업무(신축, 증축, 개축, 보수 등)에 관한 사항(정보통신분야) 66. U-City건설 종합전략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67. Smart 연수 건설(U-City 건설 등)에 관한 사항 68. U-도시통합운영센터 건설에 관한 사항 69.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0. 정보통신망(유선, 무선, 센서망 등)고도화에 관한 사항 71. 인터넷전화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 72. U-Service 개발 및 서비스지원에 관한 사항 73. CCTV설치 종합계획수립 및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부서명	분 장 사 무
교육지원과	1. 교육정책에 관한 사항 2. 학교 · 지역사회 연계 교육프로그램 개발 운영 3. 지역교육사업을 위한 학교 및 교육청 업무 지원 4. 지역우수자 전형 지원에 관한 사항 5. 취학사무에 관한 사항 6. 각급 학교 표창 지원에 관한 사항 7.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및 정산에 관한 사항 8. 교육경비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9. 영어체험교실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10. 교육복지우선지역 학교 지원에 관한 사항 11. 교육국제화특구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12. 학교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 13. 우수농산물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사항 14.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15. 평생교육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16. 평생교육기관(시설)과의 프로그램운영 및 연계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17. 평생학습 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에 관한 사항 18. 평생학습도시 활성화 추진에 관한 사항 19. 평생학습관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20. 평생교육실무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21. 북카페(The Story) 운영에 관한 사항 22. 그 밖에 평생학습도시 발전과 관련한 사항

부서명	분 장 사 무
문화체육과	1. 문화예술 전반에 관한 사항 2. 연수구 예술단체 운영에 관한 사항 3. 구립예술단(관악단·합창단·풍물단) 운영에 관한 사항 4. 지명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5. 연수금요예술무대 운영에 관한 사항 6. 연수구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 7. 지역문화진흥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8. 야외음악당(문화공원) 대관 및 운영에 관한 사항 9. 종무(종교) 업무에 관한 사항 10. 연수구 갤러리 대관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1. 관광행정의 종합기획 조정에 관한 사항 12. 관광사업 등록관리(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야영업, 관광 편의시설업, 유원시설업, 기타 유원시설업) 13. 관광통계 관리 14. 공연장 등록 및 공연에 관한 사항 15. 지방문화원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16. 영화관 등록 및 상영에 관한 사항 17. 출판사 및 인쇄업 신고에 관한 사항 18. 직장운동경기부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19.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상 체육시설업 신고 등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20. 용담공원 내 씨름장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21. 스포츠바우처 사업 일반에 대한 사항 22. 생활체육 진흥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 23.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영업의 신고 등록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4.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영업의 허가·등록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5.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령에 의한 영업의 신고·등록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6. 문화재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7. 복합문화시설 건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8. 연수구 대표축제 발굴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9. 연수구 구사 편찬에 관한 사항 30. 연수구 문화예술회관 확충에 관한 사항 31. 연수구 문화의집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부서명	분 장 사 무
재무회계과	1. 회계문서 심사 및 구 사업소 동 회계문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2. 세출예산의 정리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회계관리 법규의 정비에 관한 사항 4. 원천징수금 징수 불입에 관한 사항 5. 세입세출외현금 및 유가증권의 출납보관에 관한 사항 6. 부가가치세 불입 및 세금계산서 처리에 관한 사항 7. 국비, 시비 정리에 관한 사항 8. 회계관계 직인 보관에 관한 사항 9. 회계관계 증빙서류 보관에 관한 사항 10. 구금고의 세출분야 감독에 관한 사항 11. 공사·용역·물품 등 계약에 관한 사항 12. 급여압류자 관리에 관한 사항 13. 복식부기에 관한 사항 14. 관용차량의 정수배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5. 공유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16. 물품의 취득, 보관, 사용 및 처분에 관한 사항 17. 구청사 및 동주민센터의 영선관리에 따른 설계 및 공사감독에 관한 업무 18. 구청사 및 동청사 청소에 관한 사항 19. 구 청사 시설물 유지관리(송죽원 포함) 20. 구 청사 소방에 관한 사항 21. 공용의 청사, 시설물의 신축·증축·개축·재축·대수선등에 관한 설계 및 공사시공 감독 업무에 관한 사항(경로당 포함) 22. 대강당·대회의실·예식장 대관에 관한 사항(사용신청(승인) 및 사용료부과(징수)) 23. 사무실 배치·조정에 관한 사항 24. 도시계획시설 중 공공청사부지의 매수청구에 대한 매수여부결정 및 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

부서명	분 장 사 무
세 무 과	1. 세무행정의 종합조정 및 통제에 관한 사항 2. 지방세 목표액 책정 및 전망분석에 관한 사항 3. 지방세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 4. 지방세 이의신청(심의위원회) 및 심사청구서 전달에 관한 사항 5. 지방세 운영평가 및 표창에 관한 사항 6. 납세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7. 세정자료의 조사와 세표작성 및 통계에 관한 사항 8. 과세시가 표준액 조사에 관한 사항 9. 과세대장 정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0. 지방세 징수업무의 종합조정 및 통제에 관한 사항 11. 현년도, 과년도 지방세 체납관리 및 독촉고지에 관한 사항 12. 현년도, 과년도 지방세 과오납금 및 가산금조정에 관한 사항 13. 지방세 교부청구 및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 14. 지방세 징수분야 전산화추진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15. 지방세의 수입 및 결산에 관한 사항 16. 수입금 출납사무 및 과오납금 환불에 관한 사항 17. 구금고 계약 및 수납기관 지도에 관한 사항 18. 세무에 관한 제증명 발급 및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 19. 구 자금 관리에 관한 사항 20. 세무전산화 추진운영 21. 세외수입의 총괄 관리에 관한 사항 22. 기부금품 모집 통제에 관한 사항 23. 구 수입증지에 관한 사항 24.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요율 조정에 관한 사항 25. 채권관리 및 보고에 관한 사항 26. 토지과세표준액 적용비율 결정고시에 관한 사항 27. 토지 잠정등급 발급에 관한 사항 28. 부동산 취득세 수납사항 대사에 관한 사항 29. 지방세 체납액 정리계획 수립

부서명	분 장 사 무
세 무 과	30. 현년도, 과년도 지방세 징수촉탁서 처리 및 교부청구에 관한 사항 31. 현년도, 과년도 지방세 재산압류 및 공매에 관한 사항 32. 지방세 징수 포상금에 대한 사항 33. 지방세 체납자 형사고발에 대한 사항 34. 개별주택가격조사 세부추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5. 건물현황 및 주변특성 조사에 관한 사항 36. 전산입력 및 시가산정에 관한 사항 37.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개별 통지에 관한 사항 38. 개별주택가격 관련 이의신청 접수 및 재 산정 등에 관한 사항 39. 지방소득세 부과·징수·환급 40. 지방소득세 공제·감면 41. 지방소득세 대장관리·전산시스템 운영

부서명	분 장 사 무
민원지적과	1. 각종문서 수발·분류에 관한 사항 2. 관인관수에 관한 사항 3. 민원사무(처리)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민원실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5. 민원행정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6. 민원처리 마일리지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7. 민원1회 방문처리에 관한 사항 8. 종합민원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9. 민원(방문, 전화, 인터넷) 접수 및 심사에 관한 사항 10. 어디서나 민원 처리에 관한 사항 11. “민원 24” 처리에 관한 사항 12. 민원상담 및 안내에 관한 사항 13. 친절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14. 외부고객만족(CS) 행정에 관한 사항 15. 미추홀 콜센터 연계 운영에 관한 사항 16. 기록물 관리에 관한 사항 17. 기록관리시스템 및 기록관 운영에 관한 사항 18. 행정정보공개 접수 통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9. 행정정보공동이용에 관한 사항 20. 행정간행물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1. 행정정보자료실 운영에 관한 사항 22. 기록물 열람 및 대출에 관한 사항 23. 종합문서고 관리에 관한 사항 24. 기록물 관리 업무 지도·감독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5.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에 관한 사항 26.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사항 27. 주민등록에 관한 사항 28. 행정사 업무에 관한 사항 29. 외국인 관리에 관한 사항 30. 결격사유조회에 관한 사항

부서명	분 장 사 무
민원지적과	31. 인감증명관리에 관한 사항 32. 여권발급에 관한 사항 33. 부동산중개업에 관한 사항 34. 개발이익 환수제 운영에 관한 사항 35.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36. 개발부담금 대상사업 파악에 관한 사항 37. 개발부담금 조사·산정에 관한 사항 38. 개발부담금 관련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 39.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산정에 관한 사항 40. 개별공시지가 관련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 41. 개별공시지가 전산관리에 관한 사항 42. 개별공시지가 확인원 발급에 관한 사항 43. 구 부동산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4. 지적업무의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45. 이동지 검사 및 정리에 관한 사항 46. KLIS시스템 토지이동정리 47. 토지분할 허가에 관한 사항 48. 지적복구에 관한 사항 49. 지적장비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0. 지적통계 업무에 관한 사항 51. 지적기준점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 52. 축척변경 사업에 관한 사항 53. 등록사항 정정대상 토지정리에 관한 사항 54.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관한 사항 55. 지적 및 측량에 관한 사항 56.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관한 사항 57.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에 관한 사항 58. 도로명 시설물 일제조사 및 정리 59. 도로명주소 관리시스템 운영 및 관리

부서명	분 장 사 무
민원지적과	60. 새주소 정착 및 활용 홍보 61. 도로명주소 고지·고시에 관한 사항 62. 부동산거래시스템 관리에 관한 사항 63. 부동산거래 신고서 접수에 관한 사항 64. 신고서 확인 및 신고필증 발급에 관한 사항 65. 가격적정서 진단, 세부자료입력에 관한 사항 66. 부동산 계약서 검인업무에 관한 사항 67. 부동산등기해태과태료 부과업무에 관한 사항 68. 지적공부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 69. 지적전산 및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업무에 관한 사항 70.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에 관한 사항 71. 도시계획도면 관리에 관한 사항 72. 토지대장 관리 및 발급에 관한 사항 73.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부여 및 등록증명서 발급에 관한 사항 74.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관리에 관한 사항 75. 토지거래계약 허가에 관한 사항 76. 토지거래계약허가 사후관리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77. 토지거래계약허가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사항 78. 토지거래계약허가 소송수행 및 신고포상금제 운영에 관한 사항 79. 외국인 토지취득에 관한 사항 80. 부동산 실명법에 관한 사항 81. 토지(임야)대장 소유권 정리에 관한 사항 82. 토지 소유자 주소등록에 관한 사항 83. 국가소송(미등기 토지)에 관한 사항 84. 지적정보 자료제공에 관한 사항(조상땅 찾아주기) 85.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 자료제공에 관한 사항 86. 부동산거래 과태료 부과 업무에 관한 사항

부서명	분 장 사 무
복지정책과	1.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지역사회복지사업의 기획·개발 및 시행에 관한 사항 4. 지역사회복지정보의 개발·관리에 관한 사항 5. 사회복지 시책 홍보·교육에 관한 사항 6.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의 관리에 관한 사항 7. 국가보훈단체지원·협력 및 보조 등에 관한 사항 8. 사회복지기금 운영 계획 및 결산 총괄 9. 사회복지기금 중 사회복지사업 및 장학사업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10. 사회복지 법인 관리 및 지도 감독 11. 종합사회복지관 관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2. 부랑인 및 노숙자보호에 관한 사항 13. 행려자·사망자 관리에 관한 사항 14. 차상위계층 등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15. 사회복지 업무보조 공익근무요원 관리에 관한 사항 16. 복지대상자 신규조사에 관한 사항 17. 복지대상자 확인조사 및 변동·자격관리에 관한 사항 18. 보건 및 복지서비스 연계업무에 관한 사항 19. 이웃돕기 지원 및 관리·후원 결연에 관한 사항 20. 자원봉사센터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21. 민관협력복지사업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2. 지역사회투자사업 총괄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3. 푸드뱅크 및 푸드마켓 설치·운영·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4.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 관리 25. 연수품앗이 운영 및 관리 26. 사례관리 운영 및 자원에 관한 사항 27. 희망복지 129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28. 긴급지원에 관한 사항 29.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사업 연계 30. 그 밖에 복지경제국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부서명	분 장 사 무
사회복지과	1.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기본방향 및 연간 조사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의 급여지급 관리 전반 사항 3. 복지대상자 신규신청에 따른 보장결정 및 통지에 관한 사항 4. 보장비용 및 금품의 반환·징수·감면에 관한 사항 5. 영구임대주택 입주신청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기존주택전세임대, 다가구매입임대 입주자 선정에 관한 사항 7. 전세자금 융자지원에 관한 사항 8. 차상위계층 등 보장결정 및 통지에 관한 사항 9. 차상위계층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0. 의료급여대상자 관리 및 의료급여의 실시에 관한 사항 11. 의료급여기금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12. 의료급여 대불금 및 부당이득금 채권관리에 관한 사항 13. 의료급여 진료비 지급 14. 의료급여 사후관리(본인부담금 및 환급금, 환수결정내역, 투여기간 관리, 의약품 관리)에 관한 사항 15. 의료급여 자격관리에 관한 사항 16. 의료급여 기금 특별회계 운영 17. 의료급여 사례 관리 18. 의료급여 제한 여부 조사 및 상해요인, 중복청구 조사 19. 의료급여 연장승인 및 선택병의원 관리 20. 의료급여 심의위원회 관리 21. 건강생활유지비 지원 22. 장애인보장구 지원 관리 23. 장애인복지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4.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설치허가·운영지원 및 지도에 관한 사항 25. 장애인의 고용촉진에 관한 사항 26.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7. 장애인 편의시설 건축협의를 관한 사항 28. 장애인단체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부서명	분 장 사 무
사회복지과	29.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에 관한 사항 30. 장애인 실명예방 사업에 관한 사항 31. 재가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사항 32. 장애인 고속도로 감면카드 발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3. 복지카드 교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4.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5. 노인복지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6. 고령화 대책에 관한 사항 37. 경로행사 등 경로사업의 실시 지원에 관한 사항 38. 기초노령연금 지급 사항 39. 장기요양기관 설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0. 장수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 41. 노인 건강증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2. 노인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43. 경로당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44.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5. 노인복지시설(경로당 포함) 보수에 관한 사항 46. 노인의 날 및 경로의 달 행사지원에 관한 사항 47. 노인학대예방사업에 관한 사항 48. 노인단체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49. 경로효친사상 앙양 및 노인봉양의식 제고에 관한 사항 50. 사회복지기금 중 노인복지기금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51. 장사 등에 관한 사항 52. 외국인묘지 처리(매장·개장·유실 등)에 관한 사항 53. 노인 일자리지원 정책에 관한 사항 54. 노인일자리 사업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55. 노인인력개발센터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56. 자활사업대상자 선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7. 자활사업 프로그램 실시 및 창업지원에 관한 사항

부서명	분 장 사 무
사회복지과	58. 자활공동체 인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9. 희망키움통장사업 실시에 관한 사항 60. 자활기관협의체 구성·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1. 지역자활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62. 차상위 일자리지원 사업 63. 자활장려금 지원에 관한 사항 64. 희망리본프로젝트 지원에 관한 사항 65. 사회복지기금 중 기초생활보장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 66.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 67. 가사간병방문서비스 사업에 관한 사항 68. 주거현물급여 집수리사업에 관한 사항

부서명	분 장 사 무
여성아동과	1.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설치·운영·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여성복지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여성단체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 4.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5.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 6. 여성능력개발에 관한 사항 7. 여성권익 증진 사업에 관한 사항 8. 여성발전기금에 관한 사항 9. 다문화가족 지원 및 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10. 건강가정 지원 및 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11.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12. 행복한 가정만들기 상담원 운영에 관한 사항 13. 연수구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에 관한 사항 14. 위기가족 상담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15.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 16. 저출산 대책에 관한 사항 17. 출산장려금 지원 및 다자녀가정 아동양육비 지원에 관한 사항 18. 결혼중개업 관리에 관한 사항 19. 보육사업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0. 보육시설 인가에 관한 사항 21. 보육시설 운영지원 및 관리 지도에 관한 사항 22. 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 급여지급 사항 23. 보육시설 종사자 관리에 관한 사항 24. 구립보육시설 확충에 관한 사항 25. 직장보육시설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26. 도담도담 장난감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 27. 아동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28. 아동복지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9. 아동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부서명	분 장 사 무
여성아동과	30.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급여 지급 사항 31. 시소와 그네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2. 아동복지시설의 설치·운영·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3. 아동인지능력향상사업에 관한 사항 34. 청소년 육성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5. 청소년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36. 청소년 전용시설 확충, 청소년시설 신고처리 및 위탁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37. 모범 청소년 발굴 표창에 관한 사항 38. 각종 청소년행사 개최에 관한 사항 39. 청소년 동아리 지원 육성에 관한 사항 40. 어려운 청소년보호 지원에 관한 사항 41. 청소년 진로 생활상담 지도에 관한 사항 42. 청소년보호법 관련 과징금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43. 청소년보호법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44. 청소년 유해매체물, 약물 관리에 관한 사항 45.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및 통행제한구역 지정 운영에 관한 사항 46. 청소년보호법 위반사범 관리에 관한 사항 47.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에 관한 사항 48. 그 밖에 청소년보호 및 청소년보호법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49. 청소년공부방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50. 청소년 지도자 양성 및 지도관리에 관한 사항 51. 드림스타트 사업 종합계획 수립 및 운영위원회 구성 및 관리 52. 드림스타트 사업 사례관리 및 사례회의에 관한 사항 53. 드림스타트 사업 서비스 조정·연계 및 개발 54. 드림스타트 사업수행기관 및 협력·후원기관 선정 및 관리 55. 드림스타트 센터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56. 드림스타트 사업 관련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7. 드림스타트 사업 민간 전문인력 관리 및 슈퍼비전 체계 운영

부서명	분 장 사 무
경제지원과	1. 지역경제 육성 세부계획의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2. 수출 진흥에 관한 사무에 관한 사항 3. 지역산업에 관한 통계의 작성 유지 및 보급에 관한 사항 4. 지역산품 전시회 개최 및 구매자 유치지원에 관한 사항 5. 소비자보호에 관한 사항 6. 지역물가 종합대책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7. 방문·통신·전화권유 판매업에 관한 업무 8. 지역특화산업 육성개발계획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9. 지역경제 육성을 위한 자금 세제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10. 어선등록 및 변경신청 등에 관한 사항 11. 주민 지역경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12. 농업행정의 종합 및 조정에 관한 사항 13. 농업단체 지도육성에 관한 사항 14. 양정에 관한 사항 15. 원예 및 특용작물에 관한 사무에 관한 사항 16. 농림 축 수산물 생산지원 및 관리지도에 관한 사항 17. 농산물 생산기반 조성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18. 도시텃밭 등 농업 운영에 관한 사항 19. 양식사업 및 어업기반 조성을 위한 지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0. 식량작물 생산 장려에 관한 사항 21. 농작물 병충해방제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2. 농지원부 작성 및 교부에 관한 사항 23. 농지전용에 관한 사항 24. 농지타용도 일시 사용에 관한 사항 25. 농지보전부담금 부과 및 징수 관리에 관한 사항 26. 자경증명발급 신청에 관한 사항 27. 식생활교육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8.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9. 어선표지판 교부 신청에 관한 사항 30. 어업허가 신청 및 어업폐지 신고에 관한 사항

부서명	분 장 사 무
경제지원과	31. 어선등록말소 신청 및 어업휴업 신고에 관한 사항 32. 어업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에 관한 사항 33. 선박원부등본 교부에 관한 사항 34. 수산물 원산지 표시지도에 관한 사항 35. 어선 건·개조 발주에 관한 사항 36. 낚시어업신고에 관한 사항 37. 축산업 등록제에 관한 사항 38. 축산진흥 지방특화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39. 축산물 유통개선 지도에 관한 사항 40. 축산물 등급제 지도에 관한 사항 41. 농·축·수산물 직거래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2. 축산물보관업 허가에 관한 사항 43. 축산물 운반업, 판매업 신고에 관한 사항 44. 축산식품 행정의 종합기획 조정에 관한 사항 45. 축산물 보관업, 운반업, 판매업의 지도관리에 관한 사항 46. 축산물 위생관리 지도에 관한 사항 47. 유기동물 보호·처리에 관한 사항 48. 동물등록제에 관한 사항 49. 경지이용계획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50. 농업자재의 관리에 관한 사항 51. 농수산물 가공공장의 지정에 관한 사항 52. 농가부업 장려계획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53. 국유재산에 관한 사항 54. 수출농식품 지원에 관한 사항 55. 시장개설 등록 및 변경신청 등에 관한 사항 56. 가격표시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57.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지도에 관한 사항 58. 대형 농·수산물 유통센터 지원에 관한 사항 59. 농·수·축산물 가격동향 관리에 관한 사항

부서명	분 장 사 무
경제지원과	60. 농·수·축산물 직거래에 관한 사항 61. 대부업 등록 및 변경등록에 관한 사항 62. 대부업 관리 지도에 관한 사항 63. 부정경쟁 방지업무 관리 지도에 관한 사항 64. 복권업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65. 개인서비스업 품목가격조사 및 관리지도에 관한 사항 66. 개인서비스업 조사원 관리에 관한 사항 67. 재래시장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68. 상권활성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9. 지역중소상인 지원에 관한 사항 70. 상점가 진흥조합 관리 지도에 관한 사항 71. 유통상생협력지원에 관한 사항 72.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 73.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관한 사항 74. 석유사업법에 관한 사항 75.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임에 관한 사항 76. 석유사업법 위임에 관한 사항 77.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위임에 관한 사항 78. 민관 공동출자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79. 계량기에 관한 사무에 관한 사항 80. 가격표시제 실시업소 지정 관리에 관한 사항 81. 기계 및 섬유공업 지도육성에 관한 사항 82. 지역 상공단체의 지도 육성에 관한 사항 83. 유통산업 근대화 사업의 시행 및 지원에 관한 사항 84. 민속공예산업 육성 실시계획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85. 우수토산품 등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 86. 공예품 등 전문 생산업체 지원에 관한 사항 87. 토산품 등 생산기술 전승자의 발굴 보호에 관한 사항 88. 지방공업육성을 위한 종합기획 조정에 관한 사항

부서명	분 장 사 무
경제지원과	89. 공장등록 및 제증명에 관한 사항 90. 공장설립 승인에 관한 사항 91. 공산품 안전관리법에 관한 사항 92. 지역산업 발전을 위한 공장유치에 관한 사항 93. 그 밖에 상공에 관한 사무에 관한 사항 94. 가스안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95. 가스안전점검,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96.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관한 사항 97.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관한 사항 98. 도시가스사업법에 관한 사항 99. 도시가스사업법 위임에 관한 사항 100.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위임에 관한 사항 101. 신재생에너지사업에 관한 사항 102.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103. 불법공산품 지도·단속 및 원산지표시관련 업무 104.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관한 다음의 사항 가. 개선·과기·수거명령 및 언론매체 등을 통한 공표교환 환불 수리 등의 명령 나. 보고 및 검사 등 다. 과태료 부과·징수 105. 중소기업 창업지도에 관한 사항 106. 승강기에 관한 사항 107.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위임에 관한 사항 108. 신용보증재단 출연에 관한 사항 109. 공공기관 법인카드 적립포인트 관리 110. 유료광고 조례에 관한 사항 111. 담배 도매인 지정 및 폐업에 관한 사항 112. 노·사·정 협의회에 관한 사항 113. 노동행정의 계획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부서명	분 장 사 무
경제지원과	114. 노동단체의 지도육성에 관한 사항 115. 근로자 복지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116. 노동대책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117. 중소기업기본법에 관한 사항 118. 창업 민원실 운영에 관한 사항 119. 지역 내 기업의 정보 기술 및 자금수요파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20. 지방중소기업 육성지원 세부계획의 수립 추진에 관한 사항 121. 당해지역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에 관한 사항 122. 중소기업 육성보조금 교부에 관한 사항 123.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에 관한 사항 124. 지방 기업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부서명	분 장 사 무
일자리창출과	1. 일자리 창출 지원 정책에 관한 사항 2.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시책 개발 3. 지역브랜드 일자리 창출 시책 개발 4. 지역고용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맞춤형 직업훈련 개발에 관한 사항 6. 기업연계형 인력지원에 관한 사항 7. 연수일자리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8.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에 관한 사항 9.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관리에 관한 사항 10.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지원업무에 관한 사항 11. 고용 정책 사업에 관한 사항 12. 공공근로 및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관한 사항 13. 취업정보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14. 구인·구직의 개척 및 취업알선에 관한 사항 15. 구인·구직 등록 및 상담에 관한 사항 16. 구인·구직 만남의 날(취업박람회)에 관한 사항 17. 무허가 직업소개 행위단속에 관한 사항 18. 직업안내소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19. 유·무료 직업소개사업 허가에 관한 사항 20. 직업소개 사업자 및 업무보조원의 교양 및 훈련에 관한 사항 21. 사회적기업 육성·지원 정책에 관한 사항 22. 사회적기업 교육 및 홍보사업 23. 사회적기업 네트워크 구축 및 연계사업 24. 사회적기업 생산품 우선 구매 25. 협동조합 제도 홍보에 관한 사항 26. 마을기업 육성사업 발굴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7. 마을기업 육성사업 홍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부서명	분 장 사 무
청소행정과	1. 폐기물처리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도로환경미화원 관리에 관한 사항 3. 청소장비 관리에 관한 사항 4.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5. 폐기물처리업 허가(변경)·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6. 폐기물수집·운반증 발급에 관한 사항 7. 폐기물 종량제에 관한 사항 8. 청소대행업체 지도·점검·평가에 관한 사항 9. 폐기물적환장에 관한 사항 10. 폐기물 처리시설 반입료 및 전반적인 관련 사항 11. 청소대행업체 대행계약 및 대행료 지급에 관한 사항 12. 폐기물배출사업장 관리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13.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에 관한 사항 14.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신고에 관한 사항 15. 지정폐기물(의료폐기물 포함) 기본적 처리증명 16. 폐기물 배출사업장 지도점검·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17. 종량제봉투·대형폐기물처리 전반에 관한 사항 18. 자원재활용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9. 폐기물감량 및 자원재활용에 관한 사항 20. 폐기물 처리신고의 수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1. 그 밖에 재활용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22.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 사업 23. 음식물류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관리 및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24. 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 수수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25. 1회용품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26. 나눔장터 운영에 관한 사항 27. 포장폐기물 발생억제에 관한 사항 28. 재활용센터 관리 29. 빈용기보증금제도 관련 사항

부서명	분 장 사 무
청소행정과	30.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단속·신고포상금에 관한 사항 31. 환경(청소)순찰 및 처리에 관한 사항 32.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 등에 관한 사항 33. 처리업체 지도점검·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부서명	분 장 사 무
위생관리과	1. 공중위생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공중위생법 관련 조례개정에 관한 사항 3. 공중위생업소(이·미용, 숙박, 목욕 등) 신고 및 변경신고에 관한 사항 4. 공중위생관련업(위생처리업, 위생관리용역업 등) 신고 및 변경사항에 관한 사항 5. 공중위생업소 교육에 관한 사항 6. 공중·식품위생단체 관리에 관한 사항 7. 이·미용사 면허증 교부 및 재교부에 관한 사항 8. 공중이용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9. 식품위생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0. 식품위생법 관련 조례개정에 관한 사항 11. 유흥 및 단란주점 허가 및 변경허가에 관한 사항 12. 식품(식품첨가물)제조·가공업 등록 및 변경등록에 관한 사항 13. 식품접객업 신고 및 변경신고에 관한 사항 14. 식품관련업 지위승계에 관한 사항 15.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신고 및 변경신고에 관한 사항 16. 식품품목보고(변경포함)에 관한 사항 17. 식품소분업·판매업·용기·포장류 제조업 신고 및 변경신고에 관한 사항 18.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신고 및 변경신고에 관한 사항 19. 집단급식소 및 위탁급식업 신고 및 변경신고에 관한 사항 20. 식품위생업소 교육에 관한 사항 21. 조리사 면허증 교부 및 재교부에 관한 사항 22. 식품동원(충무계획)업무에 관한 사항 23. 음식문화 개선사업(특색음식거리 지정, 맛있는 집 선정 등)에 관한 사항 24. 좋은 식단 보급 및 홍보에 관한 사항 25. 모범음식점 육성 및 지도관리에 관한 사항 26. 식품진흥기금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7. 위생감시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8. 공중·식품접객업소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부서명	분 장 사 무
위생관리과	29. 공중·식품 무허가(무신고)업소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30. 지도단속 관련 신고, 진정 등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 31. 식품소분·판매업소(자동판매기, 기타식품판매업 등)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32. 공중위생업소 등급선정에 관한 사항 33.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명예공중위생감시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4. 공중·식품분야 사법경찰관리 직무집행에 관한 사항 35. 공중·식품 위생업소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에 관한 사항 36. 공중·식품 위생업소 특정관리 대상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37. 음식점 원산지 표시 단속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삭제) 38. 공중 및 식품접객업소내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39. 유통식품관리(식품제조가공업 등)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0. 부정불량식품 단속·수거·압류 및 폐기에 관한 사항 41. 집단식중독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2. 1399 민원신고 처리에 관한 사항 43. 집단급식소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44. 식품제조가공업소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45.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46. 건강기능식품판매업소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47.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관리에 관한 사항 48. 고열량, 저영양 식품관리 등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법에 관한 사항 49. 부정불량식품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50. 유전자재조합식품 지도단속 및 수거·압류·폐기 등에 관한 사항 51. 식품안전성검사 주민청구제 및 이물 민원신고 조사에 관한 사항 52. 식품생산자실명제 추진에 관한 사항 53. HACCP(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지정업소 관리에 관한 사항 54. 식품제조업소 위생등급 설정관리에 관한 사항 55. 재래시장 위생관리사업에 관한 사항 56.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부서명	분 장 사 무
건 설 과	1. 건설행정의 종합 및 기획에 관한 사항 2. 국·공유재산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 도로·하천·구거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4. 건설기계조종사 면허관리에 관한 사항 5. 건설기계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건설기계 대여업 관리에 관한 사항 7. 공유수면 관리에 관한 사항 8. 전문건설업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 시설동원(일반토지, 건설업체, 중기정비업체)에 관한 사항 10.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사항 11.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계약, 지출에 관한 사항 12. 노점상 단속 및 정비에 관한 사항 13. 노상적치물 단속 및 정비에 관한 사항 14. 도로 및 건설공사 계획수립 (도로폭 20미터 이하)에 관한 사항 15. 토목, 건설공사의 시행 및 유지관리(도로폭 20미터 이하)에 관한 사항 16. 20미터 이하 도로의 노선인정과 폐지변경에 관한 사항 17. 20미터 이하 도로 노면 및 전체도로 시설물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18. 도로의 안내표지판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19. 도로의 안내표지판 설치에 관한 사항 20. GIS 공간정보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21. 사도 개설허가에 관한 사항 22. 도시계획시설중 도로의 매수청구에 대한 매수여부 결정 및 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 23. 지하차도(보도포함)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24. 보행자전용도로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25. 도로관리심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26. 도로굴착 및 복구에 관한 사항 27. 공동구 관리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28. 공동구 설치 및 점용료 등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부서명	분 장 사 무
건 설 과	29. 공동구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 30. 도로 및 가로정비(도로제설포함)에 관한 사항 31. 건설공사용 자재 및 기구 출납보관에 관한 사항 32.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공사설계 시공감독에 관한 사항 33. 공공하수도설치, 개축 및 수선공사에 관한 사항 34. 간이 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5. 하수종별 책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6. 하수 수질검사에 관한 사항 37. 하수사용 계량기 설치 및 교체에 관한 사항 38. 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 및 집계에 관한 사항 39. 지하수 개발에 관한 사항 40. 지하수 계측기 설치 및 교체에 관한 사항 41. 배수설비설치신고 및 준공검사에 관한 사항 42. 하천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43. 자전거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4. 자전거이용시설(자전거도로 등)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45. 자전거이용활성화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46. 자전거 행사에 관한 사항 47. 자전거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8. 자전거수리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49. 무단방치자전거 정비 및 처리에 관한 사항 50. 그 밖에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51. 도로조명 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52. 지하차도 전기시설물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53. 보도육교 전기시설물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54. 전기사업법에 관한 사항 55. 전기공사사업법에 관한 사항 56.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57. 도시환경국 타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부서명	분 장 사 무
건 축 과	1. 건축물 등기필 정리에 관한 사항 2. 건축물관리대장 관리·말소 및 공용발급에 관한 사항 3. 건축물대장 전산화에 관한 사항 4. 무허가 건축물 단속 및 철거에 관한 사항 5. 가설건축물 허가 및 신고수리에 관한 사항(개발제한구역 포함) 6. 건축신고 및 사용승인에 관한 사항(개발제한구역 포함) 7. 항측 업무에 관한 사항 8. 위법건물 이행강제금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9. 주차장법 위반 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사항 10. 건축물 철거·멸실 신고에 관한 사항 11. 건축행정의 종합조정에 관한 사항 12.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에 관한 사항(개발제한구역 포함) 13. 건축시공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14. 건축물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15. 건축사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16. 냉방시설 및 환기시설의 배기구 점검에 관한 사항 17. 옹벽 및 공작물 축조 신고에 관한 사항 18. 주택행정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1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에 따른 주택 재건축·재개발에 관한 사항 20. 시설(건물, 토지)동원에 관한 사항 21. 아파트의 하자보수에 관한 사항 22. 아파트 관리주체에 대한 감독에 관한 사항 23. 공동주택 사업계획승인 및 사용검사에 관한 사항 24. 공동주택 분양승인에 관한 사항 25. 공동주택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 26. 공동주택 관리실태 지도·점검 27. 공동주택 분쟁조정 및 민원처리 28. 공동주택 계약업무 관련 법률자문 29. 공동주택 내 공사관련 사업비 적정성 자문

부서명	분 장 사 무
건 축 과	30. 임대사업자 등록 및 등록사항 변경에 관한 사항 31. 임대주택 분양전환허가 및 매각신고에 관한사항 32. 도시형생활주택 건설에 관한 사항 33. 공동주택 유지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 34. 임대사업자 등록 및 등록사항 변경에 관한 사항 35. 도시기반시설부담금 부과·징수와 관련한 사항 36.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점검 사항 37. 전문가와 함께하는 건축행정서비스에 관한 사항 38. 건축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39. 간단한 도면 대행 서비스에 관한 사항 40.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정정에 관한 사항 41. 공동주택 하자보수증권 관리에 관한 사항 42. 아파트부설주차장 개방지원에 관한 사항 43. 원도심 지원사업 발굴 및 저층주거지 관리사업

부서명	분 장 사 무
도시계획과	1. 옥외광고물 종합계획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2. 옥외광고물 신고 및 허가에 관한 사항 3. 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 실시 및 위탁에 관한 사항 4. 옥외광고업의 신고 및 지도, 관리에 관한 사항 5. 옥외광고업 등록업체 관리에 관한 사항 6.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에 관한 사항 7. 옥외광고물 심의에 관한 사항 8. 현수막 게시대 및 게시판 설치, 관리 감독에 관한 사항 9. 불법 유동광고물 단속에 관한 사항 10. 불법 고정광고물 정비에 관한 사항 11. 옥외광고물 전수조사에 관한 사항 12. 옥외광고물 위반에 관한 사항 13. 옥외광고물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 14. 도시경관사업에 관한 사항 15. 도시정비사업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16. 도시영세민 주거환경 개선사업 기본계획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17.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18. 개발행위 허가에 관한 사항 19.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포함) 20.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 총괄관리에 관한 사항 21.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사항 22. 도시개발 특별회계에 관한 사항 23. 환지 증명원(예정지, 확정) 발급에 관한 사항 24.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 등에 관한 사항 25.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 26.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의 예방 및 단속에 관한 사항 27.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 등에 관한 사항 28. 기타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사항 29. 온천 개발에 관한 사항

부서명	분 장 사 무
환경보전과	1. 환경보전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환경영향평가 및 사전환경성 검토 주민의견 수렴 등에 관한 사항 3. 환경오염특별대책지역내의토지이용 및 시설제한에 관한 사항 4. 환경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5. 환경보전유공자포상계획수립 6.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7. 먹는물 공동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8.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 설치신고 및 변경에 관한 사항 9. 토양오염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10. 휘발성 유기오염물질·기타수질오염원의 신고 및 변경에 관한 사항 11. 잔류성유기오염물질배출시설 및 관리대상기기의 신고에 관한 사항 12. 대기 배출원 및 전국 오염원 조사에 관한 사항 13. 대기, 폐수, 소음 배출시설의 허가·신고 및 변경에 관한 사항 14. 배출업소 가동개시 신고에 관한 사항 15. 한강중역권 물관리에 관한 사항 16. 교통소음·진동규제지역내의 방음·방진 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 17. 유해화학물질 영업등록 및 변경에 관한 사항 18. 저수조청소업 신고 및 변경에 관한 사항 19. 중수도 등에 관한 사항 20. 환경기술인 및 다중이용시설 법정교육에 관한 사항 21. 습지관리보호지역에 관한 사항(내륙·연안 포함) 22. 오존주의보 발령 및 해제에 관한 업무에 관한 사항 23. 수렵면허에 관한 사항 24. 야생동·식물 보호 및 자연보호에 관한 사항 25. 정부비축물자 관리에 관한 사항 26.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7. 기후변화대응 및 저탄소 녹색성장 일반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28. 기후변화대응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29. 저탄소 녹색성장 및 녹색생활 실천·행사 추진에 관한 사항

부서명	분 장 사 무
환경보전과	30. 저탄소 녹색통장(탄소포인트)갓기 추진에 관한 사항 31.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 및 녹색생활 업무에 관한 사항 32. 온실가스 배출량 조사 등 인벤토리 구축에 관한 사항 33. 녹색생활 확산 및 시민실천 정착화 업무에 관한 사항 34. 탄소발자국 우수아파트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35. 탄소배출권 거래 사업 본격추진에 관한 사항 36.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사항에 관한 사항 37. 대기, 폐수, 소음 배출시설의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38. 대기, 폐수, 소음 배출시설의 부과금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 39. 절수설비 설치에 관한 사항 40. 무허가·신고 배출업소 행정처분 사항 41. 비산먼지 및 특정공사 사전신고 및 변경에 관한 사항 42. 비산먼지 사업장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43. 생활소음, 생활악취 지도단속 업무에 관한 사항 44. 자동차배출가스 단속 및 행정처분 사항 45. 운행차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사항 46. 특정경유자동차 검사에 관한 사항 47. 자동차정밀검사 체납 과태료 징수·결손 처분에 관한 사항 48. 유해화학물질등록업체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49.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50. 저수조 청소업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51. 휘발성 유기오염물질·기타수질오염원의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52. 잔류성유기오염물질배출시설 및 관리대상기기의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53. 다중이용시설 검사에 관한 사항 54. 유증기 회수시설 설치 및 보조금 지급에 관한 사항 55. 환경오염신고 “128 환경신문고” 운영에 관한 사항 56. 환경오염사고 대비에 관한 사항

부서명	분 장 사 무
환경보전과	57. 악취, 먼지, 오존 등 상황실 운영에 관한 사항 58. 환경사범 수사 및 송치에 관한 사항 59. 대기·수질 TMS구축 및 사업장 관리에 관한 사항 60. 민간 환경감시단 업무에 관한 사항 61.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 지정 및 단속에 관한 사항 62. 환경생태탐방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63. 폐석면 관리 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64. 석면피해구제에 관한 사항 65. 무인악취포집기 운영 등 관리에 관한 사항 66.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사항 67. 악취배출사업장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68.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69. 분뇨 등 관련 영업허가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70.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 71. 개인하수처리시설 등 설계·시공업 및 관리업에 관한 사항 72.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운영에 관한 사항 73.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사항 74. 빗물이용시설의 설치·관리 75.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계·시공업의 등록 76. 연수의제21실천협의회 추진에 관한 사항 77. GCF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사항

부서명	분 장 사 무
공원녹지과	1. 녹지행정의 종합계획 수립 및 조성에 관한 사항 2. 영림계획의 인가, 변경명령 및 사업신고 수리에 관한 사항 3. 조림사업 추진 및 육림관리에 관한 사항 4. 산불방지 대책 및 입산통제구역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 5. 산림병충해 방제에 관한 사항 6. 천연림 보육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7. 임목벌채 등 산림훼손 허가와 신고수리에 관한 사항 8. 산지전용 허가와 신고수리에 관한 사항 9. 산림보호에 관한 사항 10. 입산신고에 관한 사항 11. 지역 공동산화경방활동에 관한 사항 12. 부정임산물 단속 등 임산물 반·출입 통제에 관한 사항 13. 녹지대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4. 가로수 식재 보호에 관한 사항 15. 사망사업에 관한 사항 16. 도시녹화 추진계획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17. 구 단위 도시녹화 추진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18. 도시녹화 추진 기술지도 및 묘목, 자재 등 확보 공급에 관한 사항 19. 산림동원에 관한 사항 20. 보행자전용도로의 수목과 시설물에 관한 사항 21. 미관광장의 수목과 시설물에 관한 사항 22. 시민참여 녹화사업 및 푸른 마을 가꾸기 사업에 관한 사항 23. 마을쉼터 조성 및 담장 허물고 나무심기 사업에 관한 사항 24. 학교 주변 녹화추진에 관한 사항 25. 교통섬 녹화 및 가로녹지 조성에 관한 사항 26. 도시림 조성 및 관리 27. 도시계획시설(도시공원, 녹지)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8.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의 관리의 위탁

부서명	분 장 사 무
공원녹지과	29. 도시공원, 녹지의 사용 및 점용허가 및 원상회복에 관한 사항 30. 도시공원 및 녹지의 입장료, 사용료, 점용료 및 관리위탁료 징수에 관한 사항 31. 녹지활용계약 및 녹화계약 32. 도시공원 및 녹지 협의 관련 사항 3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령 등의 위반자 처분에 관한 사항 (단, 미조성 도시공원 및 녹지내 불법 건축물의 경우 건축법에 의해 처리 되어야할 부분은 제외한다.) 34. 도시공원, 녹지 GIS(지리정보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35. 도시공원 및 녹지의 설치에 관한사항 36. 공원 재조성(리모델링)에 관한 사항 37. 공원내 체육시설의 설치·개보수(증축)·변경, 리모델링,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 38. 도시공원, 녹지 채권 발행에 관한 사항 39. 미조성 도시공원, 녹지의 매수청구에 관한 사항 40. 미조성 도시공원, 녹지의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사항 41. 도시공원 조성계획의 입안(도시자연공원 제외) 42. 도시공원 및 녹지의 관리에 관한사항 43. 도시자연공원구역내 행위허가 44. 도시공원에 설치된 어린이놀이기구 안전관리사무(어린이놀이기구 안전관리법) 45.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령에 의한 공익을 위한 감독처분 및 손실보상 46. 도시공원대장 및 도시자연공원구역대장 작성 및 관리 47.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령 등의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48. 도시공원 및 녹지 공원 등 전기업무에 전반에 관한 사항 49. 공유재산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50.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원화장실 관리 51. 도시공원 및 녹지내 수경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부서명	분 장 사 무
공원녹지과	52. 소나무류의 이동에 따른 허가와 신고 수리에 관한 사항 53. 연수둘레길 조성·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54. 등산로 정비·보수·관리에 관한 사항 55. 산림의 생태적 복원에 관한 사항 56. 산림유전자원보호림 등의 관리 57. 보안림의 지정, 지정해제, 지정의 고시, 관리에 관한 사항 58. 도시계획시설(공원: 묘지공원 제외, 녹지, 일반·경관 광장)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신청 59. 도시공원위원회 심의안건 제출 60.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6조 기준 도시자연공원에 관한 경과조치에 의거 신규로 증가된 근린공원 종합계획 및 공원조성, 관리에 관한 사항 61. 아암도 해안공원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부서명	분 장 사 무
교통행정과	1. 교통행정 종합계획 수립 2. 교통체계관리(TSM) 추진 3. 교통관련 소규모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4.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5.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사항 6. 교통안전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7. 공영(노상·노외) 주차장 관리에 관한 사항 8. 민영주차장 설치 신고처리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9. 공영주차장 설치 및 시설물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10. 장·단기 주차시설 확충계획 투자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 11. 거주자 우선주차제에 관한 사항 12. 이면도로 주차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13. 도시계획시설 중 주차장의 매수청구에 대한 매수여부 결정 및 사업시행에 관한 사항 14. 기계식주차장 설치에 따른 건축협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5. 교통영향평가 업무에 관한 사항 16. 건축물부설주차장 개방지원에 관한 사항 17.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 업무에 관한 사항 18.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및 개선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19.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 20. 차 없는 거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사항 22. 여객자동차 터미널에 관한 사항 23.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관한 사항 24. 교통불편신고 처리에 관한 사항 25. 교통량 조사에 관한 사항 26. 화물자동차 운송 주선사업에 관한 사항 27.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에 관한 사항

부서명	분 장 사 무
교통행정과	28.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차량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29. 자동차 대여사업에 관한 사항 30. 자동차 점검 및 정비명령 등(사업용자동차 지도점검 제외) 31. 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 행위단속 및 조치(고발, 정비명령)에 관한 사항 32. 법령위반 차량 과태료 처분에 관한 사항 33. 불법개조 자동차에 대한 원상복구 및 고발에 관한 사항 34. 의무보험 미가입자 가입촉구 및 가입사실 증명 서류 제출에 관한 사항 35. 질서위반 행위규제법 제16조 규정에 이한 의견 제출 통보 및 과태료 감경 부과에 관한 사항 36.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48조 제3항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징수 37. 자동차 강제처리에 관한 사항 38. 자동차관리사업(매매업·정비업·해체재활용업) 관리 39. Green Parking 사업에 관한 사항 40.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범칙금 및 검찰 송치에 관한 사항 41. 무단방치 자동차 범칙금 및 검찰 송치에 관한 사항 42. 무단방치 자동차 처리 43. 불법 주·정차 단속 및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44. 시간제 계약직·교통서포터즈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45. 고정형·차량형 CCTV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46 온라인 교통불편민원 상담 47. 주정차위반 단속상황실 운영에 관한 사항 48. 견인사업소 지정·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49. 자동차 등록번호판 교부대행자에 대한 지정 취소 및 사업정지 명령에 관한 사항 50. 자동차 등록 원부 비치 관리에 관한 사항 51. 신규등록 거부에 관한 사항 52. 자동차등록 번호판 탈·부착 및 봉인에 관한 사항

부서명	분 장 사 무
교통행정과	53. 자동차등록번호 부여에 관한 사항 54. 자동차 임시운행 허가에 관한 사항 55. 자동차등록 이의신청 처리에 관한 사항 56. 자동차 검사, 자동차 점검에 관한 사항 57. 자동차등록 관련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58. 자동차 멸실 인정서 발급에 관한 사항 59. 자동차 변경등록 · 이전등록 · 말소등록에 관한 사항 60. 자동차 신규등록 61. 자동차 등록증 교부 62. 자동차 경정등록 63. 자동차 저장권 변경 · 등록 · 말소 64. 자동차 등록번호판 교부대행자 지정에 관한 사항 65. 자동차 검사 명령에 관한 사항 66. 이륜자동차 사용정지 명령에 관한 사항 67. 이륜자동차 관리에 관한 사항 68. (과년도) 체납 책임보험 과태료 징수,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 69. (과년도) 체납 주정차과태료 과태료 징수,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 70. (과년도) 체납 검사지연 등록지연 과태료 징수,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 71. 위 68. 69. 70.호와 관련한 압류·해제 72. 자동차 과태료 관련 압류 및 해제등록

직속기관(보건소) 사무분장표 (제11조 관련)

부서명		분 장 사 무
보 건 소	보 건 행 정 과	1. 공인관리 2. 당직근무 및 소내의 복무관리 3.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에 관한 사항 4. 전임계약직 고용에 관한 사항 5. 도시보건지소에 관한 사항 6. 청사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7. 예산운영, 공사도급, 용역, 물품계약에 관한 사항 8.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9. 지역보건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0. 물품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 11. 사회복지요원 관리에 관한 사항 12. 일상경비 교부에 관한 사항 13. 보건소 대강당, 프로그램실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 14.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에 관한 사항 15. 전임계약직,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관한 사항 16. 회계관계 증빙서류 관리에 관한 사항 17. 보건통합정보시스템 관리에 관한 사항 18. 차량 및 전산 관리 19. 민원서류의 접수 통제에 관한 사항 20. 보건사업 통합평가 관리에 관한 사항 21. 각종문서 수발 및 분류에 관한 사항 22. 진단서 및 제증명 발급 23. 일반진료(양·한방, 방사선, 물리치료)에 관한 사항 24. 진료비청구 및 기타 수가의 징수 25. 노인장기요양보험청구에 관한 사항 26. 방사선 검사에 관한 사항(골다공증, X-Ray 등) 27. 한의약공공보건사업에 관한 사항 28. 물리치료사업에 관한 사항

부서명		분 장 사 무
보건소	보건행정과	29. 휠체어 대여사업에 관한 사항 30. 의료법에 의한 개설허가(신고), 신고사항 변경신고처리 및 지도감독 31. 약사법에 의한 개설등록(변경신고)처리 및 지도감독 32. 마약류 관리에 관한 사항 33. 의료기기판매업 신고(변경신고)처리 및 지도감독 34. 안경업소, 치과기공소 신고(변경신고)처리 및 지도감독 35. 안마시술소 개설신고(변경신고)처리 및 지도감독 36. 진단용방사선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37. 응급의료에 관한 사항 38. 지역보건법에 의한 건강진단 등 신고 처리 및 지도감독 39. 명절연휴 진료대책에 관한 사항 40.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에 관한 사항 41. 구강보건실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42. 치과진료에 관한 사항 43. 노인의치보철사업에 관한 사항 44. 학교구강보건실 운영에 관한 사항 45. 생애주기별 구강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6. 소독업소 신고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 47. 감염병관리대책수립 및 예방 홍보 사업 48. 레지오넬라증 관리에 관한 사항 49. 생물테러 대비 및 대응 대책 수립 50. 에이즈 등 성매개감염병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51. 해외유입감염병 추적조사에 관한 사항(SARS, AI 등) 52. 표본감시의료기관에 관한 사항 53. 방역소독업무에 관한 사항 54. 방역 소독 약품 및 기자재 관리 55. 소독의무대상 시설에 관한 사항 56. 감염병 등 검사에 관한 사항 57. 식중독 검사에 관한 사항 58. 집단급식시설 보균검사에 관한 사항 59. 결핵 예방 및 치료에 관한 사항 60.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관리에 관한 사항 61. 한센병 관리에 관한 사항 62. 생화학 검사 등에 관한 사항

부서명		분 장 사 무
보건소	건강증진과	1. 통합건강증진사업 계획 및 수립에 관한사항 2. 일상경비 지출 및 공인관리에 관한 사항 3. 예산편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일상경비 증빙서류 보관에 관한 사항 5.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고용 · 관리에 관한 사항 6.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관한 사항 7. 문서수발 및 분류에 관한 사항 8.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항 9. 차량관리에 관한 사항 10. 건강도시에 관한 업무 11. 건강증진서비스분야 ISO9001인증에 관한 사항 12. 건강관리버스 운영에 관한 사항 13. 건강생활실천사업 운영에 관한사항 14. 건강생활실천사업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15. 체력측정실 운영에 관한 사항 16. 체력단련실 및 운동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17. 연수구 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 과태료부과에 관한 사항 18. 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9. 금연클리닉 운영에 관한 사항 20. 간접흡연예방에 관한 사항 21. 금연법령이행실태 지도 및 점검에 관한 사항 22. 금연구역지정 관리에 관한 사항 23. 흡연자의 금연지원에 관한 사항 24.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의 과태료부과에 관한 사항 25. 알코올상담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26. 알코올 사회복귀이용시설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 27. 알코올 사회복귀주거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부서명		분 장 사 무
보건소	건강증진과	28. 정신보건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29. 정신건강증진센터 위탁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30. 중증정신질환자 등록관리에 관한 사항 31. 아동청소년 및 지역주민 정신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32. 자살예방관리에 관한 사항 33. 치매보호센터 위탁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34. 치매상담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35. 치매조기검진관리에 관한 사항 36. 치매치료관리비지원에 관한 사항 37. 치매통합관리센터 위탁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38. 임신부 등록관리에 관한 사항 39. 난임부부 관리에 관한 사항 40.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에 관한 사항 41. 임신부 및 영유아 교육에 관한 사항 42.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사항 43. 모유수유 장려에 관한 사항 44. 영유아 등록 관리에 관한 사항 45.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등록 관리 및 의료비지원에 관한 사항 46. 산후조리원 신고 처리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47. 영유아 건강검진 사업에 관한사항 48. 발달장애 정밀 진단비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49. 취학전 아동 실명예방 사업에 관한 사항 50. 선천성대사이상질환 조기발견 및 등록관리에 관한 사항 51. 영양플러스 사업에 관한 사항 52. 신생아 난청조기검진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 53. 성교육 및 성상담사업에 관한사항 54. 방문건강관리사업 자원봉사자 활동 관리에 관한 사항

부서명		분 장 사 무
보건소	건강증진과	55. 심·뇌혈관 질환 조기발견사업에 관한 사항 56. 심·뇌혈관 질환 예방·홍보에 관한 사항 57. 고혈압, 당뇨병 예방관리 상설교실 운영에 관한 사항 58. 방문건강관리 대상자 신규등록을 위한 기초조사에 관한 사항 69. 방문보건대상자 보건소 내·외 연계서비스 제공관련 사항 60. 지역사회 건강조사 사업에 관한 사항 61. 재가암 관리에 관한 사항 62. 국가암조기검진사업에 관한 사항 63.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사업에 관한 사항 64.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65. 암환자의료비지원에 관한 사항 66.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 사업에 관한 사항 67. 영유아 국가필수 예방접종에 관한 사항 68. 성인 B형간염 예방접종에 관한 사항 69.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 관한사항 70. 폐렴구균 예방접종에 관한 사항 71. 만 12세 아동 일본뇌염 및 Td 예방접종에 관한 사항 72. 필수예방접종비용 국가부담사업에 관한 사항 73. 의료기관 필수예방접종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74. B형간염 주산기 감염 예방사업에 관한 사항

부서명		분 장 사 무
보 건 소	송 도 보 건 지 소	1. 문서수발 및 공인관리 2. 당직근무명령 및 복무관리 3. 예산·회계관리 4. 차량 및 청사관리 5. 의료장비 등 비품 및 소모품 관리 6. 예방접종 예진 및 만성질환자 1차 진료 7. 만성질환사업에 관한 사항 8. 방문보건사업에 관한 사항 9. 지역사회 보건서비스 연계사업에 관한 사항 10. 물리치료 및 재활보건사업에 관한 사항 11. 건강생활실천사업에 관한 사항 12. 예방접종사업에 관한 사항 13.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사항 14. 감염병 및 성인병 검사 등에 관한 사항 15. 보건통계 및 교육 홍보 16. 기간제근로자 고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7. 기타 지역주민의 보건의료 향상 및 건강증진사업

사업소 사무 분장표(제13조 관련)

부서명	분 장 사 무
연수 청학도서관	1. 도서관 조성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2. 도서관 발전 계획 및 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 3. 작은도서관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4. 독서문화진흥 사업에 관한 사항 가. 독서문화 프로그램 및 행사 개발·기획·운영 나. 도서관 견학 및 이용교육 다. 독서대회, 전시회, 강연회 운영 등 5. 타 도서관 교류 및 상호협력에 관한 사항 6. 도서관 홍보에 관한 사항 7. 도서관 장서 및 이용 통계에 관한 사항 8. 도서관 평가와 개선에 관한 사항 9. 도서관 자원봉사자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10. 보조인력 교육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1. 도서관 예산 및 회계 처리에 관한 사항 12. 도서관 업무 관련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3. 시설 및 재산·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14. 도서관 시설물 대관에 관한 사항 15. 자료 선정(구입, 기증) 및 수집, 정리에 관한 사항 16. 자료의 제적 및 폐기, 이관에 관한 사항 17. 자료의 수리 및 배가, 장서점검에 관한 사항 18. 자료의 대출 및 반납에 관한 사항 19. 신착·희망·예약·연체·분실 자료관리에 관한 사항

부서명	분 장 사 무
연수 청학도서관	20. 도서 상호대차 및 순회문고 운영에 관한 사항 21. 통합도서서비스 운영에 관한 사항 22. 독서회원 관리에 관한 사항 23. 도서관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사항 24. 도서관 운영 관련 장비 및 SW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25. 도서관 서버 및 네트워크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26. 도서관 전산 보안에 관한 사항 27. 도서관 공인 관리에 관한 사항 28. 도서관 당직근무 및 도서관 내의 복무관리 29. 도서관관련 사무의 보조금 교부 및 결정통지, 감독 등에 관한 사항 30. 무기계약, 기간제근로자 채용·관리에 관한 사항 31. 시간제계약직공무원 관리에 관한 사항 32. 도서관 청사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33. 도서관 예산운영, 공사도급, 운영, 물품계약에 관한 사항 34. 무기계약 및 시간제계약직, 기간제근로자의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에 관한 사항 35. 도서관 소관 차량 및 전산관리에 관한 사항 36. 사립 공공도서관의 등록·변경등록·폐관에 관한 사항

하부기관(동 주민센터) 사무분장표 (제15조 관련)

부서명	분 장 사 무
동 주민센터	1. 소속직원의 인사·복무에 관한 사항 2. 직인 및 문서관리에 관한 사항 3. 보안업무 및 비밀문서 관리에 관한 사항 4. 청사관리 및 당직에 관한 사항 5. 통·반 구역확정 및 통·반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 6.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7. 예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8. 주민등록 및 인감에 관한 사항 9. 민방위대 운영에 관한 사항 10. 제증명신고 사실 확인 및 증명의 경유에 관한 사항 11. 물품의 출납 및 보관에 관한 사항 12. 동 재산 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3. 법령 기타 공지사항의 공시 및 동민 여론조사 처리에 관한 사항 14. 취학아동 사무에 관한 사항 15. 국민기초생활보장에 관한 사항 16.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아동복지, 한부모 복지에 관한 사항 17. 환경미화원 복무관리에 관한 사항 18. 가족관계등록부 발급에 관한 사항 19. 어디서나 민원처리제에 관한 사항 20. 각종 시책추진에 관한 사항 21.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22. 그 밖에 구청장으로부터 위임된 사무 및 지시사항

【별표 5】

동장 직렬 및 직명 (제14조 관련)

직 명	직 렬
옥련1동장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옥련2동장	지방행정사무관
선 학 동 장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연수1동장	지방행정사무관
연수2동장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
연수3동장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
청 학 동 장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동춘1동장	지방행정사무관
동춘2동장	지방행정사무관
동춘3동장	지방행정사무관
송 도 1 동 장	지방행정사무관
송 도 2 동 장	지방행정사무관
송 도 3 동 장	지방행정사무관

인천광역시연수구훈령(발령)

제 명	주 요 내 용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공무원 정 원규정 일부개 정규정	☐ 개정 이유 ○ 민선6기 출범에 따른 조직개편에 따라 부서별 인력재배치를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 내용 ○ 부서별 정원 현황							
	구 분	변경전	변경후	증감	구 분	변경전	변경후	증감
	총 계	664	665		재무회계과	19	21	2
	구 본 청	457	459		세 무 과	45	44	△1
	창조전략기획단		5	5	민원지적과	32	32	
	기획예산실	17	17		복지정책과	36	35	△1
	감 사 실	8	7	△1	사회복지과	19	19	
	홍보미디어실	14	14		여성아동과	19	19	
	규제개혁추진단	4	4		경제지원과	11	12	1
	총 무 과	24	24		일자리창출과	8	9	1
	안전관리과	15	17	2	청소행정과	14	14	
	교육지원과	11	11		위생관리과	15	15	
	문화체육과	15	16	1	건 설 과	29	27	△2
	건 축 과	18	19	1	옥 련 2 동	10	10	
	도시계획과	14	14		선 학 동	12	12	
	환경보전과	20	18	△2	연 수 1 동	11	11	
	공원녹지과	17	15	△2	연 수 2 동	12	12	
	교통행정과	33	31	△2	연 수 3 동	11	11	
	의회사무국	16	16		청 학 동	12	12	
	보 건 소	48	47		동 춘 1 동	9	9	
	보건행정과	26	25		동 춘 2 동	9	9	
	건강증진과	15	15		동 춘 3 동	8	8	
	송도보건지소	7	7		송 도 1 동	9	9	
	연수청학도서관	13	13		송 도 2 동	9	9	
	동 소 계	130	130		송 도 3 동	8	8	
	옥 련 1 동	10	10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공무원정원규정 일부개정규정을 이에 발령한다.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이재호

2015. 1. 1.

인천광역시연수구 훈령 제 260 호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공무원정원규정 일부개정규정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공무원정원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 별표2, 별표3, 별표4, 별표5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구 본청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정원제2조제1항 관련)

부 서	직 종	직 급	정 원	직 렬
합 계			459	
창조전략 기획단	계		5	
	일반직	소계	5	
		5급	1	행정1
		6급	3	행정1, 시설1, 행정·시설1
		8급	1	행정1
기획·예산· 시설	계		17	
	일반직	소계	17	
		5급	1	행정1
		6급	6	행정6
		7급	7	행정7
		8급	3	행정2, 전산1
		9급	-	
감 사 실	계		7	
	일반직	소계	7	
		5급	1	행정1(개방1)
		6급	3	행정3
		7급	3	행정2, 시설1
		8급		
		9급		
홍보·미디어· 시설	계		14	
	일반직	소계	14	
		5급	1	행정1
		6급	4	행정1, 전산1, 사무운영1, 행정·전산1
		7급	6	행정2, 전산4
		8급	3	행정1, 전산2
		9급		

부서명	직종	직급	정원	직 렬
규제개혁 추진단	계		4	
	일반직	소계	4	
		6급	1	행정1
		7급	2	행정2
		8급	1	행정1
총 무 과	계		24	
	정무직		1	구청장1
	일반직	소계	22	
		3급	1	행정1
		4급	1	행정1
		5급	1	행정1
		6급	6	행정5, 운전1
		7급	8	행정7, 사무운영1
		8급	4	행정4
		9급	1	행정1
	별정직	소계	1	
		8급상당	1	비서요원1
안 전 관 리 과	계		17	
	일반직	소계	17	
		5급	1	행정·시설1
		6급	4	행정1, 행정·시설2, 행정·방송통신1
		7급	5	행정1, 시설2, 방송통신 2
		8급	7	행정1, 전산1, 공업1, 시설1, 방송통신2, 사무운영1
교 육 지 원 과	계		11	
	일반직	소계	11	
		5급	1	행정1
		6급	3	행정3
		7급	3	행정3
		8급	4	행정4(임기제 1명 포함)
		9급		

부서명	직종	직급	정원	직 렬
문화체육과	계		16	
	일반직	소계	16	
		5급	1	행정1
		6급	4	행정4
		7급	5	행정3, 공업1, 운전1
		8급	5	행정5
		9급	1	행정1
재무회계과	계		21	
	일반직	소계	21	
		5급	1	행정1
		6급	4	행정2, 운전1, 시설·공업1
		7급	11	행정3, 공업1, 전산1, 시설2, 운전3, 사무운영1
		8급	5	행정2, 공업1, 운전2
		9급		
세무과	계		44	
	일반직	소계	44	
		5급	1	행정1
		6급	9	세무6, 행정·세무3
		7급	18	세무18
		8급	13	행정2, 전산1, 세무8, 행정·세무2
		9급	3	행정·세무2, 세무1
민원지적과	계		32	
	일반직	소계	32	
		5급	1	행정·시설1
		6급	6	행정3, 시설1, 행정·시설2
		7급	10	행정6(임기제 1명 포함), 시설4
		8급	14	행정6, 시설6, 전산1, 운전1
		9급	1	행정1

부서명	직종	직급	정원	직 렬
복지정책과	계		35	
	일반직	소계	35	
		4급	1	행정1
		5급	1	행정·사회복지1
		6급	6	행정1, 사회복지3, 행정·사회복지2
		7급	12	행정3, 사회복지9
		8급	12	행정4, 사회복지5, 행정·사회복지3
		9급	3	사회복지2, 행정·사회복지1
사회복지과	계		19	
	일반직	소계	19	
		5급	1	행정·사회복지1
		6급	4	행정3, 행정·사회복지1
		7급	5	행정2, 사회복지2, 행정·사회복지1
		8급	5	행정4, 행정·사회복지1
		9급	4	사회복지3, 행정·사회복지1
여성아동과	계		19	
	일반직	소계	19	
		5급	1	행정·사회복지1
		6급	5	행정·사회복지4, 사무운영1
		7급	5	행정2, 사회복지2, 행정·사회복지1
		8급	6	행정3, 행정·사회복지2, 보건1
		9급	2	사회복지1, 행정·사회복지1

부서명	직종	직급	정원	직 렬
경제지원과	계		12	
	일반직	소계	12	
		5급	1	행정1
		6급	3	행정2, 공업1
		7급	3	행정1, 공업2
		8급	4	행정2, 공업2
		9급	1	행정·공업1
일자리창출과	계		9	
	일반직	소계	9	
		5급	1	행정1
		6급	3	행정3
		7급	3	행정3
		8급	2	행정2
		9급		
청소행정과	계		14	
	일반직	소계	14	
		5급	1	행정·보건·환경1
		6급	3	행정2, 행정·환경1
		7급	7	행정2, 환경2, 운전1, 행정·환경1, 사무운영1
		8급	2	행정1, 환경1
		9급	1	행정1

부서명	직종	직급	정원	직 렬
위생관리과	계		15	
	일반직	소계	15	
		5급	1	행정·보건1
		6급	4	보건3, 행정·보건1
		7급	4	보건4
		8급	3	보건2, 행정·보건1
		9급	3	보건1, 행정·보건2
건설과	계		27	
	일반직	소계	27	
		4급	1	기술1
		5급	1	행정·시설1
		6급	6	행정2, 시설2, 기계운영1, 공업·시설1
		7급	11	행정2, 공업2, 시설4, 운전1, 기계운영2
		8급	7	공업2, 시설5
		9급	1	운전1
건축과	계		19	
	일반직	소계	19	
		5급	1	행정·시설1
		6급	5	시설4, 행정·시설1
		7급	5	시설4, 기계운영1
		8급	6	행정1, 시설5
		9급	2	시설2

부서명	직종	직급	정원	직렬
도시계획과	계		14	
	일반직	소계	14	
		5급	1	행정·시설1
		6급	4	행정1, 시설2, 사무운영1
		7급	6	행정1, 공업1, 시설4,
		8급	3	행정1, 시설2
		9급		
환경보건과	계		18	
	일반직	소계	18	
		5급	1	행정·보건·환경1
		6급	6	환경1, 행정·환경3, 행정·공업1, 사무운영1
		7급	4	환경3, 행정·환경1
		8급	5	환경2, 행정·환경3
		9급	2	행정1, 환경1
공원녹지과	계		15	
	일반직	소계	15	
		5급	1	행정·녹지·시설1
		6급	3	녹지3
		7급	4	녹지3, 공업1
		8급	6	행정1, 공업1, 녹지3, 시설·녹지1
		9급	1	녹지1
교통행정과	계		31	
	일반직	소계	31	
		5급	1	행정1
		6급	6	행정4, 시설1, 행정·공업1
		7급	10	행정4, 세무2, 사무운영3, 행정·세무1
		8급	13	행정9, 공업1, 시설2, 운전1
		9급	1	행정1

[별표 2]

의회사무기구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제2조제2항 관련)

부 서	직 종	직 급	정 원	직 렬
의 회	계		16	
	일반직	소계	16	
		4급	1	행정1
		5 급	2	행정2
		6 급	4	행정4
		7 급	4	행정3, 운전1
		8급	5	행정3, 속기1, 사무운영1

직속기관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 (제2조제3항 관련)

부서명	직종	직급	정원	직렬
보건소			47	
보건행정과	계		25	
	일반직	소계	25	
		4급	1	기술1
		5급	4	의무3(임기제), 행정·보건1
		6급	5	행정·보건1, 의료기술1(임기제), 보건·약무·간호1, 보건·간호·의료기술2
		7급	9	보건3, 보건·약무·의료기술1, 의료기술3, 간호2
		8급	6	행정1, 보건1, 의료기술2, 운전2
		9급		
건강증진과	계		15	
	일반직	소계	15	
		5급	1	보건·간호·약무·의료기술1
		6급	5	보건1, 간호1, 보건·의료기술1, 약무·간호1, 보건·간호1
		7급	5	간호4, 보건1
		8급	3	보건2, 간호1
		9급	1	운전1
송도보건지소	계		7	
	일반직	소계	7	
		5급	2	의무1(임기제), 보건·간호·약무·의료기술1
		6급	2	보건1, 간호1,
		7급	2	의료기술1, 보건·간호·의료기술1
		8급	1	행정1
		9급		

사업소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제2조제4항 관련)

부 서	직 종	직 급	정 원	직 렬
도서관	계		13	
	일반직	소계	13	
		5 급	1	행정·사서1
		6 급	3	행정·사서1, 행정·시설1, 행정1
		7 급	4	행정2, 전산1, 사서1
		8 급	4	행정1, 사서1, 공업1, 행정·사서1
		9 급	1	사서1

동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제2조 5항 관련)

동 명	직종	직급	정원	직렬
합계			130	
옥련 1 동	계		10	
	일반직	소계	10	
		5급	1	행정·시설1
		6급	1	행정1
		7급	3	행정2, 사회복지1
		8급	4	행정3, 사회복지1,
		9급	1	행정1
옥련 2 동	계		10	
	일반직	소계	10	
		5급	1	행정1
		6급	1	행정1
		7급	3	행정2, 사회복지1
		8급	4	행정3, 사회복지1
		9급	1	행정1
선학 동	계		12	
	일반직	소계	12	
		5급	1	행정·사회복지·시설1
		6급	2	행정1 행정·사회복지1
		7급	3	행정2, 사회복지1
		8급	3	행정2, 사무운영1
		9급	3	행정1, 사회복지1, 행정·사회복지1
연수 1 동	계		11	
	일반직	소계	11	
		5급	1	행정1
		6급	1	행정1
		7급	5	행정3, 사회복지2
		8급	3	행정2, 사회복지1
		9급	1	행정1

동 명	직종	직급	정원	직렬
연수 2 동	계		12	
	일반직	소계	12	
		5급	1	행정·사회복지1
		6급	2	행정1 행정·사회복지1
		7급	3	행정2, 사회복지1
		8급	3	행정3
		9급	3	행정1, 사회복지1 행정·사회복지1
연수 3 동	계		11	
	일반직	소계	11	
		5급	1	행정·사회복지1
		6급	2	행정1 행정·사회복지1
		7급	3	행정2, 사회복지1
		8급	2	행정2
		9급	3	행정1, 사회복지1 행정·사회복지1
청 학 동	계		12	
	일반직	소계	12	
		5급	1	행정·시설1
		6급	1	행정1
		7급	3	행정2, 사회복지1
		8급	4	행정2, 행정·사회복지2
		9급	3	행정2, 행정·사회복지1
동춘 1 동	계		9	
	일반직	소계	9	
		5급	1	행정1
		6급	1	행정1
		7급	3	행정2, 사회복지1
		8급	4	행정3, 행정·사회복지1
		9급		

동 명	직종	직급	정원	직 렬
동춘 2 동	계		9	
	일반직	소계	9	
		5급	1	행정1
		6급	1	행정1
		7급	2	행정2
		8급	4	행정2, 사회복지1, 행정· 사회복지1
		9급	1	행정1
동춘 3 동	계		8	
	일반직	소계	8	
		5급	1	행정1
		6급	1	행정1
		7급	3	행정2, 사회복지1
		8급	2	행정2,
		9급	1	행정1
송도 1 동	계		9	
	일반직	소계	9	
		5급	1	행정1
		6급	1	행정1
		7급	2	행정2
		8급	3	행정2, 사회복지1
		9급	2	행정1, 사회복지1
송도 2 동	계		9	
	일반직	소계	9	
		5급	1	행정1
		6급	1	행정1
		7급	2	행정2
		8급	3	행정1, 사회복지2
		9급	2	행정2
송도 3 동	계		8	
	일반직	소계	8	
		5급	1	행정1
		6급	1	행정1
		7급	2	행정2
		8급	3	행정2, 사회복지1
		9급	1	행정1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별표 1] 구 본청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 (정원제2조제1항 관련)					[별표 1] 구 본청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 (정원제2조제1항 관련)				
부서	직종	직급	정원	직렬	부서	직종	직급	정원	직렬
합계			457		합계			459	
창조전략기획단	계				창조전략기획단	계		5	
	일반직	소계				일반직	소계	5	
		5급					5급	1	행정1
		6급					6급	3	행정1, 시설1, 행정·시설1
		8급					8급	1	행정1
기획예산실	계		17		기획예산실	계		17	
	일반직	소계	17			일반직	소계	17	
		5급	1	행정1			5급	1	행정1
		6급	6	행정6			6급	6	행정6
		7급	7	행정7			7급	7	행정7
		8급	3	행정2, 전산1			8급	3	행정2, 전산1
감사실	계		8		감사실	계		7	
	일반직	소계	8			일반직	소계	7	
		5급	1	행정1(개방1)			5급	1	행정1(개방1)
		6급	4	행정3, 행정·시설1			6급	3	행정3
		7급	3	행정3			7급	3	행정2, 시설1
		8급					8급		
홍보미디어실	계		14		홍보미디어실	계		14	
	일반직	소계	14			일반직	소계	14	
		5급	1	행정1			5급	1	행정1
		6급	4	행정1, 전산1, 사무운영1, 행정·전산1			6급	4	행정1, 전산1, 사무운영1, 행정·전산1
		7급	5	행정1, 전산4			7급	6	행정2, 전산4
		8급	4	행정1, 전산2, 사무운영1			8급	3	행정1, 전산2
		9급					9급		

현행					개정안				
부서	직종	직급	정원	직렬	부서	직종	직급	정원	직렬
규제개혁추진단	계		4		규제개혁추진단	계		4	
	일반직	소계	4			일반직	소계	4	
		6급	1	행정1			6급	1	행정1
		7급	2	행정2			7급	2	행정2
		8급	1	행정1			8급	1	행정1
총무과	계		24		총무과	계		24	
	정무직		1	구청장1		정무직		1	구청장1
	일반직	소계	22			일반직	소계	22	
		3급	1	행정1			3급	1	행정1
		4급	1	행정1			4급	1	행정1
		5급	1	행정1			5급	1	행정1
		6급	6	행정5, 운전1			6급	6	행정5, 운전1
		7급	8	행정7, 사무운영1			7급	8	행정7, 사무운영1
		8급	4	행정4			8급	4	행정4
		9급	1	행정1			9급	1	행정1
	별정직	소계	1			별정직	소계	1	
		8급상당	1	비서요원1			8급상당	1	비서요원1
안전관리과	계		15		안전관리과	계		17	
	일반직	소계	15			일반직	소계	17	
		5급	1	행정1			5급	1	행정·시설1
		6급	3	행정1, 시설1, 행정·방송통신1			6급	4	행정1, 행정·시설2, 행정·방송통신1
		7급	6	행정1, 공업1, 시설2, 방송통신2			7급	5	행정1, 시설2, 방송통신2
		8급	5	전산1, 공업1, 시설1, 방송통신2			8급	7	행정1, 전산1, 공업1, 시설1, 방송통신2, 사무운영1
		9급					9급		
교육지원과	계		11		교육지원과	계		11	
	일반직	소계	11			일반직	소계	11	
		5급	1	행정1			5급	1	행정1
		6급	3	행정3			6급	3	행정3
		7급	3	행정3			7급	3	행정3
		8급	4	행정4(임기제 1명 포함)			8급	4	행정4(임기제 1명 포함)
		9급					9급		

현행					개정안				
부서	직종	직급	정원	직 렬	부서	직종	직급	정원	직 렬
문화체육과	계		15		문화체육과	계		16	
	일반직	소계	15			일반직	소계	16	
		5급	1	행정1			5급	1	행정1
		6급	5	행정5			6급	4	행정4
		7급	4	행정3, 운전1			7급	5	행정3, 공업1, 운전1
		8급	4	행정4			8급	5	행정5
		9급	1	행정1			9급	1	행정1
재무회계과	계		19		재무회계과	계		21	
	일반직	소계	19			일반직	소계	21	
		5급	1	행정1			5급	1	행정1
		6급	5	행정3, 운전1, 시설·공업1			6급	4	행정2, 운전1, 시설·공업1
		7급	11	행정3, 공업1, 전산1, 시설3, 운전2, 사무운영1			7급	11	행정3, 공업1, 전산1, 시설2, 운전3, 사무운영1
		8급	2	행정1, 공업1			8급	5	행정2, 공업1, 운전2
		9급					9급		
세무과	계		45		세무과	계		44	
	일반직	소계	45			일반직	소계	44	
		5급	1	행정1			5급	1	행정1
		6급	10	세무6, 행정·세무3, 사무운영1			6급	9	세무6, 행정·세무3
		7급	18	세무18			7급	18	세무18
		8급	13	행정2, 전산1, 세무8, 행정·세무2			8급	13	행정2, 전산1, 세무8, 행정·세무2
		9급	3	행정·세무2, 세무1			9급	3	행정·세무2, 세무1
민원지적과	계		32		민원지적과	계		32	
	일반직	소계	32			일반직	소계	32	
		5급	1	행정·시설1			5급	1	행정·시설1
		6급	6	행정4, 시설1, 행정·시설1			6급	6	행정3, 시설1, 행정·시설2
		7급	10	행정6(임기제 1명 포함), 시설4			7급	10	행정6(임기제 1명 포함), 시설4
		8급	14	행정6, 시설6, 전산1, 운전1			8급	14	행정6, 시설6, 전산1, 운전1
		9급	1	행정1			9급	1	행정1

현행					개정안				
부서	직종	직급	정원	직렬	부서	직종	직급	정원	직렬
복지정책과	계		36		복지정책과	계		35	
	일반직	소계	36			일반직	소계	35	
		4급	1	행정1			4급	1	행정1
		5급	1	행정1			5급	1	행정·사회복지1
		6급	6	행정1, 사회복지3, 행정·사회복지2			6급	6	행정1, 사회복지3, 행정·사회복지2
		7급	13	행정3, 사회복지9, 운전1			7급	12	행정3, 사회복지9
		8급	12	행정4, 사회복지5, 행정·사회복지3			8급	12	행정4, 사회복지5, 행정·사회복지3
		9급	3	사회복지2, 행정·사회복지1			9급	3	사회복지2, 행정·사회복지1
사회복지과	계		19		사회복지과	계		19	
	일반직	소계	19			일반직	소계	19	
		5급	1	행정·사회복지1			5급	1	행정·사회복지1
		6급	4	행정3, 행정·사회복지1			6급	4	행정3, 행정·사회복지1
		7급	6	행정2, 사회복지3, 행정·사회복지1			7급	5	행정2, 사회복지2, 행정·사회복지1
		8급	4	행정3, 행정·사회복지1			8급	5	행정4, 행정·사회복지1
		9급	4	사회복지3, 행정·사회복지1			9급	4	사회복지3, 행정·사회복지1
가정복지과	계		19		여성아동과	계		19	
	일반직	소계	19			일반직	소계	19	
		5급	1	행정·사회복지1			5급	1	행정·사회복지1
		6급	4	행정·사회복지4			6급	5	행정·사회복지4, 사무운영1
		7급	6	행정2, 사회복지2, 사무운영1, 행정·사회복지1			7급	5	행정2, 사회복지2, 행정·사회복지1
		8급	6	행정3, 행정·사회복지2, 보건1			8급	6	행정3, 행정·사회복지2, 보건1
		9급	2	사회복지1, 행정·사회복지1			9급	2	사회복지1, 행정·사회복지1

현행					개정안				
부서	직종	직급	정원	직 렬	부서	직종	직급	정원	직 렬
지역경제과	계		11		경제지원과	계		12	
	일반직	소계	11			일반직	소계	12	
		5급	1	행정1			5급	1	행정1
		6급	3	행정2, 공업1			6급	3	행정2, 공업1
		7급	3	행정1, 공업2			7급	3	행정1, 공업2
		8급	3	행정1, 공업2			8급	4	행정2, 공업2
		9급	1	행정·공업1			9급	1	행정·공업1
일자리창출과	계		8		일자리창출과	계		9	
	일반직	소계	8			일반직	소계	9	
		5급	1	행정1			5급	1	행정1
		6급	3	행정3			6급	3	행정3
		7급	2	행정2			7급	3	행정3
		8급	2	행정2			8급	2	행정2
		9급					9급		
청소행정과	계		14		청소행정과	계		14	
	일반직	소계	14			일반직	소계	14	
		5급	1	행정·환경1			5급	1	행정·보건·환경1
		6급	3	행정2, 행정·환경1			6급	3	행정2, 행정·환경1
		7급	6	행정2, 환경2, 운전1, 행정·환경1			7급	7	행정2, 환경2, 운전1, 행정·환경1, 사무운영1
		8급	3	행정1, 환경1, 사무운영1			8급	2	행정1, 환경1
		9급	1	행정1			9급	1	행정1

현행					개정안				
부서	직종	직급	정원	직 렬	부서	직종	직급	정원	직 렬
위생관리과	계		15		위생관리과	계		15	
	일반직	소계	15			일반직	소계	15	
		5급	1	행정·보건1			5급	1	행정·보건1
		6급	4	보건3, 행정·보건1			6급	4	보건3, 행정·보건1
		7급	4	보건4			7급	4	보건4
		8급	3	보건2, 행정·보건1			8급	3	보건2, 행정·보건1
		9급	3	보건1, 행정·보건2			9급	3	보건1, 행정·보건2
건설과	계		29		건설과	계		27	
	일반직	소계	29			일반직	소계	27	
		4급	1	기술1			4급	1	기술1
		5급	1	시설1			5급	1	행정·시설1
		6급	7	행정2, 시설3, 기계운영1, 시설·공업1			6급	6	행정2, 시설2, 기계운영1, 공업·시설1
		7급	12	행정2, 시설5, 공업1, 운전1, 전기운영1, 기계운영2			7급	11	행정2, 공업2, 시설4, 운전1, 기계운영2
		8급	7	시설5, 공업2			8급	7	공업2, 시설5
건축과	계		18		건축과	계		19	
	일반직	소계	18			일반직	소계	19	
		5급	1	시설1			5급	1	행정·시설1
		6급	5	행정·시설1, 시설3, 사무운영1			6급	5	시설4, 행정·시설1
		7급	5	시설3, 기계운영1, 사무운영1			7급	5	시설4, 기계운영1
		8급	5	시설5,			8급	6	행정1, 시설5
		9급	2	시설2			9급	2	시설2

현행					개정안				
부서	직종	직급	정원	직 렬	부서	직종	직급	정원	직 렬
도시계획과	계		14		도시계획과	계		14	
	일반직	소계	14			일반직	소계	14	
		5급	1	행정·시설1			5급	1	행정·시설1
		6급	3	행정1, 시설2			6급	4	행정1, 시설2, 사무운영1
		7급	6	행정1, 시설4, 공업1			7급	6	행정1, 공업1, 시설4,
		8급	4	행정1, 시설2, 사무운영1			8급	3	행정1, 시설2
		9급					9급		
환경보전과	계		20		환경보전과	계		18	
	일반직	소계	20			일반직	소계	18	
		5급	1	행정·환경1			5급	1	행정·보건·환경1
		6급	5	환경1, 행정·환경3, 행정·공업1			6급	6	환경1, 행정·환경3, 행정·공업1, 사무운영1
		7급	4	환경3, 행정·환경1			7급	4	환경3, 행정·환경1
		8급	8	행정2, 환경2, 사무운영1, 행정·환경3			8급	5	환경2, 행정·환경3
		9급	2	행정1, 환경1			9급	2	행정1, 환경1
공원녹지과	계		17		공원녹지과	계		15	
	일반직	소계	17			일반직	소계	15	
		5급	1	행정·녹지1			5급	1	행정·녹지·시설1
		6급	3	녹지2, 시설·녹지1			6급	3	녹지3
		7급	4	녹지3, 공업1			7급	4	녹지3, 공업1
		8급	8	행정1, 녹지3, 시설·녹지1, 공업1, 방호1, 운전1			8급	6	행정1, 공업1, 녹지3, 시설·녹지1
		9급	1	녹지1			9급	1	녹지1
교통행정 + 차량민과	계		33		교통행정과	계		31	
	일반직	소계	33			일반직	소계	31	
		5급	2	행정2			5급	1	행정1
		6급	6	행정4, 시설1, 행정·공업1			6급	6	행정4, 시설1, 행정·공업1
		7급	9	행정4, 세무2, 사무운영2, 행정·세무1			7급	10	행정4, 세무2, 사무운영3, 행정·세무1
		8급	14	행정10, 공업1, 시설2, 운전1			8급	13	행정9, 공업1, 시설2, 운전1
		9급	2	행정1, 사무운영1			9급	1	행정1

현행					개정안				
[별표 2] 의회사무기구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 (제2조제2항 관련)					[별표 2] 의회사무기구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 (제2조제2항 관련)				
부서	직종	직급	정원	직렬	부서	직종	직급	정원	직렬
의회	계		16		의회	계		16	
	일반직	소계	16			일반직	소계	16	
		4급	1	행정1			4급	1	행정1
		5 급	2	행정2			5 급	2	행정2
		6 급	4	행정4			6 급	4	행정4
		7 급	5	행정4, 운전1			7 급	4	행정3, 운전1
		8급	4	행정4			8급	5	행정3, 속기1, 사무운영1

현행					개정안				
[별표 3] 직속기관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 (제2조제3항 관련)					[별표 3] 직속기관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 (제2조제3항 관련)				
부서	직종	직급	정원	직렬	부서	직종	직급	정원	직렬
보건소			48		보건소			47	
보건행정과	계		26		보건행정과	계		25	
	일반직	소계	26			일반직	소계	25	
		4급	1	기술1			4급	1	기술1
		5급	4	의무3(임기제), 행정·보건1			5급	4	의무3(임기제), 행정·보건1
		6급	5	행정·보건1, 의료기술1 (임기제), 보건·약무·간호1, 보건·간호·의료기술2			6급	5	행정·보건1, 의료기술1 (임기제), 보건·약무·간호1, 보건·간호·의료기술2
		7급	9	보건3, 보건·약무·의료기술1, 의료기술3, 간호2			7급	9	보건3, 보건·약무·의료기술1, 의료기술3, 간호2
		8급	7	행정1, 보건1, 의료기술2, 운전3			8급	6	행정1, 보건1, 의료기술2, 운전2
		9급					9급		
건강증진과	계		15		건강증진과	계		15	
	일반직	소계	15			일반직	소계	15	
		5급	1	보건·간호·약무·의료기술1			5급	1	보건·간호·약무·의료기술1
		6급	5	보건1, 간호1, 보건·의료기술1, 약무·간호1, 보건·간호1			6급	5	보건1, 간호1, 보건·의료기술1, 약무·간호1, 보건·간호1
		7급	5	간호4, 보건1			7급	5	간호4, 보건1
		8급	3	보건2, 간호1			8급	3	보건2, 간호1
		9급	1	운전1			9급	1	운전1
송도보건지소	계		7		송도보건지소	계		7	
	일반직	소계	7			일반직	소계	7	
		5급	2	의무1(임기제), 보건·간호·약무·의료기술1			5급	2	의무1(임기제), 보건·간호·약무·의료기술1
		6급	2	보건1, 간호1,			6급	2	보건1, 간호1,
		7급	2	의료기술1, 보건·간호·의료기술1			7급	2	의료기술1, 보건·간호·의료기술1
		8급	1	행정1			8급	1	행정1
		9급					9급		

현행					개정안				
[별표 4] 사업소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 (제2조제4항 관련)					[별표 4] 사업소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 (제2조제4항 관련)				
부서	직종	직급	정원	직렬	부서	직종	직급	정원	직렬
도서관	계			13	도서관	계		13	
	일반직	소계	13			일반직	소계	13	
		5급	1	행정·사서1			5급	1	행정·사서1
		6급	3	행정·사서1, 행정·시설1, 행정1			6급	3	행정·사서1, 행정·시설1, 행정1
		7급	5	행정3, 전산1, 사서1,			7급	5	행정3, 전산1, 사서1,
		8급	3	사서1, 공업1, 행정·사서1			8급	3	사서1, 공업1, 행정·사서1
		9급	1	사서1			9급	1	사서1

현행					개정안				
[별표 5] 동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 (제2조 5항 관련)					[별표 5] 동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 (제2조 5항 관련)				
동명	직종	직급	정원	직렬	동명	직종	직급	정원	직렬
합계			130		합계			130	
옥련 1 동	계		10		옥련 1 동	계		10	
	일반직	소계	10			일반직	소계	10	
		5급	1	행정·시설1			5급	1	행정·시설1
		6급	1	행정1			6급	1	행정1
		7급	3	행정2, 사회복지1			7급	3	행정2, 사회복지1
		8급	4	행정2, 사회복지1, 사무운영1			8급	4	행정3, 사회복지1,
		9급	1	행정1			9급	1	행정1
옥련 2 동	계		10		옥련 2 동	계		10	
	일반직	소계	10			일반직	소계	10	
		5급	1	행정1			5급	1	행정1
		6급	1	행정1			6급	1	행정1
		7급	3	행정2, 사회복지1			7급	3	행정2, 사회복지1
		8급	4	행정3, 사회복지1			8급	4	행정3, 사회복지1
		9급	1	행정1			9급	1	행정1
선학동	계		12		선학동	계		12	
	일반직	소계	12			일반직	소계	12	
		5급	1	행정1			5급	1	행정·사회복지·시설1
		6급	2	행정1 행정·사회복지1			6급	2	행정1 행정·사회복지1
		7급	3	행정2, 사회복지1			7급	3	행정2, 사회복지1
		8급	3	행정2, 사무운영1			8급	3	행정2, 사무운영1
		9급	3	행정1, 사회복지1, 행정·사회복지1			9급	3	행정1, 사회복지1, 행정·사회복지1
연수 1 동	계		11		연수 1 동	계		11	
	일반직	소계	11			일반직	소계	11	
		5급	1	행정1			5급	1	행정1
		6급	1	행정1			6급	1	행정1
		7급	5	행정2, 사회복지2, 사무운영1			7급	5	행정3, 사회복지2
		8급	3	행정3			8급	3	행정2, 사회복지1
		9급	1	행정1			9급	1	행정1

현행					개정안				
동명	직종	직급	정원	직 렬	동명	직종	직급	정원	직 렬
연수 2 동	계		12		연수 2 동	계		12	
	일반직	소계	12			일반직	소계	12	
		5급	1	행정1			5급	1	행정·사회복지1
		6급	2	행정1 행정·사회복지1			6급	2	행정1 행정·사회복지1
		7급	3	행정2, 사회복지1			7급	3	행정2, 사회복지1
		8급	3	행정3			8급	3	행정3
		9급	3	행정1, 사회복지1 행정·사회복지1			9급	3	행정1, 사회복지1 행정·사회복지1
연수 3 동	계		11		연수 3 동	계		11	
	일반직	소계	11			일반직	소계	11	
		5급	1	행정·사회복지1			5급	1	행정·사회복지1
		6급	2	행정1 행정·사회복지1			6급	2	행정1 행정·사회복지1
		7급	3	행정2, 사회복지1			7급	3	행정2, 사회복지1
		8급	2	행정2			8급	2	행정2
		9급	3	행정1, 사회복지1 행정·사회복지1			9급	3	행정1, 사회복지1 행정·사회복지1
청학 동	계		12		청학 동	계		12	
	일반직	소계	12			일반직	소계	12	
		5급	1	행정·복지1			5급	1	행정·시설1
		6급	1	행정1			6급	1	행정1
		7급	3	행정2, 사회복지1			7급	3	행정2, 사회복지1
		8급	4	행정2, 행정·사회복지2			8급	4	행정2, 행정·사회복지2
		9급	3	행정2, 행정·사회복지1			9급	3	행정2, 행정·사회복지1
동춘 1 동	계		9		동춘 1 동	계		9	
	일반직	소계	9			일반직	소계	9	
		5급	1	행정1			5급	1	행정1
		6급	1	행정1			6급	1	행정1
		7급	3	행정2, 사회복지1			7급	3	행정2, 사회복지1
		8급	4	행정3, 행정·사회복지1			8급	4	행정3, 행정·사회복지1
		9급					9급		

현행					개정안				
동명	직종	직급	정원	직 렬	동명	직종	직급	정원	직 렬
동춘 2 동	계		9		동춘 2 동	계		9	
	일반직	소계	9			일반직	소계	9	
		5급	1	행정1			5급	1	행정1
		6급	1	행정1			6급	1	행정1
		7급	2	행정2			7급	2	행정2
		8급	4	행정2, 사회복지1, 행정. 사회복지1			8급	4	행정2, 사회복지1, 행정. 사회복지1
		9급	1	행정1			9급	1	행정1
동춘 3 동	계		8		동춘 3 동	계		8	
	일반직	소계	8			일반직	소계	8	
		5급	1	행정1			5급	1	행정1
		6급	1	행정1			6급	1	행정1
		7급	2	행정2			7급	3	행정2, 사회복지1
		8급	3	행정2, 사회복지1			8급	2	행정2,
		9급	1	행정1			9급	1	행정1
송도 1 동	계		9		송도 1 동	계		9	
	일반직	소계	9			일반직	소계	9	
		5급	1	행정1			5급	1	행정1
		6급	1	행정1			6급	1	행정1
		7급	2	행정2			7급	2	행정2
		8급	3	행정2, 사회복지1			8급	3	행정2, 사회복지1
		9급	2	행정1, 사회복지1			9급	2	행정1, 사회복지1
송도 2 동	계		9		송도 2 동	계		9	
	일반직	소계	9			일반직	소계	9	
		5급	1	행정1			5급	1	행정1
		6급	1	행정1			6급	1	행정1
		7급	2	행정2			7급	2	행정2
		8급	3	행정1, 사회복지2			8급	3	행정1, 사회복지2
		9급	2	행정2			9급	2	행정2
송도 3 동	계		8		송도 3 동	계		8	
	일반직	소계	8			일반직	소계	8	
		5급	1	행정1			5급	1	행정1
		6급	1	행정1			6급	1	행정1
		7급	2	행정2			7급	2	행정2
		8급	3	행정2, 사회복지1			8급	3	행정2, 사회복지1
		9급	1	행정1			9급	1	행정1

공인 등록 및 폐기 공고

인천광역시연수구공인조례 제9조 규정에 의거 공인의 등록 및 폐기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 12. 30

인 천 광 역 시 연 수 구 청 장

1. 등록 및 폐기 사유
-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 및 지방재정법 개정

에 따른 회계관직 명칭변경
2. 최초사용등록 및 폐기일자 : 2015. 1. 1
- ☐ 폐기공인 목록

연번	공인명	규격	인영	비고
1	인천광역시연수구 기획예산실분임경리관인	2.0cm×2.0cm		

연번	공인명	규격	인영	비고
2	인천광역시연수구 감사실분임경리관인	2.0cm×2.0cm		
3	인천광역시연수구 규제개혁추진단분임경리 관인	2.0cm×2.0cm		
4	인천광역시연수구 총무과분임경리관인	2.0cm×2.0cm		
5	인천광역시연수구 교육지원과분임경리관인	2.0cm×2.0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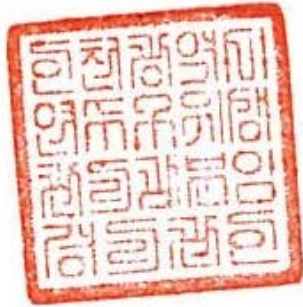
연번	공인명	규격	인영	비고
6	인천광역시연수구 문화체육과분임경리관인	2.0cm×2.0cm		
7	인천광역시연수구 분임경리관인	2.0cm×2.0cm		
8	인천광역시연수구 경리관인	2.0cm×2.0cm		
9	인천광역시연수구 재무회계과분임경리관인	2.0cm×2.0cm		

연번	공인명	규격	인영	비고
10	인천광역시연수구 홍보미디어실분임경리관 인	2.0cm×2.0cm		
11	인천광역시연수구 세무과분임경리관인	2.0cm×2.0cm		
12	인천광역시연수구 민원지적과분임경리관인	2.0cm×2.0cm		
13	인천광역시연수구 복지정책과분임경리관인	2.0cm×2.0cm		

연번	공인명	규격	인영	비고
14	인천광역시연수구 사회복지과분임경리관인	2.0cm×2.0cm		
15	인천광역시연수구 가정복지과분임경리관인	2.0cm×2.0cm		
16	인천광역시연수구 가정복지과일상경비출납 원인	1.8cm×1.8cm		
17	인천광역시연수구 가정복지과분임물품출납 원인	1.8cm×1.8cm		

연번	공인명	규격	인영	비고
18	인천광역시연수구 가정복지과분임징수관인	2.0cm×2.0cm		
19	인천광역시연수구 지역경제과일상경비출납 원인	1.8cm×1.8cm		
20	인천광역시연수구 지역경제과분임물품출납 원인	1.8cm×1.8cm		
21	인천광역시연수구 지역경제과분임경리관인	2.0cm×2.0cm		

연번	공인명	규격	인영	비고
22	인천광역시연수구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분임경리관인	2.0cm×2.0cm		
23	인천광역시연수구 인천광역시연수구발전소 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 계경리관인	2.0cm×2.0cm		
24	인천광역시연수구 일자리창출과분임경리관 인	2.0cm×2.0cm		
25	인천광역시연수구 청소행정과분임경리관인	2.0cm×2.0cm		

연번	공인명	규격	인영	비고
26	인천광역시연수구 환경보전과분임경리관인	2.0cm×2.0cm		
27	인천광역시연수구 위생관리과분임경리관인	2.0cm×2.0cm		
28	인천광역시연수구 건설과분임경리관인	2.0cm×2.0cm		
29	인천광역시연수구 안전관리과분임경리관인	2.0cm×2.0cm		

연번	공인명	규격	인영	비고
30	인천광역시연수구 건축과분임경리관인	2.0cm×2.0cm		
31	인천광역시연수구 도시계획과분임경리관인	2.0cm×2.0cm		
32	인천광역시연수구 공원녹지과분임경리관인	2.0cm×2.0cm		
33	인천광역시연수구 주차장특별회계경리관인	2.0cm×2.0cm		

연번	공인명	규격	인영	비고
34	인천광역시연수구 주차장특별회계분임경리 관인	2.0cm×2.0cm		
35	인천광역시연수구 교통행정과분임경리관인	2.0cm×2.0cm		
36	인천광역시연수구 차량민원과분임경리관인	2.0cm×2.0cm		
37	인천광역시연수구 차량민원과일상경비출납 원인	1.8cm×1.8cm		

연번	공인명	규격	인영	비고
38	인천광역시연수구 차량민원과분임물품출납 원인	1.8cm×1.8cm		
39	인천광역시연수구 청장의인차량민원과민원 전용	2.4cm×2.4cm		
40	인천광역시연수구 주차장특별회계분임징수 관인	2.0cm×2.0cm		
41	인천광역시연수구 주차장특별회계지출원인	2.0cm×2.0cm		

연번	공인명	규격	인영	비고
42	인천광역시연수구 주차장특별회계분임경리 관인	2.0cm×2.0cm		
43	인천광역시연수구 주차장특별회계채권관리 관인	2.0cm×2.0cm		
44	인천광역시연수구 주차장특별회계수입금출 납원인	1.8cm×1.8cm		
45	인천광역시연수구 주차장특별회계세입세출 외현금출납원인	1.8cm×1.8cm		

연번	공인명	규격	인영	비고
46	인천광역시연수구 보건소보건행정과분임경 리관인	2.0cm×2.0cm		
47	인천광역시연수구 보건소건강증진과분임경 리관인	2.0cm×2.0cm		
48	인천광역시연수구 보건소경리관인	2.0cm×2.0cm		
49	인천광역시연수구 송도보건지소분임경리관 인	2.0cm×2.0cm		

연번	공인명	규격	인영	비고
50	인천광역시연수구 연수청학도서관경리관인	2.0cm×2.0cm		
51	인천광역시연수구연 수청학도서관분임경 리관인	2.0cm×2.0cm		
52	인천광역시연수구 옥련1동경리관인	2.0cm×2.0cm		
53	인천광역시연수구 옥련2동경리관인	2.0cm×2.0cm		

연번	공인명	규격	인영	비고
54	인천광역시연수구 선학동경리관인	2.0cm×2.0cm		
55	인천광역시연수구 연수1동경리관인	2.0cm×2.0cm		
56	인천광역시연수구 연수2동경리관인	2.0cm×2.0cm		
57	인천광역시연수구 연수3동경리관인	2.0cm×2.0cm		

연번	공인명	규격	인영	비고
58	인천광역시연수구 청학동경리관인	2.0cm×2.0cm		
59	인천광역시연수구 동춘1동경리관인	2.0cm×2.0cm		
60	인천광역시연수구 동춘2동경리관인	2.0cm×2.0cm		
61	인천광역시연수구 동춘3동경리관인	2.0cm×2.0cm		

연번	공인명	규격	인영	비고
62	인천광역시연수구 송도1동경리관인	2.0cm×2.0cm		
63	인천광역시연수구 송도2동경리관인	2.0cm×2.0cm		
64	인천광역시연수구 송도3동경리관인	2.0cm×2.0cm		

□ 등록공인 목록

연번	공인명	규격	인영	비고
1	인천광역시연수구 창조전략기획단분임재무 관인	2.0cm×2.0cm		
2	인천광역시연수구 창조전략기획단일상경비 출납원인	1.8cm×1.8cm		
3	인천광역시연수구 창조전략기획단분임물품 출납원인	1.8cm×1.8cm		
4	인천광역시연수구 기획예산실분임재무관인	2.0cm×2.0cm		

연번	공인명	규격	인영	비고
5	인천광역시연수구 감사실분임재무관인	2.0cm×2.0cm		
6	인천광역시연수구 규제개혁추진단분임재무 관인	2.0cm×2.0cm		
7	인천광역시연수구 홍보미디어실분임재무관 인	2.0cm×2.0cm		
8	인천광역시연수구 총무과분임재무관인	2.0cm×2.0cm		

연번	공인명	규격	인영	비고
9	인천광역시연수구 안전관리과분임재무관인	2.0cm×2.0cm		
10	인천광역시연수구 교육지원과분임재무관인	2.0cm×2.0cm		
11	인천광역시연수구 문화체육과분임재무관인	2.0cm×2.0cm		
12	인천광역시연수구 분임재무관인	2.0cm×2.0cm		

연번	공인명	규격	인영	비고
13	인천광역시연수구 재무관인	2.0cm×2.0cm		
14	인천광역시연수구 재무회계과분임재무관인	2.0cm×2.0cm		
15	인천광역시연수구 세무과분임재무관인	2.0cm×2.0cm		
16	인천광역시연수구 민원지적과분임재무관인	2.0cm×2.0cm		

연번	공인명	규격	인영	비고
17	인천광역시연수구 복지정책과분임재무관인	2.0cm×2.0cm		
18	인천광역시연수구 사회복지과분임재무관인	2.0cm×2.0cm		
19	인천광역시연수구 여성아동과분임재무관인	2.0cm×2.0cm		
20	인천광역시연수구 여성아동과일상경비출납 원인	1.8cm×1.8cm		

연번	공인명	규격	인영	비고
21	인천광역시연수구 여성아동과분임물품출납 원인	1.8cm×1.8cm		
22	인천광역시연수구 여성아동과분임징수관인	2.0cm×2.0cm		
23	인천광역시연수구 경제지원과일상경비출납 원인	1.8cm×1.8cm		
24	인천광역시연수구 경제지원과분임물품출납 원인	1.8cm×1.8cm		

연번	공인명	규격	인영	비고
25	인천광역시연수구 경제지원과분임재무관인	2.0cm×2.0cm		
26	인천광역시연수구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분임재무관인	2.0cm×2.0cm		
27	인천광역시연수구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재무관인	2.0cm×2.0cm		
28	인천광역시연수구 일자리창출과분임재무관 인	2.0cm×2.0cm		

연번	공인명	규격	인영	비고
29	인천광역시연수구 청소행정과분임재무관인	2.0cm×2.0cm		
30	인천광역시연수구 위생관리과분임재무관인	2.0cm×2.0cm		
31	인천광역시연수구 건설과분임재무관인	2.0cm×2.0cm		
32	인천광역시연수구 건축과분임재무관인	2.0cm×2.0cm		

연번	공인명	규격	인영	비고
33	인천광역시연수구 도시계획과분임재무관인	2.0cm×2.0cm		
34	인천광역시연수구 환경보전과분임재무관인	2.0cm×2.0cm		
35	인천광역시연수구 공원녹지과분임재무관인	2.0cm×2.0cm		
36	인천광역시연수구 주차장특별회계재무관인	2.0cm×2.0cm		

연번	공인명	규격	인영	비고
37	인천광역시연수구 주차장특별회계분임재무 관인	2.0cm×2.0cm		
38	인천광역시연수구 교통행정과분임재무관인	2.0cm×2.0cm		
39	인천광역시연수구 보건소보건행정과분임재 무관인	2.0cm×2.0cm		
40	인천광역시연수구 보건소건강증진과분임재 무관인	2.0cm×2.0cm		

연번	공인명	규격	인영	비고
41	인천광역시연수구 보건소재무관인	2.0cm×2.0cm		
42	인천광역시연수구 송도보건지소분임재무관 인	2.0cm×2.0cm		
43	인천광역시연수구 연수청학도서관재무관인	2.0cm×2.0cm		
44	인천광역시연수구 연수청학도서관분임재무 관인	2.0cm×2.0cm		

연번	공인명	규격	인영	비고
45	인천광역시연수구 옥련1동재무관인	2.0cm×2.0cm		
46	인천광역시연수구 옥련2동재무관인	2.0cm×2.0cm		
47	인천광역시연수구 선학동재무관인	2.0cm×2.0cm		
48	인천광역시연수구 연수1동재무관인	2.0cm×2.0cm		

연번	공인명	규격	인영	비고
49	인천광역시연수구 연수2동재무관인	2.0cm×2.0cm		
50	인천광역시연수구 연수3동재무관인	2.0cm×2.0cm		
51	인천광역시연수구 청학동재무관인	2.0cm×2.0cm		
52	인천광역시연수구 동춘1동재무관인	2.0cm×2.0cm		

연번	공인명	규격	인영	비고
53	인천광역시연수구 동춘2동재무관인	2.0cm×2.0cm		
54	인천광역시연수구 동춘3동재무관인	2.0cm×2.0cm		
55	인천광역시연수구 송도1동재무관인	2.0cm×2.0cm		
56	인천광역시연수구 송도2동재무관인	2.0cm×2.0cm		

연번	공인명	규격	인영	비고
57	인천광역시연수구 송도3동재무관인	2.0cm×2.0cm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 12. 30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 도로명주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71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22-1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71	신축	2009-05-14	해돋이공원을 지나는 도로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연수구청 민원지적과(☎749-7594~7595)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4. 12. 30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인천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안)

인천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사업명 : 연수1동 주민센터 신축공사】 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제88조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되었기에 같은 법 제9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연수구청 재무회계과(☎749-7373) 및 도시계획과(☎749- 8654)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여드립니다.

2014. 12. 29.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1. 사업 시행지의 위치 : 연수구 연수동 535-3번지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인천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 명 칭 : 연수1동 주민센터 신축공사
3. 사업의 면적 및 규모
 - 면 적 : 1,168.3㎡(총 면적 5,028.5㎡)
 - 규 모 : 건폐율 59.11%, 용적률 196.09%, 건축 높이 23.3m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연수구청장
 - 주 소 : 연수구 원인재로 115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착수(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

○ 준공(예정)일 : 2016. 6. 30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사용면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	
					주소	성명	내용	주소 및 성명
연수동	535-3	공원	5,028.5㎡	1,168.3㎡	연수구 원인재로 115	인천광역시 연수구	-	-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